

研究報告
1986. 12 134

農業關聯稅制 改善研究

金 基 成 (責任研究員)
金 昊 年 (研究助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研究報告 134

農業關聯稅制 改善研究

要 約

지난 10년간(1976~85) 農家所得은 약 5배로 늘었고,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은 약 2.4배로 증가하였으며, 擔稅率은 1.5%에서 0.8%로 낮아졌다.

그 결과, 都農間의 擔稅率이 2.1%로 똑같았던 1979년을 交叉基點으로 하여 農民의 擔稅率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왔으며, 農業 내부에서도 最下率 擔稅階層이 1976년의 0.5 ha 이하 農家계층에서 1985년에는 1.0~1.5 ha 農家계층으로 바뀌었다.

한편, 農民이 國家 또는 地方政府 등으로부터 받는 公共支出 受惠度도 같은 기간에 완만하나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地調查나 郵便輿論 등에 의하면 農民의 擔稅意識은 민감하였으며, 새로운 改善을 기대하고 있다.

이研究는 이러한 農民의 租稅輿論을 계기로, 현행 農業關聯 諸租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改善方向을 연구 제시코자 한 것이다.

1. 農地稅

① 벼농사에 대한 農地稅課標의 기준이 되는 農地의 基準收穫量等級을 平年作 米穀收穫量과 運動化함으로써 농지세 부과에 米穀收穫量 增減 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농지세 課標算出의 기초가 되는 必要經費率($= 1 - 所得標準率$)을 當

該地域 해당 품목의 평균소득률을 반영토록 하는 制度의인 조정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③ 농지 임대인에게 부과한 農地稅가 임차인에게 轉嫁되지 않도록 行政指導와 改正稅制에 관한 弘報를 강화하고, 非營農 不在地主의 농지임대소득에 대한 농지세부담을 現地 營農地主의 농지임대소득에 대한 농지세부담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영농 부재지주의 임대농지소득에 대한 累進稅率 조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 基礎控除는 농민의 평균 基本生計費와 도시근로자(봉급생활자 등)의 일반 控除額 수준의 범위내에서(약 240 만원~ 350 만원) 上向調整되어야 한다.

⑤ 稅率構造는 현행 16 단계제에서 7~8 단계로 단순화하되, 課標 800 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6, 8, 10, 12, 15, 18% 등 6 단계를 유지하고, 800 만원 초과 5,000 만원까지는 20%로, 그리고, 5,000 만원 초과시는 30% 등의 稅率로 再調整하여 大農層에 대한 累進率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민의 稅額計算上의 복잡함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畜產所得稅 · 林業所得稅 · 山林所得稅

① 畜產所得稅는, 畜種別 非課稅範圍 설정기준을 보다 客觀化 · 科學化하고, 推計課稅制 실시에서 야기되는 비현실적인 課稅의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林業 및 山林所得稅는, 兩稅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課徵稅의 복잡함을 해소키 위하여 林業所得과 山林所得을 한데 묶어 山林所得稅 등의 課稅對象으로 통일하고, 林木이 林地와 동시에 양도될 때에 한하여는 임목의 양도를 임지의 양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農地財產稅

① 農地財產稅의 과표 산출의 기초가 되는 농지의 土地等級이 1984년부터 급격히 상향 조정됨으로써 農地價格이나 수획량 등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非現實的 増稅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② 農地財產稅가 比例稅率이라는 사실에서 야기되는 농업 내부 大小農間의 課稅逆進性도 점차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長期的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지의 相續 · 贈與稅

① 현행 農地의 相續制度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多子女 均分相續制에 의한 農地細分化를 방지하는 것과 相續을 통한 非營農不在地主의 農地所有를 가급적 억제 내지 축소시키는 일이다. 전자는 相續法 자체의 改正을 요한다. 稅制上의 改善을 통하여 실현이 가능한 것은 後者로서, 非營農 子女에의 농지상속을 가능한 한 制約하고, 영농자녀에의 농지상속을 권장,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自耕農民에의 농지상속에 대하여 相續稅의 非課稅範圍를 현행 6,000 평(草地는 30,000 평)에서 9,000 평(초지는 60,000 평)으로 확대하는 것 등은 실현 가능한 한 가지 대안이다.

② 農地의 贈與稅도 贈與者와 受贈者的 营農從事 여부가 문제의 초점이다. 즉, 自耕農에 한하여 농지상속 공제액을 150 만원(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受贈時) 또는 100 만원(기타 친족으로부터 受贈時) 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農地의 流動性 提高, 특히 非營農 不在地主 農地의 自耕農에의 移轉을 촉진키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減免制의 실시를 요한다. 예컨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을 소유자의 营農 · 非營農性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까지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自營農民에게만 증여한다면, 일정 범위(예 : 농지 6,000 평, 초지 30,000 평 등)내에서 증여세를 免除하는 방안 등이 실현 가능 할 것이다.

5. 農地讓渡稅

농지의 讓渡稅는, 그것이 지닌 農地投機抑制라는 긍정적 기능과 농지유동성 제약이라는 부정적 기능을 여하히 조화롭게 활용하는가의 여부가 핵

④

심 과제이다. 농지에 대한 讓渡所得稅는, 非營農 및 投機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者에게는 高率로 과세하여 농지의 投機的 去來를 억제하는 반면에,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보유하다가 讓渡하는 者에게는 低率課稅내지 免稅하여 營農目的의 農地流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8년 이상 自耕農地의 양도소득세 免除條項을 3~5년 이상 自耕農地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거나, 自耕農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讓渡者的 영농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일정 범위내에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농지 등의 取得稅 · 登錄稅

농지의 전전한 流動性을 높이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다면, 自耕目的을 전제로 한 농지의 取得과 登錄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7. 농업생산자재의 附加價值稅

비료·농약·농기계 등의 거래에 부과되는 附加價值稅는, 이들 資材의 消費者(使用者)인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자인 農民에게 귀착하는바,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비료 및 농약계정의 赤字累增을 완화코자 한다면 이들 營農資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8. 기타 農業關聯 流通消費課稅

稅制의 改善을 통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補填하려 한다면, 그밖에도 농축산가공식품 예컨대, 밭효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풀飼料種子 및 영농자재(비료·농약 등)의 원료와 농기계 부품의 수입관세, 그리고 축산물 屠畜稅 등도 減免내지 輕減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머리말

5次에 걸쳐 실시되어 온 經濟開發計劃의 結果로서 韓國의 國民 1人當 GNP가 2,000 달러帶에 이르렀다. 이 段階에서의 國民의 租稅負擔率은 19 %를 약간 上廻하고 있으며, 一角에서는 이것이 비교적 적절한 水準이고 앞으로는 보다 上向調整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2,000 달러라는 1人當 GNP는 國民간의 負擔의 隔差가 고려되지 않은 平均值 概念의 것이며, 擔稅率도 法定의 租稅이외의 準租稅와 國家가 지고 있는 對外債務額까지를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무거울 것이라는 分析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같이 國민이 부담하는 租稅問題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 對應策으로서의 稅制改善論이 강조되어 왔다.

이 「農業關聯稅制改善研究」도 그러한 稅制改善論의 맥락에서 농업과 관련된 租稅에 관하여 現況을 파악하고 內容을 分析하여, 問題點이 있으연 그 改善의 方向을 研究 提示하려는 취지로遂行된 것이다. 現行 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관련諸租稅를 全體租稅體系속에서 分類해 보고(第2章), 그동안, 그리고 현재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負擔의 현황과 추이, 租稅에 의한 農民의 公共支出受惠度 등을 概觀한 다음(第3章), 直接稅類部門으로서 農業關聯 所得 및 財產課稅部分과(第4章), 間接稅類部門으로서 農業關聯 流通 및 消費課稅部分(第5章)을 연구 고찰하였으며, 끝으로 農民이 負擔하는 各種 準租稅負擔實態를 現地事例調查등을 통하여 分析한 後(第6章), 그 分析結果등에 根據를 두어 綜合的으로 農業關聯租稅의 分野別·稅目別 改善方向을 提示하였다(第7章).

研究內容에서 밝혀지듯이 現行 農業關聯稅制에는 多樣한 問題點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研究에서의 改善方向의 提示는 현재 推進中인 農村綜合對策과 既存의 租稅減免制度, 그리고 現地 農民의 擔稅實情과 농

민 與論 등을 동시에 감안하여 韓國의 全體租稅體制範圍內에서 調整補完하는 水準에 限定하였다.

앞으로 國內外經濟與件과 特히, 農業을 둘러싼 經濟 社會的 與件이 바뀌어감에 따라 農業關聯稅制도 계속 研究 補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農業 및 農村政策立案者와 其他 關心있는 분에게 參考資料로 活用되기를 바라며, 이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研究者의 見解일 뿐 本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86.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鎭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3

第 2 章 農業關聯 租稅의 分類

1.	租稅分類 基準	5
2.	租稅의 一般的分類와 農業關聯租稅	6

第 3 章 農民의 租稅負擔과 公共支出受惠

1.	農民의 所得과 租稅負擔率	11
2.	農民의 相對的 擔稅率	11
3.	公共支出에 의한 農民受惠	14
4.	稅制改善論의 提起	16

第 4 章 農業關聯 所得・財產課稅

1.	農業關聯 所得・財產課稅의 問題意識	22
2.	農業關聯 所得課稅	27
3.	農業關聯 財產課稅	54

第 5 章 農業關聯 流通・消費課稅

1.	小序	78
2.	流通・消費課稅	78

第 6 章 農民의 準租稅負擔

1. 農民 準租稅負擔論의 提起	99
2. 農民負擔 準租稅의 範圍	100
3. 農民의 準租稅負擔 實態	101
4. 農民 準租稅負擔의 問題點	104

第 7 章 結 論：農業關聯稅制의 改善方向

1. 稅制改善의 前提와 目標	109
2. 稅制 改善方向	110

表 目 次

第 2 章

表 2- 1	租稅의 一般的 分類模型	8
表 2- 2	農業關聯 租稅 分類模型	10

第 3 章

表 3- 1	農家의 租稅公課金 負擔率	12
表 3- 2	農民의 耕地規模別 擔稅率 比較	12
表 3- 3	農民擔稅率斗 農民福祉 指向性 公共支出 比率推移	16
附表 3- 1	耕地規模別 擔稅率, 1976	18
附表 3- 2	" " , 1980	18
附表 3- 3	" " , 1985	19
附表 3- 4	都農間 租稅公課金 負擔推移, 1970 ~ 85	19
附表 3- 5	地方自治團體 歲出豫算中 農畜產經濟費 比重	20
附表 3- 6	「郡」의 一般會計 歲出豫算中 社會福祉費, 農畜產 經濟費 및 地方公益事業費의 比重	21

第 4 章

表 4- 1	韓國의 直・間接稅 構成比 推移	23
表 4- 2	農地稅制의 概要	28
表 4- 3	農家戶當 農地稅 負擔率	28
表 4- 4	農地稅制 改正前後 農地規模別 農地稅 負擔	29
表 4- 5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比重	30
表 4- 6	米穀의 平均所得率斗 所得標準率 比較	35

表 4- 7	主要 分野別 品目別 所得標準率 比較	36
表 4- 8	營農 與否別 農地 貸貸所得 課稅 比較	39
表 4- 9	農家 副業畜產의 範圍	43
表 4-10	林業·山林所得稅와 林地讓渡所得稅의 比較	47
表 4-11	山林所得稅 所得階層別 算出稅額 規模, 1984	48
表 4-12	山林所得稅의 稅收總額과 課稅人員 推移	48
表 4-13	農民의 利子 및 配當所得稅 非課稅 範圍	50
表 4-14	經濟規模와 農村貯蓄規模의 推移	51
表 4-15	農民의 500 만원 超過 預金口座數 (1985.5)	51
表 4-16	財產稅의 稅率構造	56
表 4-17	農民擔稅額中 財產稅의 比重	57
表 4-18	地方稅中 財產稅의 比率	57
表 4-19	農地에 대한 財產稅 課徵現況과 推移	58
表 4-20	地價上昇을 追越한 土地等級基準 價格推移	59
表 4-21	都農間 財產課稅 輕重條件 比較	61
表 4-22	農地 等 財產相續支分 變動推移	65
表 4-23	農地에 대한 相續·贈與稅制 概要	67
附表 4- 1	郡의 地方稅收入 趨勢와 稅目別 構成比, 1976~85	69
附表 4- 2	農地稅 納付額의 法定水準 對比 輕重與否	70
附表 4- 3	農地稅制 改正前後 農地規模別 農地稅 負擔(벼농사)	71
附表 4- 4	畜種別 副業畜產(非課稅對象)의 範圍	72
附表 4- 5	農家副業所得 範圍의 變動推移	73
附表 4- 6	農民의 農畜協 貯蓄規模 推移	74
附表 4- 7	農民의 出資額規模 推移	74
附表 4- 8	都農間 預金利子率 階差	74
附表 4- 9	土地等級表(現行)	75
附表 4-10	建物分 財產稅의 課標決定變數	76
附表 4-11	相續稅·贈與稅의 稅率構造	77

第5章

表 5- 1 現行 農地 譲渡所得稅制 概要	81
表 5- 2 農地의 取得稅・登錄稅制 概要.....	86
表 5- 3 附加價值稅制의 概要	88
表 5- 4 農業生產資材의 生產 및 販賣實績	88
表 5- 5 農民의 營農資材 附加價值稅 負擔規模	89
表 5- 6 肥料에 대한 附加價值稅 負擔推移	89
表 5- 7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와 比較.....	91
表 5- 8 農業用油類의 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值稅의 稅率	91
表 5- 9 酸酵乳의 生產實績과 特別消費稅 賦課規模	92
表 5-10 天然果實飲料, 氷菓類, 酸酵乳 等의 特別消費稅 比重과 推移	93
表 5-11 飼料作物種子의 輸入關稅	94
表 5-12 飼料作物種子의 輸入推移	95
表 5-13 畜產物 屠畜稅 賦課用 課標額 變動推移	96

第6章

表 6- 1 農民 準租稅의 性質別 主要項目	100
表 6- 2 農民의 準租稅 負擔率 推移	101
表 6- 3 農家의 準租稅 類型別, 地域別 負擔 頻度	103
表 6- 4 農家의 準租稅 負擔 事例	105
附表 6- 1 農家의 準租稅 負擔事例 明細	108

圖 目 次

第 3 章

圖 3- 1	都農間의 擔稅率 比較	13
--------	-------------	----

第 4 章

圖 4- 1	經濟成長에 따르는 財產 · 所得課稅 稅率推移	25
圖 4- 2	<u>農地稅와 財產稅의 課稅基礎가 되는 農地에 대한</u>	
	基準收穫量 等級과 土地等級 變動推移	26
圖 4- 3	農地의 平均段收와 農地等級 變動推移	33
圖 4- 4	質貸借人 間 $1m^2$ 當 農地所得 推定額 隔差	33
圖 4- 5	質貸借 農地稅 賦課過程	34
圖 4- 6	稅制上 畜產所得稅의 位置	42
圖 4- 7	農家剩餘와 畜產所得 非課稅 範圍의 變動推移	44
圖 4- 8	畜種別 所得 非課稅 範圍 比較	45
圖 4- 9	直 · 間接, 所得·財產課稅의 機能 區分	51
圖 4-10	所得稅類의 擔稅率	52
圖 4-11	畜產所得稅 擔稅率	53
圖 4-12	土地等級 分布의 高等級 集中化 傾向	60

第 5 章

圖 5- 1	所得金額 規模別 讓渡所得稅의 逆進性	83
圖 5- 2	非課稅 · 控除額 規模別 讓渡所得稅의 逆進性	83
圖 5- 3	農地의 保有期間, 登記與否別 讓渡所得稅 逆進性	83
圖 5- 4	現行 租稅體系	85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60 年代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工業化中心의 경제개발정책은 韓國의 經濟와 社會面에 현저한 발전과 더부러 다양한 與件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農村과 農民을 대상으로 하는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農業機械化의 진척, 농업생산성의 提高, 농가소득의 증대, 농민의 생활수준의 향상등 肯定的인 측면이 외에 都農間의 所得 및 生活便宜의 격차, 농촌인구의 減少(농업 노동력 격감), 賃貸借農의 증가, 開發地域의 農地投機, 농민의 消費性向增大, 農家負債의 累增등의 否定的인 측면도 그동안의 발전과 변화의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諸變化에 대하여 政府가 취해온 對應策중에는 여러가지 代案이 있었으며, “稅制의 적절한 導入과 改善”은 이미 여러차례 채택되어온 그 代案들 중의 하나이다. 農業과 관련된 稅制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추진 중인 非農業部門의 稅制改善研究와 併行하여 制度上의 보완과 改善을 요하고 있어,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한 當面課題로 提起되고 있다.

최근 數年동안 농업부문에 관한 租稅問題를 論하는 빈도가 높아져 온 것

은 그러한 “農業關聯稅制改善”의 높은 필요성을反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1970 年代中반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된 農地稅制의 改善論이 實現되어 1985年부터 새법률에 의한 改正農地稅制가 施行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경향의 代表的 結實의 한 例이다.¹⁾

그후에 이어지는 農業部門의 稅制改善論은 주로 농지의 財產價值에 稅源의 기초를 두고 있는 土地財產課稅分野에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다. 이른 바 不在地主와 在村地主의 農地所有에 대한 財產稅, 농지등의 양도에 따르는 讓渡所得稅, 전통적인 多子女均等分割式 農地相續에의 課稅問題, 그리고 過多土地保有 등에 대한 重課稅問題 등을 예의 검토하여 직접 간접으로 “耕者有田”的 理想을 實現코자 하는 努力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農地 내지 農業의 生產性을 높이고 농민의 所得水準을 向上시켜 농民소득계층간 및 都農間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福祉農村을 이룩하는데에 稅制의 改善도 그一助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經濟가 발전하고 社會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리고 農村·農民· 農業을 둘러싼 諸與件의 변화에 따라서 農業關聯租稅는 이제前述한 所得課稅와 財產課稅분야뿐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流通 및 消費課稅에도 制度上의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研究는 그러한 點을 감안, 현행 稅法上 농업과 관련되어있는 諸租稅를 所得(生産), 財產(所有), 流通 및 消費등 경제활동 성질별 4大類型으로 구분하여, 그 類型別로, 應能·公平·普遍性등 일반화된 租稅原則의 次元에서 관련된 現實問題를 導出하고, 현재 정부와 기타 관련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非農業部門의 稅制改善努力에 보조를 맞추어 主要 問題들의 改善方向을 연구 제시하려는 試圖의 一部로서 遂行된 것이다.

1) 法律 第 3757 號 (1984.12.24)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가. 研究範圍

(1) 研究對象租稅：농업을 통한 生產에서 얻은 所得,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로서의 토지의 保有, 토지 기타 생산자재의 流通 및 농산물과 생산자재의 消費活動 등에 부과하는 主要 租稅 全般.

(2) 分析範圍：현행 稅法體系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농업과 관련된 諸租稅를 가) 主要基準別로 分류하고, 나) 주요租稅의 賦課 徵收現況分析, 다) 소득 및 자원배분적기능의 측면 등을, 첫째 납세자간의 公平性, 둘째 납세자의 욕구충족 및 세째, 租稅의 正負의 經濟活力性 (tax impact)의 觀點에서 고찰하고, 라) 관련된 問題의 改善方向 摸索.

(3) “農業關聯租稅”的 範圍 (概念上의 限界) : 이 研究에서 다루는 “農業關聯租稅”的 개념은, 현행의 諸租稅 중에서 農地稅와 같이 농업과 전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 조세를 비롯하여 농지에 대한 財產稅, 농지의 讓渡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농지의 상속과 증여에 따르는 相續稅와 贈與稅, 농산물의流通에 따르는 附加價值稅, 農資材의 매매거래에 따르는 附加價值稅, 농산물과 農產加工品 및 農產資材 등의 소비에 따르는 特別消費稅, 그리고 農資材의 原料 (비료와 농약의 원료등)와 部品 (농기계) 등의 수입관세, 畜產物 屠畜稅와 農民融資書類의 印紙稅 등을 포함한다.

나. 研究方法

① 租稅의 分류에 있어서는 현행 한국의 稅法에 담겨있는 諸租稅를 현재까지의 諸學說과 경험적으로 設定되어 있는 다양한 租稅分類基準에 의하여 分類, 製表化한 다음, 그중에서 농업관련조세를 선별, 이研究의 필요에 상응하는 몇 가지 基準 (課稅主體, 經濟活動過程, 租稅轉嫁, 稅率의 逆·累進性等)에 따라 分類하여 模型化한다.

- ② 課徵稅制度 및 擔稅現況에 관한 고찰은 현행 諸稅法의 관련條項과 課徵稅實際間의 比較, 統計資料에 의한 時系列 및 橫斷分析 및 納稅農民과 課徵稅行政實務陣에 대한 面談事例調查 등에 의하고,
- ③ 農業關聯租稅의 資源配分과 所得再分配機能에 관한 考察은 既存의 諸租稅學說과 관련資料 등을 참고하여 主要稅目에 한해서만 概觀하여,
- ④ 農民의 準租稅負擔現況分析은 現地事例調查結果를 分析整理하고,
- ⑤ 各稅目別 問題點의 導出과 改善方向의 모색은 經濟社會의 與件변화와 既存의 制度 및 政策²⁾의 基本方向등을 감안하여, 현행의 法律 및 制度上의 모순과 미흡점을 시정 및 보완하는 方向을 연구 提示한다.

2) 現行의 各種 租稅減免規制法 및 農漁村綜合對策 등.

第 2 章

農業關聯 租稅의 分類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研究는 租稅의 分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租稅分析의 제 1 차적 단계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租稅를 分류하는 過程이므로¹⁾ 이 연구에서도 먼저 한국의 현행 制度上의 諸租稅를 한데 모아 가능한 한 이研究의 목적에 맞도록 체계있게 分類, 整理하는 것이 先行要件이다.

1. 租稅分類 基準

현행 制度와 관連理論 및 先行研究資料등에 의하면, 이研究에서의 租稅分類를 위하여 필요하고 利用可能한 주요 分류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즉, 中央 및 地方政府등의 課稅主體(가), 生産(소득), 소유(수익), 유통 및 消費 등의 經濟活動過程(나), 조세의 轉嫁(다), 세율의 累逆進性(라), 稅收額의 用途(마), 物量과 價格等 課標의 形태(바), 人物과 物件 등 課稅對象(사), 課稅의 규칙성(아), 과세대상과 과세근

1) 日, 東洋經濟新報社刊, 經濟學大辭典 (1980) p.697.(神戶商大能勢哲也 教授)

거의 國內外관련성(자), 과세의 獨立性(차), 課稅配分方法(카), 과세근거자료(타) 등이다.

2. 租稅의 一般的 分類와 農業關聯租稅

가. 租稅의 一般的 分類

위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현행 제도내에서의 諸租稅는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附加價值稅 關稅 特別消費稅 등 17 餘個의 國세와 農地稅 財產稅 取得稅 등록세 등 13 餘個의 地方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表2-1〉

나. 農業關聯租稅의 分類

第1章 2—가—(3)에 명시한 農業關聯租稅의 概念내지 範圍와 第2章 1에 명시한 分類基準에 따르면, 현행 稅法, 稅制내에서의 農業關聯租稅는 農地稅 所得稅 財產稅 相續稅 讓渡所得稅 附加價值稅 特別消費稅等 16개의 國稅와 地方稅로 分類될 수 있다.〈表2-2〉. 단, 이와같은 租稅의 分類에 적용한 分類基準은 租稅制度가 形成되어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사회적諸與件하에서 一般的으로 통용되어온 原則的인 것일뿐 엄밀한 尺度에 입각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觀點에 따라서 다른 意見이 있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²⁾

2) 租稅分類基準의 碩密性의 程度에 관하여는 다음의 몇 가지 例에서 理解될 수 있다. 이研究에서 區分하고 있는 租稅分類의 基準으로 直接稅와 間接稅의 分류를 납세의무자와 擔稅者와의 一致性與否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첫째, 歷史的으로 보면, ① 18C末 重農主義經濟學派들이 土地收益單一稅를 論證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는 종국적으로 土地에서 생기는 純生產物(Produit net) 즉, 순이익에서 支給되는것으로 믿었기때문에 직접 土地에서 징수되는 租稅가 가장 쉬운것으로 보고 이를 直接稅라 하는 한편, 그밖의 租稅를 間接稅로 보는 例가 있었으며, ② 그후 財政學과 租稅行政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또 납세의무자가 擔稅者로 되는 租稅를 直接稅,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轉嫁되는 조세(납세의무자≠擔稅者)를 間接稅라 稱해온다.

둘째, 국가별로는, 英國은 土地, 窓戶등 外形標準에 부과되는 租稅를 直接

(주 2계속)

稅, 關稅나 內國消費稅를 間接稅라 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臺帳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징수되고, 장기간 존속하는 물건에 대한 課稅를 臺帳稅, 또는 定期稅, 賦課稅 등으로 부르며 이것을 通稱 直接稅라 하였고, 可動的物件 및 行爲에 대하여 課稅要因이 成立될 때마다 부과하는 租稅를 間接稅라 불렀다.

세째, 分類基準自體의例外性도 크다. 즉, 조세의 轉嫁與否에 의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를 분류한다는 原則에도 불구하고例전대 家屋에 대한 課稅가 그 貨貸料를 높이고 조세부담이 借家人에게 전가되는 家屋稅도 직접세로 분류하였으며, 자동차세와 不動產稅도 直接稅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그 擔稅者는 納稅義務者와 다를수도 있다.

그밖에 擔稅者的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課稅額의 경감이나 累進率을 적용할수 있는 것을 直接稅, 그렇지 못한것을 間接稅로 구분하고도 있으나, 差別課稅의 原則을 적용하는 現代的 稅制下에서는 적절한 분류기준이 될수 없다는 見解도 있다.

현대적 稅制에서의 區分基準은 課稅物件에 있으며, 所得의 税과 支出을 기준으로 하여, 所得의 税에 대한 課稅(소득세, 이윤세, 자본이득세 등)를 直接稅로, 그리고 所得의 支出에 대한 課稅(소비세, 관세, 유통세 등)를 間接稅로 보는 것이妥當하다는 見解도 있다.

表 2 - 1 租税의一般的分類模型

분류 기준	분류기준 세 목별	가	
		가-1 국 세	가-2 지방세
나	나-1 소득세류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나-2 재산·수익세류	상속세, 증여세외 2종 ¹⁾	재산세, 도시계획세 외 수종 ²⁾
	나-3 유통세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외 수종 ³⁾	취득세, 등록세
	나-4 소비세류	특별소비세, 관세외 2종 ⁴⁾	담배판매세 외 수종 ⁵⁾
다	다-1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외 수종 ⁶⁾	농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
	다-2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외 수종 ⁷⁾	면허세, 취득세외 수종 ⁸⁾
라	라-1 누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외 1종 ⁹⁾	농지세, 재산세 외 수종 ¹⁰⁾
	라-2 비례(역진)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외 수종 ¹¹⁾	도시계획세, 도축세 외 수종 ¹²⁾
마	마-1 보통(일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외 수종 ¹³⁾	농지세, 재산세외 8종 ¹⁴⁾
	마-2 목적세	방위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외 2종 ¹⁵⁾
바	바-1 종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외 수종 ¹⁶⁾	농지세, 재산세외 수종 ¹⁷⁾
	바-2 종량세	인지세, 주세 등	면허세, 등록세 외 수종 ¹⁸⁾
사	사-1 인세	소득세, 법인세외 2종 ¹⁹⁾	농지세, 재산세, 주민세
	사-2 물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외 수종 ²⁰⁾	도시계획세, 면허세 외 수종 ²¹⁾
아	아-1 경상(영구)세	소득세, 법인세외 수종 ²²⁾	농지세, 재산세 외 수종 ²³⁾
	아-2 임시(시한)세	양도소득세, 방위세 외 수종 ²⁴⁾	-
자	자-1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외 수종 ²⁵⁾	농지세, 재산세외 수종 ²⁶⁾
	자-2 국제세	관세	-
차	차-1 독립세	소득세, 법인세외 수종 ²⁷⁾	농지세, 재산세외 11종 ²⁸⁾
	차-2 부가세*	방위세, 교육세 등	-
카	카-1 정률세	소득세, 법인세외 수종 ²⁹⁾	농지세, 재산세외 11종 ³⁰⁾
	카-2 배부세	-	-
타	타-1 증률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외 수종 ³¹⁾	도축세, 담배판매세 외 수종 ³²⁾
	타-2 대장세	-	농지세, 재산세외 수종 ³³⁾

* “부가세”라는 명칭의 것은 77년말에 폐지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사실상 부가세의 성질을 지닌 것을 지칭하며 (예: 방위세), 法人稅法上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여기서의 부가세에 해당되지 않음.

-
- 1)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 2)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 3) 특별부가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4) 주세, 전화세 등
 - 5) 도축세 등
 - 6)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
 - 7) 주세, 관세, 인지세, 전화세 등
 - 8) 도축세, 자동차세 등
 - 9) 증여세 등
 - 10)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등
 - 11) 특별부가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 방위세, 교육세 등
 - 12) 사업소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마권세, 주민세(균등할) 등
 - 13)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등
 - 14)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담배판매세, 마권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15)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 16) 법인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 17)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18) 도축세, 자동차세 등
 - 19) 상속세, 증여세 등
 - 20) 특별부가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 방위세, 교육세 등
 - 21)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담배판매세, 마권세, 자동차세 등
 - 22)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 등
 - 23)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담배판매세, 마권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24) 특별부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등
 - 25)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방위세, 교육세 등
 - 26)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담배판매세, 마권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27)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 등
 - 28) 23), 26) 등과 동일
 - 29)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 방위세, 교육세 등
 - 30) 23), 26), 28)과 동일
 - 31) 특별소비세, 관세
 - 32) 마권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 33) 자동차세 등
-

表 2-2 農業關聯 稅分類模型

과세주체별		국 세		지방세	
누·역진 세별 경제 활동과정별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류	누진세 부담전가여부별	소득세 ¹⁾	—	농지세 ³⁾	—
		법인세 ²⁾	—	재산세 ⁶⁾	—
		상속세 ⁴⁾	—	—	—
		증여세 ⁵⁾	—	—	—
유통세류	비례(역진)세	—	양도소득세 ⁷⁾	—	취득세 ¹⁰⁾
		—	부가가치세 ⁸⁾	—	등록세 ¹¹⁾
		—	인지세 ⁹⁾	—	—
소비세류		—	관세 ¹²⁾	—	도축세 ¹⁴⁾
		—	특별소비세 ¹³⁾	—	—
기타세	혼합 또는 구분 불명	—	—	주민세 ¹⁵⁾	면허세 ¹⁶⁾

註(과세대상 또는 분류근거) :

- 1) 축산, 양어, 고공품 생산소득 등
- 2) 농, 축, 수협 등 농어민 관련법인의 법인세
- 3) 농지소득
- 4) 5), 농지등의 상속과 증여
- 6) 농지, 기타 농업용 건물과 시설 등 재산
- 7) 농지등의 양도소득(비례세율)
- 8) 영농자재구입(비례세율)
- 9) 농어민 융자, 농지조성, 농산물 출하판매 등 관련세류
- 10) 11), 농지등의 취득 및 등기
- 11) 농수산물 및 농수산 자재 수입
- 12) 농수산물 및 농수산 자재 수입
- 13) 농수산 생산 기재용 유류와 유제품, 천연과즙 음료등 구입
- 14) 축산물 도축소비
- 15) 균등할(비례세)과 소득할(누진세)
- 16) 농지전용, 초지조성, 풍유수면매립, 인삼경작등(역·누진률의 불규칙성)

第3章

農民의 租稅負擔과 公共支出受惠

1. 農民의 所得과 租稅負担率

지난 10년간 (1976~85) 農家所得은 약 5배로 증가하였고, 租稅公課金負擔은 약 2.4배로 증가하였다. 農民의 租稅負擔率은 1976年的 1.5 %에서 1985年에는 0.8%로 약 0.7%포인트 減少하였다. 즉, 1976~1985年에 農民의 所得은 증가하여 왔음에 반하여 農民의 擔稅率은 현저히 減少하였음을 示唆한다 <表 3-1>.

2. 農民의 相對的 担稅率

가. 農家 所得階層間의 擔稅率

농가의 경작규모별 擔稅率은 1985年的 경우 0.5ha 미만의 농가가 0.8 %, 0.5~1.0ha의 농가가 0.7 %, 1.0~1.5ha 농가가 0.6 %, 1.5~

2.0 ha 및 2.0 ha 以上 농가는 각각 0.8 %와 1.3 % 등으로서 1.0 ~ 1.5 ha의 중간계층의 擔稅率(0.6%)이 가장 낮았고 2.0 ha이 상을 경작하는 농가계층의 擔稅率이 가장 높았다.

10년 전인 1976 年에 전국 평균 농가의 擔稅率은 1.7 %였으며, 최하율의 稅金을 부담한 계층은 0.5 ha 미만의 농가(담세율 1.0 %), 최고율의 稅金을 부담한 계층은 2.0 ha 이상의 농가(2.9 %)였던 것이 이와같이 中間階層最下率擔稅傾向으로 바뀐것은 특히 농촌의 中產層保護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意味있는 變化라 할 수 있다〈表3-2〉,〈附表3-1,3-2,3-3〉.

表 3 - 1 農家의 租稅公課金 負擔率

단위 : 원, %, 배

	1975	1976	1980	1984	1985	80/75	85/76	85/84
농가소득(A)	872,933	1,156,254	2,693,110	5,549,132	5,736,246	3.09	4.96	1.03
농업소득(B)	714,838	921,193	1,754,816	3,699,318	3,698,936	2.45	4.02	0.99
조세공과금(C)	12,687	19,540	60,865	81,718	46,577	4.80	2.38	0.57
조 세 (C ₁)	9,831	15,593	47,488	69,394	33,218	4.83	2.13	0.48
공과금 (C ₂)	2,856	3,947	13,377	12,324	13,359	4.68	3.38	1.08
C / A (%)	1.45	1.69	2.26	1.47	0.81	-	-	-
C ₁ / A (%)	1.13	1.35	1.76	1.25	0.58	-	-	-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년도 .

表 3 - 2 農民의 耕地規模別 担稅率* 比較

단위 : %

경지규모 년도	1976	1980	1984	1985	1985-1976	1985-1984
전 국 평 균	1.7	2.3	1.5	0.8	0.9	0.7
0.5 ha 미 만	1.0	1.4	0.8	0.8	0.2	0.0
0.5 ~ 1.0 ha	1.2	1.7	1.0	0.7	0.5	0.3
1.0 ~ 1.5 ha	1.5	2.3	1.4	0.6	0.9	0.8
1.5 ~ 2.0 ha	2.3	2.9	1.8	0.8	1.5	1.0
2.0 ha 이 상	2.9	3.9	2.4	1.3	1.6	1.1

* 조세 공과금 부담률 (=조세 공과금÷소득액 × 100)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에서 발췌 計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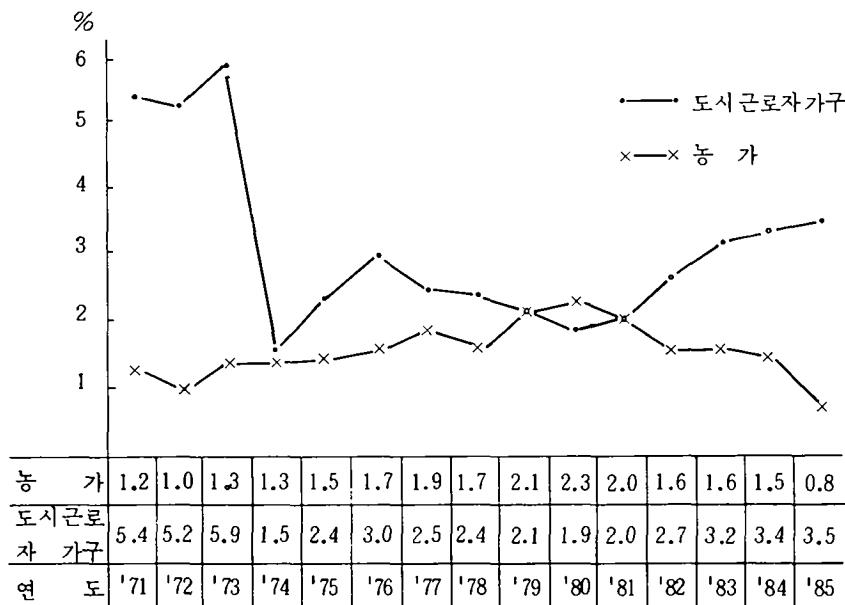
나. 都農間의 擔稅率 推移

1973年이전까지 都市勤勞者家口의 담세율은 농가의 擔稅率을 현저히 上廻하는 5~6% 수준이었다. 그러나 稅制改善 등으로 인하여 1974年에는 1.5%로 격감되었고, 그후에는 1976年的 3.0%, 1980年的 1.9%, 1985年的 3.5% 등 2~3.5% 범위내에서 약 4~5年 간격으로 起伏이 계속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上昇勢에 있다.

이에 비하여 농가의 租稅公課金負擔率은 1972年부터 1979年까지는 1.0~2.0% 범위내에서 계속 높아져 오다가 1980年的 2.3%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 현재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圖 3-1, 附表 3-4)。

지난 10年동안,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擔稅率이 同一水準을 이루었던 1979, 1981兩年과 농가의 擔稅率이 都市家口의 擔稅率을 上廻했던 唯一한 1980年(농가 2.3%, 도시근로자가구 1.9%)을 除外하고는 언제나 도시근로자가구의 擔稅率이 높았었으며, 특히 1982年이후에 都·農間

圖 3-1 都農間의 擔稅率 比較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년도.

의 擔稅率隔差가 점점 擴大되어 1985 年에는 都農間擔稅率이 각각 3.5 % 와 0.8 %라는 현저한 차이 (2.7 %포인트)를 보이고 있다.

즉, 都農間擔稅率은 농가가 1970 年代에는 1.0 ~ 2.3 %의 점증경향을 보였음에 반하여 都市勤勞者家口는 5.4 ~ 1.9 %의 점감경향을 보여오다가 1980 年代에 들어와서는 1980 年을 기점으로 하여 농가의 擔稅率이 下向勢, 都市勤勞者家口의 擔稅率이 上向勢에 있다. 1984 年의 농지세제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농가의 擔稅率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公共支出에 의한 農民受惠

가. 小序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 餘年동안 농가소득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왔으며, 반면에 農家擔稅率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減少하여 왔다.

그렇다면 농민의 그와같은 所得水準과 擔稅趨勢下에서 농민이 課稅權者인 국가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받은 報償 즉, 納稅에의 反對給付는 어느 정도인가?

농민이 國家 등으로부터 받는 擔稅報償은 물론 너무 광범하고 複合的이기 때문에 단순한 計數化만으로는 다 表現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여기서 論하는 농민의 擔稅報償은 극히 制限된 범위와 前提下에서 分析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研究가 농민의 租稅負擔에 관한 綜合的인 고찰이라는 점에서 必要不可缺한 接近이다.

극히 單純화한 觀點에서 볼 때, 농민이 課稅權者인 中央 및 地方政府로부터 받는 反對給付는 농민이 개별적으로 직접 감지할 수 있도록 받는 부분의 화폐적 가치를 評價하는 方法과, 公共支出이 농민이 소속해 있는 地域의 福祉와 開發을 위하여 投入되는 절대적 및 상대적 규모에 의하여 評價하는 方法 등 多樣한 接近이 가능하겠으나 여기서는 後者에 의한다.

즉, 地方自治團體豫算의 農民福祉와 農畜產業投資 및 農村地域開發分野

에의 支出 규모와 比率을 기준으로 現況과 傾向을 概觀함으로써 農민의 公共支出 受惠度를 파악해 본다.

나. 地方自治團體豫算의 農民福祉寄與

(1) 지난 10年 동안 지방자치단체(전국의 특별시, 직할시 각도 및 市郡포함)의 歲出豫算 중 農畜產經濟事業費로 投入된 금액은 1976 年의 26,346.3 百萬원에서 1985 年에는 약 7.8 배 수준인 196,054.1 百萬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農畜產經濟費의 점유율은 같은 期間에 7%에서 6%로 微減勢이나, 지방자치단체의 產業經濟費 중에서 農축산경제비가 점하는 비율은 같은 期間에 45%에서 58%로 증가하였는바, 특히 '80 年代에 들어와서 뚜렷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附表 3-5>.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4 ~ 5 年 동안 예산지출면에서 農민의 所得과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農민이 속해 있는 地域發展을 촉진하는 데에 優先順位를 두어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전국의 郡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歲出豫算額 중에서 農민의 福祉向上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社會福祉費'에의 지출액은 지난 10 年 동안(1976 ~ '85) 18,779.5 百萬원에서 약 6.5 배 수준인 122,010.3 百萬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構成比는 지출총액의 11%에서 12%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附表 3-6>.

郡의 산업경제비 중 農林業 및 農촌진흥비는 같은 期間에 30,763.3 百萬 원에서 약 5.8 배인 178,822.9 百萬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것이 郡의 지출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 ~ 20% 범위로서, 최근에 근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郡의 산업경제비 중 農林業과 農촌진흥비의 구성비는 98 ~ 99% 수준이며, 郡의 公益事業費 中 地方開發費의 비율은 1984, 85 年에 각각 68% 와 65% 수준이다.

이와 같이 地方自治團體 전체적으로나 郡 단위 지방자치단체만으로나 豫算支出額 중에서 占하는 對農民 社會福祉費, 農畜產 및 農村振興費, 그리고 地方開發公益事業費 등의 증가경향 <表 3-3>은 直接的 具體的인 指標로

表 3-3 農民担税率과 農民福祉 指向性 公共支出 比率 推移
단위 : %, 倍

	1976	1979	1980	1981	1984	1985	실제금액의 증감배수
담세율 ¹⁾	1.69	2.10	2.26	1.89	1.47	0.81	2.4
공공지출 I ²⁾	0.18	0.19	0.18	0.20	0.14	0.16	5.8
공공지출 II ³⁾	0.99	0.99	0.99	0.99	0.99	0.99	5.7
공공지출 III ⁴⁾	0.11	0.10	0.11	0.12	0.11	0.12	6.5
공공지출 IV ⁵⁾	0.45	0.44	0.44	0.52	0.55	0.58	7.4

1) 조세공과금 부담률(=조세공과금 ÷ 소득금액 × 100) .

2) 전국郡의 일반회계 예산지출액 중 농림업과 농촌진흥비의 비율 .

3) 지방자치단체 전체 (특별시 , 직할시 , 도 , 시 , 군) 의 산업경제비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지출액의 비율 .

4) 전국군의 예산 지출액중 사회복지비의 비율 .

5) 전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중 농림업과 농촌진흥비의 비율 .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 연감」, 각년도.

서는 미흡하나 이 節 小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一定 범위 내에서는 擔稅農民의 所得과 福祉向上에 완만하나마 寄與의인 方向으로 關聯政策의 方向이 변화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4. 稅制改善論의 提起

앞의 1節과 2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동안 農民의 소득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관련稅制는 수시로 改善되어 農民의 擔稅率은 특히 80年代에 와서 현저히 減少하고 있다.

농민의 擔稅率은 절대적으로 減少하였을뿐 아니라, 농업내부에서는 최하율 擔稅階層이 1.0 ~ 1.5 ha 경작규모의 중간계층으로 바뀌었으며, 都農間比較의 相對的 觀點에서도 농민의 擔稅率은 현저한 감소경향이다.

또 앞의 3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農民의 擔稅에 대한 反對給付로

서의 公共經費支出의 受惠度에 있어 서도 개괄적이나마 最近에 農민에게 비교적 有利하게, 즉, 農民의 所得과 福祉向上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支出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地調查 등을 통한 農民의 반응과 輿論에 의하면, 農民은 아직도 그들이 負擔하고 있는 각종 租稅에 대하여 막연하나마 不滿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改善을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農民이 계속하여 稅制의 改善을 기대하는 根本要因은 다음과 같이 集約되고 있다. 첫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農業生產資材費와 勞賃 등이 주축을 이루는 농업생산비의 증가를 반영치 못하는 낮은 農產物價格 및 가격의 不安定性과 그로인한 農家所得保障에의 信念缺如, 둘째, 1970 年代中半期以後 현저히 증가한 農家の 負債累增 및 그로인한 農民의 重壓的負擔感, 세째, 都市 및 中流以上所得階層에 대하여 느끼는 農民의 相對的貧困感(삶의 質을 추구하는 農民의 意識 대두) 등이다.

따라서 農民이 부담하는 農業關聯租稅의 制度의 改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課題이며, 이研究에서의 稅制改善論은 그러한 문제들을 직접 간접으로 해소하려는 試圖的 接近이다.

附表 3-1 耕地規模別 担税率, 1976

	전국평균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농 가 소득(A)	1,156,254	670,191	977,223	1,318,888	1,697,316	2,523,302
농 업 소득(B)	921,193	378,957	760,874	1,132,470	1,480,909	2,222,929
조세공과금(C)	19,540	6,780	11,836	20,259	39,242	72,577
조 세(a)	15,593	4,169	8,317	15,997	33,078	65,848
공 과 금(b)	3,947	2,611	3,519	4,262	6,164	6,729
C / A	0.017	0.010	0.012	0.015	0.023	0.029
C / B	0.021	0.018	0.016	0.018	0.026	0.033
a / A	0.013	0.006	0.009	0.012	0.019	0.026
a / C	0.198	0.615	0.703	0.790	0.843	0.907
b / C	0.202	0.385	0.297	0.210	0.157	0.093

附表 3-2 耕地規模別 担税率, 1980

	전국평균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농 가 소득(A)	2,693,110	1,983,201	2,276,694	2,861,670	3,611,609	4,884,495
농 업 소득(B)	1,754,816	680,891	1,410,861	2,044,276	2,784,109	4,111,961
조세공과금(C)	60,865	27,423	38,020	64,493	104,358	192,775
조 세(a)	47,488	18,802	27,196	49,537	84,196	168,675
공 과 금(b)	13,377	8,621	10,824	14,956	20,162	24,200
C / A	0.023	0.014	0.017	0.023	0.029	0.039
C / B	0.035	0.040	0.027	0.032	0.037	0.047
a / A	0.018	0.009	0.012	0.0176	0.023	0.035
a / C	0.780	0.686	0.715	0.768	0.807	0.875
b / C	0.220	0.314	0.285	0.232	0.193	0.126

附表 3-3 耕地規模別 担税率, 1985

	전국평균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농 가소득(A)	5,736,246	4,078,409	4,901,787	5,779,791	6,982,476	8,621,890
농업 소득(B)	3,698,936	1,322,203	2,571,052	3,975,003	5,431,621	7,207,347
조세공과금(C)	46,577	33,770	34,150	36,663	57,396	109,028
조 세(a)	33,218	24,296	22,575	25,267	42,229	81,282
공 과금(b)	13,359	9,474	11,575	11,396	15,167	27,746
C / A	0.008	0.008	0.007	0.006	0.008	0.013
C / B	0.013	0.026	0.013	0.009	0.011	0.015
a / A	0.006	0.006	0.005	0.004	0.006	0.009
a / C	0.713	0.719	0.661	0.689	0.736	0.746
b / C	0.287	0.281	0.339	0.311	0.264	0.254

附表 3-4 都農間 租稅公課金 負擔推移, 1970~85

區分 年度別	都市 勤勞者 家口			農 家 口		
	所 得(A)	租 稅公課金 (B)	負 擔率 (B/A)	所 得(C)	租 稅公課金 (D)	負 擔率 (D/C)
1971	451,920 원	27,480 원	5.42 %	356,382 원	4,137 원	1.16 %
1972	517,440	28,920	5.59	429,394	4,282	1.00
1973	550,200	32,280	5.87	480,711	6,399	1.33
1974	644,520	9,720	1.51	674,451	8,720	1.29
1975	859,320	20,520	2.39	872,933	12,687	1.45
1976	1,151,760	35,400	3.07	1,156,254	19,540	1.69
1977	1,405,080	36,120	2.57	1,432,809	26,723	1.87
1978	1,916,280	45,600	2.38	1,884,194	31,590	1.68
1979	2,629,596	55,810	2.12	2,227,483	46,862	2.10
1980	3,205,152	60,912	1.90	2,693,110	60,865	2.26
1981	3,817,224	77,304	2.03	3,687,856	69,968	1.90
1982	4,326,888	118,260	2.73	4,465,175	72,242	1.62
1983	4,990,572	158,364	3.17	5,128,244	77,429	1.51
1984	5,554,644	187,248	3.37	5,549,132	81,718	1.47
1985	5,753,832	202,728	3.52	5,736,246	46,577	0.81

附表 3-5 地方自治團體 歲出豫算* 중 農商產經濟口 比重

단위 : 1,000 원

구 분	1976	1979	1980	1981	1984	1985	1985/'76	1981 / '76	1985 / '80
합 계 (A)	396,679,815	1,072,277,707	1,459,277,415	1,790,001,584	2,934,344,038	3,411,537,346	8.60	4.51	2.34
산업경제비 (B)	59,210,806	147,936,303	201,498,146	265,741,900	240,040,437	339,133,553	5.73	4.49	1.68
농 축 산(C)	26,346,345	64,741,220	89,122,649	138,366,375	131,513,392	196,054,110	7.44	5.25	2.2
비율	C/A 0.07	0.06	0.06	0.08	0.05	0.06	-	-	-
	C/B 0.45	0.44	0.44	0.52	0.55	0.58	-	-	-

* 순계예산기준(순계예산이란 총계예산에서 단체란 및 회계란에 중복 계상된 예산을 공제한 것임)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附表 3-6 郡의 一般合計歳出額* 중 社會福祉費, 農畜產經濟費 및 地方共益事業費의 比重

단위 : 천원

구 분	1976	1979	1980	1981	1984	1985	'85 / '76	'81 / '76	'85 / '80
합 계 (A)	170,207,475	385,288,660	525,665,185	728,528,025	890,858,049	1,134,455,682	6.67	4.28	2.16
사회복지비(B) (복지사업)	18,779,528	39,245,720	55,495,587	84,475,346	93,785,549	122,010,344	6.50	4.50	2.20
산업경제비(C)	31,172,903	73,739,303	94,349,784	147,892,946	121,492,011	182,903,703	5.87	4.74	1.94
농 림 업(D) 농촌진흥비	30,763,337	73,311,773	93,731,710	147,088,898	119,824,222	178,822,944	5.81	4.78	1.91
공익사업비(E)	28,849,086	71,419,186	97,667,788	134,551,287	155,678,619	228,368,574	7.92	4.66	2.34
지방개발(F)	-	-	-	-	(106,494,488)	(149,029,073)	-	-	-
비 율	B / A	0.11	0.10	0.11	0.12	0.11	0.12	-	-
	D / A	0.18	0.19	0.18	0.20	0.14	0.16	-	-
	D / C	0.99	0.99	0.99	0.99	0.99	0.98	-	-
	F / E	-	-	-	-	0.68	0.65	-	-

* 純計豫算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第 4 章

農業關聯 所得 · 財產課稅

1. 農業關聯 所得 · 財產課稅의 問題意識

가. 稅收의 源泉性

농민의 所得과 收益은 근본적으로 노동(농업노동)과 재산(農地財產 등)에서 창출되며 그것은 곧 국가의 基本稅源이 되고 있다. 현행 稅制上 농민의 소득(농업소득)에 근거를 둔 主된 租稅는 농지세이며, 농민의 재산에 근거를 둔 주된 租稅는 財產稅(농지재산세)이다.

따라서 이들 농지세와 농지재산세는 농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 次的 소득 · 재산과세로서, 그것이 農本國家로부터 발전하여온 國家의 稅收源(地方財政)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나. 所得再分配 등 役割의 未洽性

농민이 부담하는 농지세와 재산세는 累進 · 直接稅類로서 郡單位의 地方自治團體 재정수입원중에서는 평균 70% 내외의 큰 比重을 占하고 있으나〈附表 4-1〉, 全國規模의 稅收額(國稅와 地方稅) 중에서는 그 비중이

表 4 - 1 韓國의 直·間接稅 構成比 推移

	1965	1968	1971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조세총액(T) (億원)	703	2,305	4,929	15,498	23,133	29,593	40,956	53,609	65,754	81,723	95,156	114,479
직접세(D) (億원)	229	770	1,818	3,960	6,780	8,338	11,433	12,210	17,290	22,505	26,340	29,253
간접세(I) (億원)	474	1,535	3,111	11,538	16,353	21,255	29,523	38,399	48,464	59,281	68,816	85,226
비중 I/T %	67.4	66.6	63.1	74.4	70.7	71.8	72.1	71.6	73.7	72.5	72.3	74.4
D/I %	48.3 (0.5)	50.2 (0.5)	58.4 (0.6)	34.3 (0.3)	41.5 (0.4)	39.2 (0.4)	38.7 (0.4)	31.8 (0.3)	35.7 (0.4)	38.0 (0.4)	38.3 (0.4)	34.3 (0.3)

()안의 수치는 D/I 率

자료 : 한국은행, 「國民所得計定」, 1984; 재무부, 「間接國稅主要統計」, 1984.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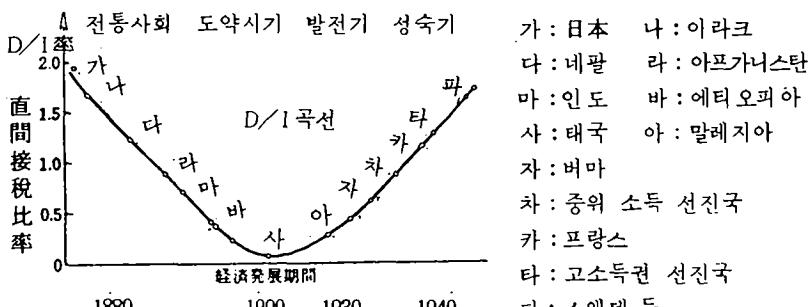
국가 세수액중에서 이들 所得·財產稅類¹⁾로主流를 이루는 直接稅의 비율은 流通 및 消費稅類로主流를 이루는 間接稅보다 현저히 낮기때문에 〈表 4-1〉. 소득·재산세류 특히, 농업관련 所得·財產稅類의 課稅에 의한 所得再分配機能은 미약하다. 이와같이 稅收額중直接稅의 비율이 낮은 것은 租稅에 의한 所得再分配機能의 未洽要因이 될뿐아니라 우리의 現經濟發展水準에도 못 미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다.²⁾

다. 資源配分機能의 相反性과 새로운 問題의 提起

지방세중에서의 농지세와 재산세, 그리고 국세중에서의 所得稅·法人稅와 相續稅·贈與稅 등으로 代表되는 所得·財產課稅는 전술한 바와 같이兩者가 累進, 直接稅로서 작든 크든 所得再分配의 役割을 한다는 점에는共通性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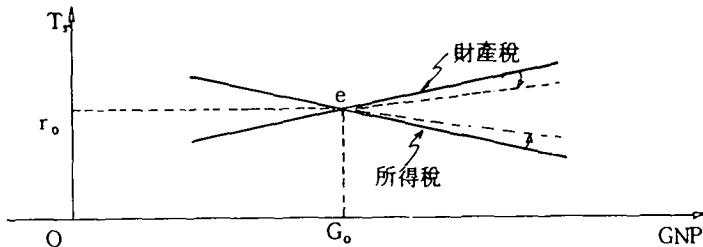
- 1) 농지세(지방세), 소득세와 법인세(국세), 재산세(지방세), 상속세와 증여세(국세)등.
- 2) Hinrich H. H.에 의하면 자본주의경제의 生成期에서 成熟期에 이르는 동안(初期傳統社會→경제도약期→경제발전期→경제성숙期)에 대한 時系列分析결과 直接稅/間接稅의 比率(D/I Ratio)은 경제발전과정에 따라 U字型曲線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는데, 이 U字型曲線上에서 한국은 현재의 경제성장 단계로 보아 D/I率이 〈表 4-1〉에 제시된 0.6~0.3의 수준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經濟發展過程別 D/I率推移



자료 : Hinrichs, H. H., A General Theory of Tax Structure Chang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1966. p. 101.

圖 4 - 1 經濟成長에 따르는 財產 · 所得課稅 稅率 推移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所得稅類와 財產稅類는 課稅의 源泉이 소득과 재산등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르다는 점때문에 일정한 財政支出財源이 세금으로 확보되어야 할 경우, 즉, 일정한 稅收需要를前提로 할 때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의 증감변화는 그 課稅源泉인 勞動과 財產에 영향을 주어 資源分配의 役割에서 서로相反된 입장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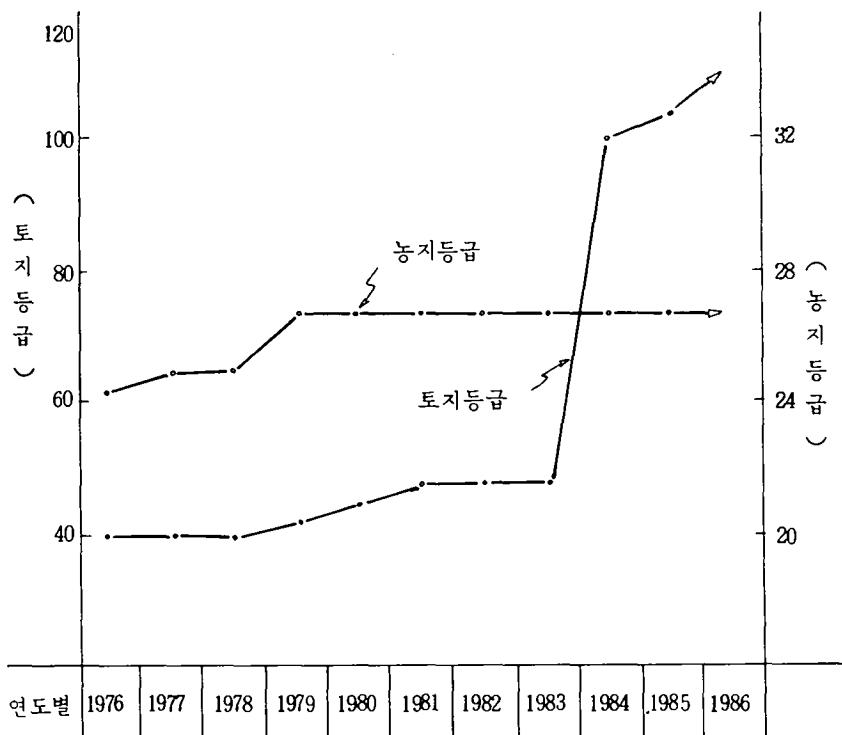
所得稅賦課는 勞動階層所得의 절대적 감소(資本階層收益의 相對的 증가)를 초래하고, 財產稅賦課는 자본계층 수익의 絶對的減少(노동계층 소득의 相對的增加)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資本主義經濟體制하에서는 경제가 成長發展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財產도 증가하여 蓄積되는데 반하여, 労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減少하기 때문에 經濟가 발전할수록 所得財產課稅의 總額중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줄고 財產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順理이고 (圖 4-1), 빈부의 격차를 줄여 간다는 점에서 社會正義에도 寄與의이다.³⁾

그러나 만일 어떤 경제 사회적 제약(제도상의 결함이나 社會階層間의 힘의 不均衡 등)으로 인하여 그原理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새로운 問題가 제기된다.

3) 농업, 농지, 농민등의 입장에서 보면, 농지세(농업소득세)와 재산세(농지재산세)는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에 따라 農地所得이 증가하면, 일정 기간동안은 農地稅(농업소득세)가 재산세보다 증가하지만, 그期間을 넘어서부터는 증가한 농업소득이 蓄積되어 財產(농지)의 증가를 초래하고 재산이 증가하면 재산세가 증액될 것이다. 즉, 農業內部적으로만 볼 때는 농업소득세가 줄고, 財產稅(농지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 所得 및 資源의 配分上衡平寄與의이다.

圖 4 - 2 農地稅와 財產稅의 課稅基礎가 되는 農地에 대한
基準收穫畠等級과 土地等級 變動推移



1984 年의 農地稅制改正으로 중소농층의 農地所得에 대한 補填效果를 기하고, 그로 인한 地方稅收의 결함은 財產稅類의 증가를 통하여 充當코자하는 경향(1974 年 對比 農지세는 785 億원 減, 財產稅는 200 億원 增, 취득세는 350 億원 增, 등록세는 330 億원 증 등)과試圖<圖 4-2> 등은 農촌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으나, 大農層所有 農地에 대한 財產稅 增課가 累進率擴散에 따르는 農지세 增課와 더불어 租稅의 重課要因이 된다는 점에서 大農層의 課稅不滿의 表出이라는 새로운 問題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구체적 예이다.

2. 農業關聯 所得課稅

농업 관련所得課稅의 대상은 農地所得, 畜產所得, 임업소득과 산림소득, 농지 등의 不動產所得, 농민의 利子 및 出資配當所得, 農畜協의 法人所得 등으로서 이들 所得에 대하여 關聯稅法에서는 각각 農地세, 事業소득세, 산림소득세, 부동산소득세, 利子 및 配當所得稅, 法人稅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農地所得에 대한 課稅: 農地稅

① 農地稅의 性格과 稅制上 概要

농지세는 첫째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칙上 農地라는 재산을 課稅客體로 하여 그 농지의 收益을 稅源으로 하는 收益稅이다. 그런데 농지가 지닌 特殊性으로 인하여 농지재산의 收益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발생되는 所得과 농지를 他人이 이용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농지 임대소득)등으로 귀착한다.

둘째, 현행 지방세법상 農地所得에 대한 課稅라고 明示하고 있듯이 농지세의 실질적 과표는 農地所得이며, 따라서 農地稅는 앞에서 지적한 농지재산수익세로서의 性格을 지닌, 특수한 所得稅이다.

改正地方稅法에 의하면 現行 農地稅는 <表 4-2>와 같은 骨骼을 갖추고 있다.

② 農民의 農地稅負擔과 農地稅의 財政寄與

가) 農民의 農地稅負擔

1985 年 농가호당 農地稅負擔額은 7,336 원으로서 稅制改正直前인 1984 年의 46,883 원 對比 15.6 %, 1980 年의 29,035 원 對比 25.3 % 水準으로 濟減되었다.

表 4 ~ 2 農地稅制의 概要

구 분	현 행 (1986)	개 정 전 (1984)	비 고
가) 납세의무자	농지경작자 또는 소유자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개정전후 불변
나) 과세 표준	농지의 소득	농지의 조수입	• 일원화,
다) 기초 공제	144만원	115만원 ¹⁾ , 17만원 ²⁾ , 132만원 ³⁾	상향조정
라) 세율 구조	6~55% (16단계)	6~10% (3단계) ⁴⁾ , 10~20% (3단계) ⁵⁾	• 통합다단화

1) 미작농, 2) 미작이외의 작물, 3) 미작과 기타작물 병작농,
4) 미작농: 6~8~10%, 5) 특작농: 10~15~20%

表 4 - 3 農家戶當 農地稅 負擔率

단위: 원, %

	1974	1980	1983	1984	1985	85/74	85/84
농가소득(A)	674,500	2,693,100	5,128,200	5,549,100	5,736,200	8.5	1.0
조세공과(B)	8,720	60,865	77,429	81,718	46,000	5.3	0.6
농 지 세(C)	5,832	29,035	45,286	46,883	7,336	1.3	0.2
C / A	0.9	1.1	0.9	0.8	0.1	-	-
C / B	66.9	47.7	58.5	57.4	16.0	-	-

자료: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년도.

농가호당 租稅公課金 중 농지세의 비중도 1974년의 66.9%, 1980년의 47.7% 및 1984년의 57.4% 등에 비하여 1985년에는 16.0%로 감소하였으며, 農家所得對 農地稅負擔率은 1980년의 1.1%에서 1985년에는 0.1%로 激減되었으며, 지난 10年間의 平均擔稅率水準에도 현저히 下廻하고 있다(表 4-3)。

이와같이 農民의 農地稅負擔率 激減은 물론 1984年末의 農地稅制改正에 따른 것이다. 改正 農地稅制下에서의 農民부담 減少 내용을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米作專業農家の 경우, 경작면적이 3,000坪 규모의 農가는 改正前의 137,000원 상당 農地稅를 면제한 셈이 되었고, 9,000坪 규모의 農가는 改正後에 16만원의 農地稅를 부담함으로써 改正前의 66만원 對比 24.2%水準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경작면적 30,000坪의 農가는

表 4-4 農地稅制 改正前後 農地規模別 農地稅 負担

	개정전 ('84) ²⁾ (A)	개정후 ('85) ³⁾ (B)	B / A (%)	B - A (원)
⋮				
50,000	4,246,190	4,259,750	100.3	+ 13,560
30,000	2,498,675	1,731,480	69.3	△ 767,195
10,000	748,355	201,900	27.0	△ 546,455
9,000	661,400	159,920	24.2	△ 501,480
6,000	400,535	68,880	17.2	△ 331,655
3,000	136,865	-	-	-

1) 농지등급 27 등급, 미곡 필요경비율 53 % 기준.

2) 54 kg 조곡 2등품 수매가격 28,050 원 기준.

3) " " 29,450 원 기준.

개정전의 250 만원에서 그 69.3 %수준인 173 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작면적이 50,000坪을 초과하는 농가는 개정전보다 擔稅率이 높아졌는데, 50,000坪 농가에 한해서는 개정전의 424만 6천원에서 425만 9천원으로 근소한(100.3 %)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表 4-4〉.

즉, 1984年 농지세제의 개정으로 농민의 농지세 부담률은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改正前에 비하여 대체로 면적이 3,000坪 이하는 0 %(免除), 6,000坪 이하는 17 %, 9,000坪이하는 24 %, 10,000坪이하는 27 %, 30,000坪이하는 69 %등의 水準으로 낮아졌으며, 50,000坪을 초과하면서 부터는 改正前보다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와같이 50,000坪을 초과하는 농가의 農地稅負擔이 改正前에 비하여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하여는 異見이 있어 새로운 論點이 되고 있다.

농지세제의 개정으로 농민의 農地稅負擔이 輕減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가지 留意할 사실은, 농민의 농지세 實際負擔額과 法定稅額의 비교에 있어서, 改正前에는 농지 규모의 大小에 관계없이 대체로 실제부담액이 法定稅額水準을 下廻하였으나, 改正後에는 大農일수록 실제부담액이 법정세액보다 낮은 水準이고 中小農일수록 법정세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납부하는 경향이 事例調査결과 밝혀졌다〈附表 4-2〉.

表 4 - 5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比重

단위 : 100 만원 , %,

	지방자치단체(a)		군(b)		b / a		85 / 84	
	1984	1985	1984	1985	1984	1985	a	b
지방세수입(A)*	1,487,429	1,698,331	171,907	197,740	11.6%	11.6%	114.2%	115.0%
농지세수입(B)	87,560	14,130	82,422	12,991	94.1%	91.9%	16.1%	15.8%
B / A	5.89%	0.83%	47.95%	6.57%	-	-	-	-

* 순계액 기준

자료 : 내무부, 「지방세 정연감」, 각년도.

나) 농지세의 財政寄與率

지방자치단체의 地方稅收總額에 대한 농지세의 비중은 1984 年의 5.9 %에서 세제개정 후인 1985 年에는 0.8 % 수준으로 濟滅되었다. 地方自治團體 중 郡 단위의 지방세수액 중 농지세의 비중은 1984 年의 47.9 %에서 1985 年에는 6.6 %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全國의 지방자치단체 농지세 수입액 중 郡 단위 지방자치단체 농지세수입액의 비중은 1984 年의 94.1 %에서 1985 年에는 91.5 % 수준으로 감소하였다(表 4-5)。

이러한 일련의 農地稅減少 경향은 농민의 부담이 減少된 만큼 地方財政에의 寄與率이 낮아지고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는 그 減額分을 充當키 위한 새로운 稅源開發이 不可避함을 示唆한다.

據稅에 민감한 一部農民이 그 不足分을 充當키 위하여 농지분 財產稅를 重課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表示하는 事例는 그와 같은 地方自治團體의 稅收減少에 대한 對應策을 가급적 農地와 關聯된 財產稅以外의 部分에서 찾아야 한다는 事實을 暗示한다고 볼 수 있다.

③ 農地稅의 決定要因과 農民의 認識

가) 농지세의 決定要因

일반적으로 농지세에 대한 농민족의 그릇된 認識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농지세의 決定要因에 대한 인식과 理解의不足 및 농지세액의 決定要因中 課稅行政當局의 임의介入의 가능성이 큰 部分에 대한 客觀性의 결여 등에

起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農地에 대한 收益稅 성격의 所得課稅인 農地稅額은 稅法上 규정된 몇 가지 要因 즉, 농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Yg), 농지면적(A), 미국의 정부수매가격(P), 미국의 所得率(Ir), 또는 미국의 必要經費率(NCr), 控除額(D) 및 稅率(R) 등에 의하여 決定된다.

農地稅額算出에 관한 $T_a = f(Yg \cdot A \cdot P \cdot Ir \cdot D \cdot R)$ 的 關係式에서 경지면적이 一定하고, 收買價格은 政治的인 要素까지를 감안하여 一定水準에서 決定되며, 基礎控除額과 稅率은 이미 規定된 稅法에 의하여 固定되어 있으므로 관련 行政機關의 任意介入의 可能性이 비교적 큰것은 결국 농지의 基準收穫量等급<圖 4-2 참조>과 米穀所得率 또는 必要經費率 등이다(단, 미국필요경비율 = 1 - 미국소득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民은 이러한 농지세액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비생산적인 誤解와 不滿을 表出하는 事例가 있다.⁴⁾

따라서 농민을 상대로한 課徵稅行政을 맡고 있는 一線 邑面行政實務者는 이와같이 行政의 任意介入의 可能性이 높은 事項의 處理에 客觀的으로 임해야 할 것을 要한다.

나) 농지 세 課徵에 관한 農民의 認識

여기서 提示되는 농지세課徵에 관한 農民의 認識은 농지세負擔에 관한 現地面談調查와 最近 1~2年동안 농민들로 부터 接受한 질의문 書信등을 기초로 하여 綜合된 農民의 輿論에 根據를 둔것이다.

농민이 표현하여 온 농지세에 관한 不滿과 要求 및 建議事項중에는 농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임대차농지에의 농지세부담, 과표산출용 필요경비와 신고제, 누진율확대에 따르는 大農의 重課稅, 稅率構造의 複雜性 농지에 대한 農地稅와 財產稅並課의 適否, 基礎控除額의 未治……등 다양한 形態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重要한 것 4 가지만 集約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4) 사실은 農地에 대한 土地等級이 上向調整되어 財產稅의 부담이 증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농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의 上向調整으로 농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오해된 우려를 표출하는 사례가 있음.

(1) 農地에 대한 농지등급(기준수확량 등급)과 土地等級

농민은 그것의 事實與否에 不問하고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農地等級이 上向調整되어 농지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憂慮를 표시한다. 그러나 現地事例調查결과에 따르면, 농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農地의 基準收穫量 平均等級은 1986年10月現在 27等급으로서 1979年에 調整된 이래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確認되었다.(이에 관한 農民의 認識은 그릇된 것이었음이 確認된 것이다.)

그러나 農民의 농지세 부담을 輕減하는 방향으로 농지세 제도를 改正한 1984年부터 농지에 대한 財產稅의 課標算出上 基準이 되는 농지의 土地等級은 平均 45等급에서 2.27倍수준인 102等급으로 上向調整되었다 (p.26의 圖 4-2 참조).

농지등급이 비록 농민이 憂慮한 바와 같이 上向調整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0年동안의 농지등급의 調整過程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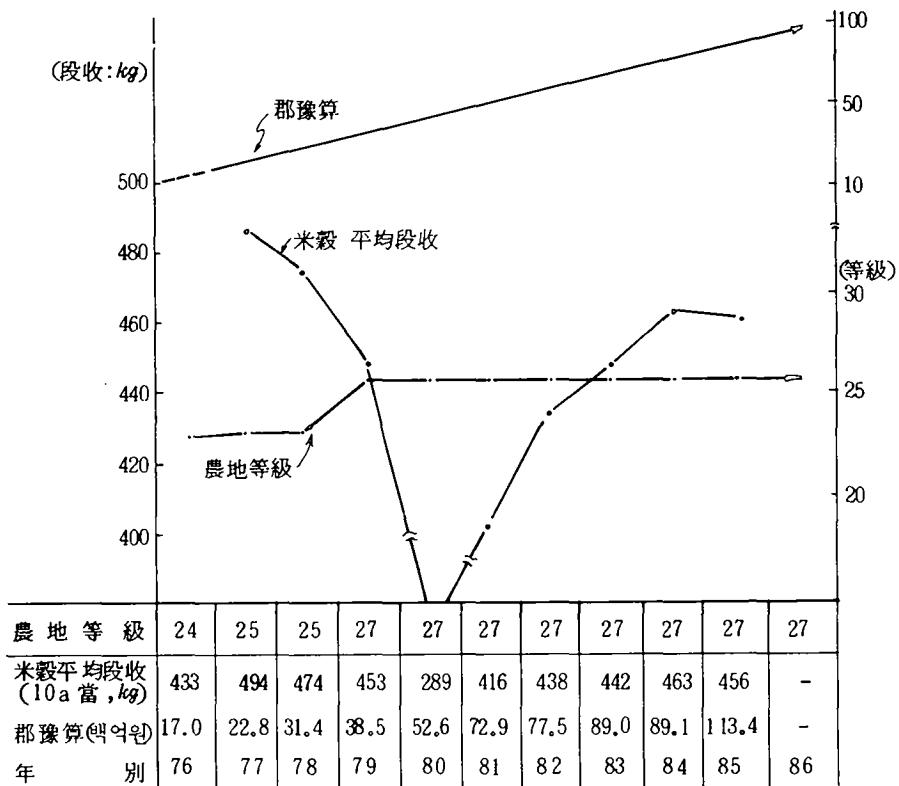
즉, 조정되는 農地等級이 그 該當農地의 實제 수확량의 増減變動을 反映치 못했다는 점이다. 농지등급은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듯이 농지세課標算出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課標自體는 實제수확량을 근거로 하여 決定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논 100m^2 의 벼수확량이 1.5kg 이면 1등급, 15kg 이면 10등급, 30kg 이면 20등급, 51kg 이면 27등급, 60kg 이면 30등급등으로 決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圖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976年 이후 현재까지 농지의 平均段收를 반영치 못하여 왔다.

(2) 농지의 貸貸人과 貸借人에 대한 農地稅

농민은 농지세제개정 이후 貸貸借農地에 대한 농지세의 일부를 貸貸人에게 부과하는 것이 貸借人에게 전가되어 貸借人重課要因이 된다고 不滿을 표시한다. 뿐만아니라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지세算出의 기초로서 適用하는 농지소득액을 1m^2 당 自作農은 132.14 원, 貸借農은 38.14 원, 貸貸農은 151.32 원등으로 差等計算하는 事例도 있다(<圖 4-4>). 임대인에게 부과된 농지세를 임차인에게 轉嫁하는 納稅者의 事例나, 농지의 소득금액을 自作農, 貸借農, 貸貸農 등으로 差等適用하는 課稅行政實務陣의

圖 4-3 農地의 平均段收와 農地等級 變動推移

(豫算額: 1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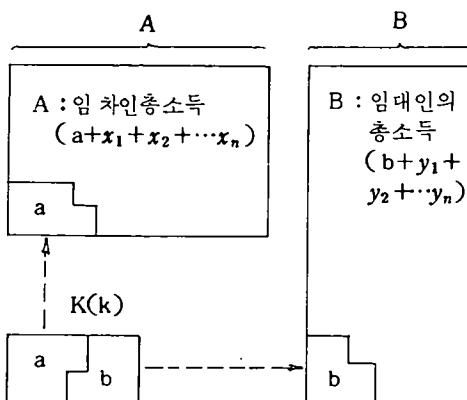
圖 4-4 貸貸借人間 1m²當 農地所得 推定額 階差

貸貸農	151.32원	
	↓	19.19원
自作農	132.14원	
	↓	94.00원
貸借農	38.14	113.18원
		차료: 事例調査結果

事例 등은 모두 現行稅法을 엄격히 遵守치 않는데 起因한 것이다.

<圖 4-5>에서와 같이 貸借人(A)은 貸借農地(K)에서 창출된 總所得(k)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a)과 그밖의 다른 농지에서 얻는 농지소득

圖 4 - 5 貸貸借 農地稅 賦課過程



k : 임대차농지 K 에서 창출된 총농지소득 ($= a + b$)

a : 임차농의 임경소득

b : 임대농지의 임대소득(임대료)

x, y : 임대 차인의 k 이외의 농지소득

(x_1, x_2, \dots, x_n 등)을 합한 소득을 課標로 하여 농지세를 부담하고, 貸貸人(B)은 자신이 임차인(A)에게 임대한 농지(K)에서 임차인(A)이 창출한 농지소득(k) 중에서 임대료조로 받는 소득(b)과 그밖의 다른 농지에서 얻는 소득(y_1, y_2, \dots, y_n 등)을 합한 소득을 課標로 하여 농지세를 부담하면 그것이 現行稅法을 가장 잘 준수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貸貸借農地에 대한 농지세부과제도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現行의 農地稅負擔이 특히 公平性面에서 적절한가의 與否를 놓고 異見이 있어 새로운 論點이 되고 있다.

(3) 농지세 課標算出上의 必要經費率과 所得標準率

지방세법 제 208 조에서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算入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金額을 위하여 投下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必要經費의 계산은 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상 소요된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기장하지 않았거나 信賴할 수 없는 기장의 경우는 “市長 郡守가 정한 作物別 평균 필요

表 4 - 6 米穀의 平均所得率과 所得標準率 比較

단위 : %

	평균소득률 (A)	소득표준율 (B)	A - B
1976	73.6	100 *	- 26.4
1980	65.1	100 *	- 34.9
1984	70.1	100 *	- 29.9
1985	69.4	45(55)	24.4
1986	-	43(57)	-

* 1984년 이전까지는 소득표준율 자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수입 전액을 과표로 결정하였음.

()안은 필요경비율.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6.

지방세법 관련 조항.

경비”를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 경우, 必要經費率은 「1 -所得標準率」의 개념으로서 농지세제개정 전에는 課標用 소득금액을 算出할 때 「租收入 × 所得標準率」의 公式을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 必要經費率 또는 所得標準率이 문제되는 것은 農民들이 지적하듯이 농지세과세대상 農作物의 必要經費率 (또는 所得標準率)이 너무 낮게 (높게) 策定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農民의 必要經費率(所得標準率)이 낮다는 (높다는) 不滿은 現實感覺이 있는 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즉, 보다 구체적으로 농지세과세의 主要對象作物인 벼의 경우, 그동안 농지세과세에 적용해온 필요경비율 또는 소득표준율은 벼의 평균소득률의 변화를反映해오지 못하였으며 <表 4-6>, 他品目에 비해서 소득표준율이 너무 높게 (필요경비율이 너무 낮게)策定됨으로써 <表 4-7> 不公平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농지세 累進率擴大와 増稅

주지하는 바와 같이 改正된 농지세제에서는 종래의 6 - 8 - 10 % (米作農의 경우) 및 10 - 15 - 20 % (기타농작물 및 特殊作物의 경우) 등의 3段階 稅率構造를 6 - 8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1 - 35 - 39 - 43 - 47 - 51 - 55 % 등의 16段階制로 多段化하면서 稅率의 一元화에 의한 作目間 公

表 4 - 7 主要 分野別 品目別 所得標準率 比較

單位 : %

分野·品目別	所得標準率	分野·品目別	所得標準率	分野·品目別	所得標準率
축산업		선 망	7.7(10.6)	과채 가공	9.9(13.6)
낙 농	8.0(10.9)	트 롤	7.7(10.6)	수산물가공	9.0(13.4)
유우사육	0.0	양식업	6.5~12.5(8.8~17.1)	설탕	10.0(13.6)
양 돈	9.0(12.2)	내수면양식	12.5(17.1)	조 미 료	12.0(16.4)
양 계	9.0(12.2)	패 류	10.0(13.6)	음료품	9.9~19.0(13.6~26.1)
임 업		해 조 류	6.5(8.8)	담 배	6.0(8.2)
양 묘	10.5(14.3)	내수면어업	10.0(13.6)	섬 유	5.0~15.0(6.8~20.5)
육 림	10.5(14.3)	석탄광업	3.8~4.7(5.1~6.9)	의 복제조	6.0~25.0(8.2~34.3)
벌 목	11.0(15.2)	철 광 업	15.5~19.0(21.2~26.1)	무 역 업	
수산업		식 품 업		부동산매매업	15.0~23.0(22.5~34.4)
해 면 어 업	5.4~7.7(7.4~10.6)	고기통조림	12.0(16.4)	의 료 업	29.0~40.0(39.7~55.0)
저 인 망	5.4(7.4)	낙 농 품	6.0~13.0(8.2~17.9)		

() 안은 최고율임.

資料：韓國稅務經營社，「1985年 所得標準率表」。

平性과 大小農間 衡平性을 期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改正稅法에서 20 %를 초과하는 稅率의 적용을 받는 耕作規模 25,000 坪이상의 농가는 改正前에 비하여 높은 法定稅率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重課要因이 된다는 不滿을 표시한다. 즉, 농민은 기초 공제액이나 課標間隔등을 고려치 않은 名目稅率만을 들어 농민重課要因이라고 指摘, 改正農地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提起한다. 現實的으로 <附表 4-3>에서 볼수 있듯이 납세농민이 農地稅制改正 이전보다 더 무거운 농지세를 부담하게 되려면 적어도 벼농사의 경우 耕作規模가 50,000坪 ($165,000m^2$)에 가까워야 한다.

즉, 농지세의 稅率構造를 多段化하고 累進率을 擴大함으로 말미암아 稅制改正전보다 많은 농지세를 내게 되는 것은 50,000坪 以上의 벼농사를 짓는 경우인데, 이는 1985年 우리나라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 1.0ha나, 農地改革法上 明示된 農地所有上限線인 9,000坪에 비하여 현저히 넓은 면적규모이라는 점에서 농민이 현시점에서, 개정농지세제에 의한 擴大累進稅率構造에 의하여 농지세를 重課케 될것이라는 우려와 不滿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50,000坪을 초과하는 農家라도 稅制改正前보다 높은, 그리고 일반법인세율보다도 높은 30 % 이상의 稅率을 적용받게 되는것이 農業內部에 있어서나 都農間의 課稅公平 및 衡平原則에 비추어 과연 바람직한가의 問題에 관하여는 여전히 異見이 있을 수 있다.

④ 現行 農地稅制의 問題點

가) 농민의 輿論과 관련하여

(1) 농지등급(기준수확량 등급)의 不合理化

농지등급을 上向調整 함으로 인하여 농지세부담이 무거워진다는 농민여론(불만)은 그릇된 認識에 기인한것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農地稅制를 改正하던 바로 그 해(1984)에 농지에 대한 財產稅賦課의 기초가 되는 土地等級을 2배이상(45 등급→102 등급) 上向調整한 점이나, 농지기준수확량등급이 단위면적당 平均收量(段收)등 실제 收穫量의 증감을 反映치

못한점등은 關聯된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課標算出用 必要經費率制(또는 所得標準率制)의 未定着

농민은 농지세과표산출의 기초가 되는 課稅對象作物의 필요경비율이 너무 낮아 (소득표준율이 너무 높아서) 課標인 所得金額이 정도이상으로 過多算出됨으로써 농지세 중과요인이 된다는 不滿을 표시한다. 그런데 앞(p. 참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예컨대 벼농사의 경우등과 같이 必要經費率 (= 1 -所得標準率)은 해당작물(벼)의 平均所得率을 反映치 못할뿐 아니라 水產, 酪農, 醫療, 製造등 他分野에 비하여 所得標準率이 현저히 높아서 (필요경비율이 낮아서) 農地稅重課要因이 될 수 있다.

(3) 賃貸借農地에 대한 課稅制度의 未定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납세농민이 불만을 표시한 賃貸借農地에 대한 농지세과세문제는 임대인부담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됨으로써 비교적 경제적으로 弱勢(劣位)에 있는 賃借農家の 농지세부담이 加重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임대차농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밖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문제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賃貸借農의 농지세부과시 單位面積당(예: 1m²) 所得金額을 自作農, 賃借農, 賃貸農 등 別로一定比率에 따라 差等計算하는 便宜主義的課徵稅節次를 취하는 점과 非營農不在地主의 相對的 輕負擔(저 누진율)으로 인한 課稅의 不公平性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즉, 不在地主라하더라도 그 賃貸人이 營農에 종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농지세를 부담 또는 課稅하는 觀角이 다를수 있는바, 특히 농지임대인(不在地主)에게 근로소득 등이 있는 非營農不在地主인 경우에는 지방세과세대상인 농지임대소득(= 농지소득 = 농지세과세대상)이 國稅課稅對象인 종합소득에 合算課稅되지 않고 課標가 바로 分離되어 課稅되므로(농지소득과 綜合所得등으로) 그에 적용되는 稅率이 合算課稅하는 경우보다 낮다. 따라서 그것을 合算課稅하는 在村營農地主(賃貸人)의 경우에 비하여 累進率이 낮은만큼 부담이 가벼우므로不公平하다(表 4-8).

(4) 累進率擴大에 따르는 大農層增稅

농지세의 累進率擴大는 곧 稅率構造多段階化의 所產이다. 엄밀한 意味

에서 稅率構造의 複雜性과도 區分되는 概念의 問題이나 農民은 稅額計算의 複雜性(困難性)과 大農層重課傾向을 改正農地稅制의 주요한 問題點으로 손꼽고 있다.

(5) 基礎控除額의 未洽

앞節〈表 4-7〉에서 提示하고 있듯이 農지세 基礎控除額은 外形上 1984 年의 改正前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都市勤勞所得者와 同一水準의 公체액이라는 점에서 과세의 公平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그것이 農家の 基本生

表 4 - 8 營農 與否別 賃貸所得 課稅比較

	농지임대인의 유형(성격)별 과세수준				
	관련세법규정 상 과세여부	비영농, 균로 소득부재자주, 연간비농업소 득 600만원	영농부재자주 연간농업소득 600만원	재촌영농자주 연간농업소득 600만원	재촌비농자주 연간 비농업 소득 600만원
• 소득세-국세-비과세 <small>(소득세법)</small>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농지세-지방세-과세 <small>(지방세법)</small>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누진화 정도	-	저율누진*	고율누진**	고율누진**	저율누진*
임대소득 규모별 적용 세율(%)	200만원 300 " " " 500 " " " 1,000 "	6-12 6-12 6-15 6-21	6-18 6-18 6-21 6-27	6-18 6-18 6-21 6-27	6-12 6-12 6-15 6-21

* 농지임대인이 균로소득 등이 있는 비영농지주인 경우 - 지방세과세대상인 농지임대소득이 국세과세대상인 종합소득에 합산처리되지 않으므로 과표가 분리되어 (농지소득과 종합소득 등으로) 적용세율이 합산처리하는 경우보다 낮음 (저 누진화).

** 농지임대인이 영농지주인 경우 - 과표를 자차농지소득과 임대농지 소득을 합산처리하므로 적용세율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높음 (고 누진화).

計費의 약 62%⁵⁾ 수준에 불과하며, 둘째, 일반도시근로자의 실제공제액의 약 41%⁶⁾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未洽하다.

나) 기타 관련 문제점

(1) 농지소득 및 必要經費의 記帳과 申告制

농지세 과세권자인 市·郡은 個人이나 法人이 농지소득을 얻기 위하여 投下한 필요경비에 관련된 事項을 장부에 기장치 않을 경우 市郡이 결정한 농지의 기준수확량등급에 의하여 課稅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 157조 2), 농지 세납 세의무자는 농지소득이 확정될 경우 곧 그所得을 市郡에 申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 213조).

그러나 피곤한 육체노동을 하고, 장부기장이 서투른 농민 대부분에게는 그러한 義務事項을 이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現地事例調査 등에 따르면 농민이 필요경비 등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확정된 농지소득을 사전에 신고하는 事例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關聯法律條項에서는 장부기장을 않거나 미흡할때 자체없이, 과세권자가 결정한 농지등급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농지세를 과세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이 와같이 99% 실현되지 않고 있는 事實을 실현된다는 假定하에 旦書條項으로 記帳 및 申告制를 규정하고 있는것은 立法趣旨上 덜 바람직하다.

오히려 기준수확량등급을 보다 科學的으로 簡定해 놓고, 그에 의하여 課稅하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서 만일 帳簿記帳을 하고 申告를

5) 1985年 농가평균家計費(4,690,854 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물비(1,332,528 원), 주거비(358,612 원), 교통 및 신발비(189,702 원), 광열 및 수도비(192,497 원), 그리고 家計雜費중에서 보건의료비(246,098 원) 등을 합한 概念(2,319,437 원).

6) 일반 도시근로자가구가 적용받는 年中실제공제액은, 年間所得이 1985年 농가평균소득과 同一水準인 5,736,000원 정도이며, 배우자(1인)와 부양가족 3인, 그리고 보험에 加入하고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등을 假定할때, 기초공제액 30만 원, 근로소득공제액 162.6만원, 배우자공제 42만원, 부양가족공제 72만원(24만 원×3인)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 각 24만원등 함께 354.6만원을 공제받고 있음.

하면 그것이 合當할 때 그에 의하여 課稅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농지에 대한 농지세와 재산세 異課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農地稅는 농지에 作物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과 농지를 他人에게 利用케 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課標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농지세의 성격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농지세는 재산수익 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농지를 타인에게 利用케 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農地라는 不動產(財產)에서 얻는 收益이며 이에 대한 課稅는 財產課稅로서의 성격도 있다. 그런데 그同一農地에 대하여 財產稅를 별도로 異課하는 것은 農地에 대한 財產稅의 稅率이 비록 낮기는 하나 二重課稅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3) 綜合土地稅制下의 農地稅

현재 構想중인 綜合土地稅制의 기본방향은 물론 잠정적이지만 土地를 所有者별로 累進課稅하되 직접 生產에 이용되는 田畠, 林野 등 농지는例外적으로 定率課稅하고, 法人 등의 非業務用土地는 法人別로 合算 累進課稅하여 法人の 過大土地保有를 억제코자 하고 있다.

이 경우, 종합토지과세제 내에서例外로 다루겠다고 하는 田畠 등 농지의 소득세적 성격의 농지세가 어떻게 調和를 이루게 될는지 의문이다. 즉, 현재 낮은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농지에의 財產稅와 더불어 농지세도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財產稅의 性格의 綜合土地稅制가 새로이 確立됨에 따라 농지재산세는 그에 흡수되고 농지소득세인 농지세는 綜合所得稅에 吸收 통합되는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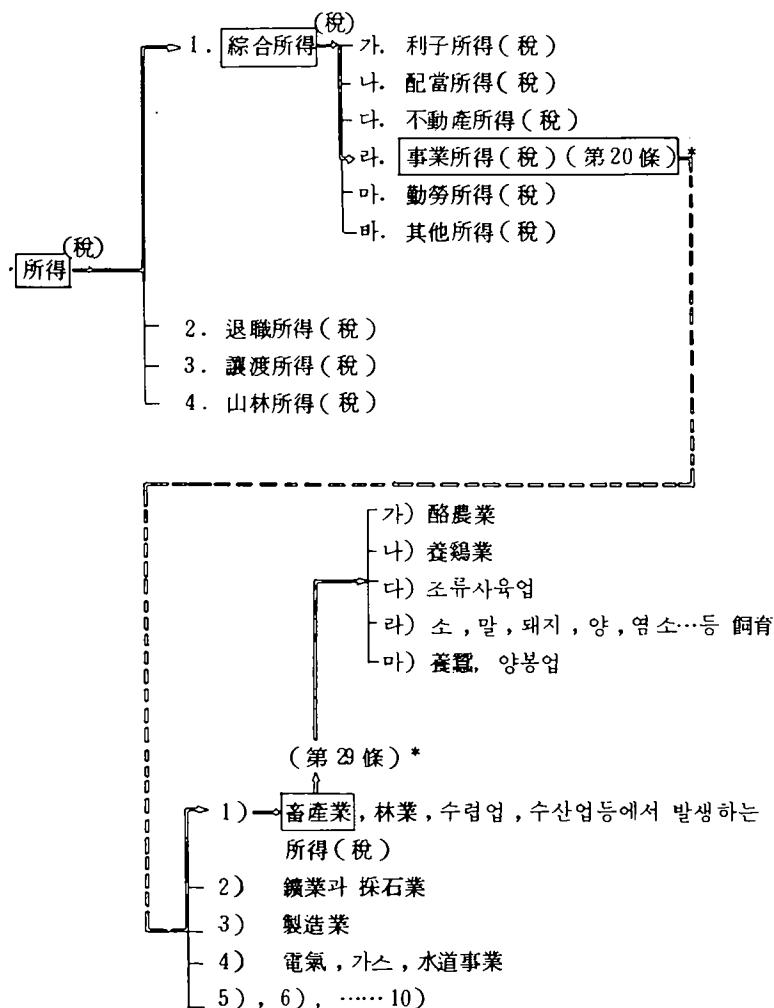
(4) 國稅와의 農地稅調整 硬直性

물론 국세의 課稅權者는 中央政府이고 地方稅인 농지세의 課稅權者는地方政府(지방자치단체)이므로 농지세를 국세중의 어느 稅種과 調整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경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非營農不在地主의 농지임대 소득이 高額의 賃貸人 綜合所得에 合算課稅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제기되는 課稅의 不公平性 등을 補完할 수 있는 정도의 兩稅間 調整의 유연성이 아쉬운 바 있다.

4. 畜産所得税

① 稅制上의 畜産所得稅의 位置

圖 4 - 6 稅制上 畜産所得稅의 位置



* 所得稅法

② 畜産所得稅의 課稅對象 · 稅率 · 減免

畜產所得稅는 첫째, 法定 “非課稅範圍”를 초과하는 畜產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되, 둘째, 그 稅率은 一般事業所得稅의 稅率構造와 課標段階에準한다(課標 180萬원 이하 6% 등 6~55%의 16段階), 세째,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다음 課稅年度개시일부터 5年이내는 소득금액의 20%해당액을 指除한다(租稅減免規制法第37條 ①).

③ 副業畜產所得에 대한 非課稅

가) 畜產所得稅의 非課稅대상과 범위

(1) 非課稅對象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농어민이 副業으로 영위하는 畜產, 養魚, 고공품 및 기타의 생산소득에 대하여 畜產등 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非課稅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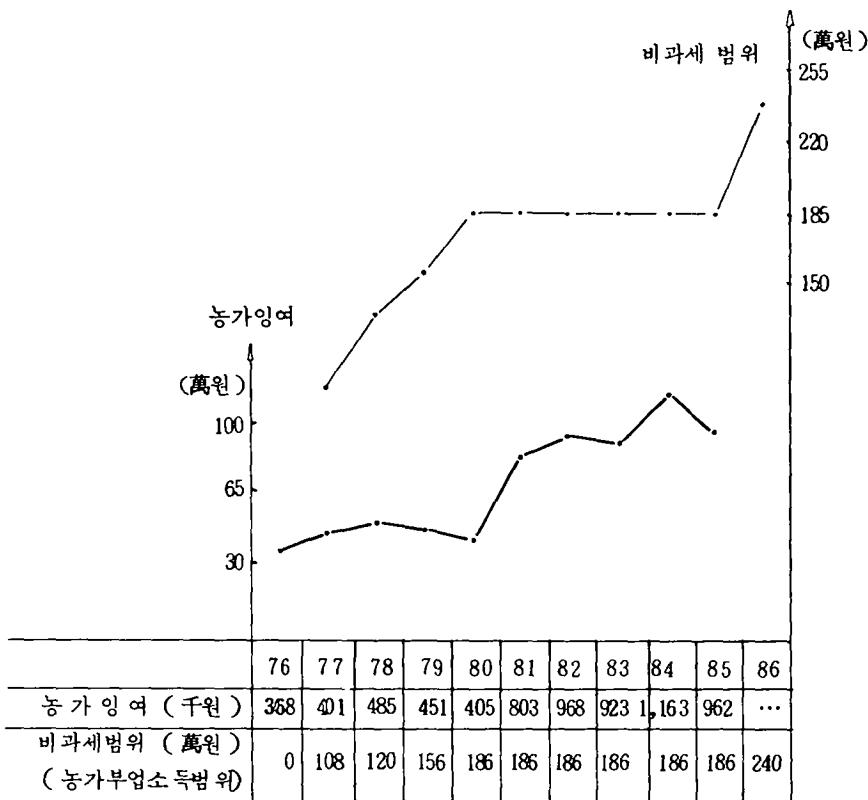
농가부업축산을 제외한 기타분야의 부업소득범위는 240만원이고, 부업소득중 副業畜產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는 <表 4-9> 및 <附表 4-4>와 같다.

表 4 - 9 農家 副業畜產의 範圍

가 축 별	기 존 범 위			현 행 *
	1978년이전	1979	1982 ~ 86.6	
젖 소	7마리	10마리	20마리	20마리
소	10	20	30	30
돼 지	50	100	150	200
산 양	50	100	150	300
면 양	50	100	150	300
토 키	1,000	1,000	3,000	5,000
닭	1,000	1,000	3,000	10,000
오 리	1,000	1,000	3,000	10,000

* 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1986.7.1부터 시행)

圖 4 - 7 農家剩餘와 畜產所得 非課稅範圍의 变動推移



나) 畜產所得稅 非課稅 범위의 变動추이

지난 10年동안 農家副業所得에 대한 비과세범위는 대략 5年間隔으로 농가잉여가 減少勢에 있을때 확대 경향을 보여왔다 <圖 4-7, 附表 4-4>.

그러나 농가부업중 畜產業에 의한 副業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비과세하는 범위를 위의 <表 4-9>에서와 같이 家畜의 生畜數量으로 결정함으로서 金額단위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비과세범위에例外를 두고 있다.

그런데 最近에 畜產物價格이 떨어지고 不安定할 때마다 그 비과세 범위의擴大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6.30일에는 그 문제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1982年부터 적용하여오던 비과세 범위를 다시 擴大 調整하였다.

④ 畜產所得課稅의 問題點

가) 非課稅範圍가 축산농가의 경제여건 반영에 미흡

畜產所得에 대한 非課稅對象이 되고있는 畜種別 비과세범위가 축산물가격이나 축산소득률의 변동등에 充分히 대응해오지는 못하였다 <附表 4-5>.

나) 畜種別 非課稅惠澤의 不公平

畜產所得稅 비과세혜택이 반드시 畜種間에 均等한것이 理想은 아니겠으나, 그동안 예컨대 養鷄農家와 酪農家間의 비과세혜택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어 課稅不公平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圖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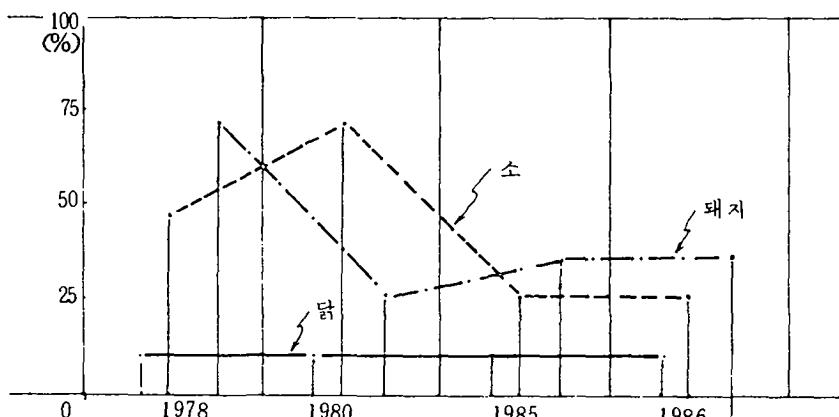
다) 副業畜產의 非課稅範圍 設定基準 未定立

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는 농가부업축산의 범위를 設定하는 基準이 科學的으로 定立되어있지 못하다.

라) 畜產所得稅의 増分主義的 推計課稅

축산소득자가 비과세대상범위를 넘어서서 課稅하게 될 때, 畜產業者의 소득신고액最下限을 前年對比 一定比率로 增額申告도록 유도하는 増分主義的 課稅方式을 채택함으로써 실제 소득수준의 增減과 괴리된 課稅를 하는 事例가 많다.

圖 4 - 8 畜種別 所得 非課稅 範圍 比較 (점수=100)



다. 林業 및 山林所得稅

① 林業所得과 山林所得의 區分

임업소득은 種苗業, 育林業, 벼섯채취업, 초목의 진과 껍질, 줄기, 열매 뿌리 등의 채취업 및 伐木業등에서 얻는 所得을 말하고, 山林所得은 山林의 벌채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소득세법 제 4조), 또는 造林期間이 5年이상인 林地의 林木의 벌채 또는 (林木의) 让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소득세법 제 24조)등의 概念이다.

현행 세법상 林業所得은 전술한 畜產所得과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속하는 事業所得稅의 부과대상이며, 山林所得은 종합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및 山林所得등의 4大 所得중의 하나로서 종합소득에 속하는 事業所得중의 하나인 林業所得과는 별도로, 山林所得稅의 과세 대상이다 <圖 4-7 참조>

② 山林所得稅와 林地讓渡所得稅間의 關係

<表 4-10>에 提示된 바와 같이 山林所得稅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林木의 양도소득(판매소득)에, 林地讓渡所得稅는 양도소득세법(소득세법)에 의하여, 山林中에서 林木을 제외한 부분(林地)의 양도소득에 각각 부과하는 租稅이므로, 兩者는同一한 山林을 주된 課稅客體로 하면서 課標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만일 林木의 양도를 林地의 양도와 同時에 하는 경우에는 林木의 양도소득과 林地의 양도소득에 대한 課稅가 區分되어야 함은 물론이다(山林所得稅와 讓渡所得稅).

그러나 林木과 林地가 동시에 양도될 때 양자의 所得의 區分이 곤란할 때는 먼저 林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林地의 讓渡差額을 算出 한後, 임목과 임지의 총양도차액에서 임지의 양도차액을 差減한 잔액을 林木의 양도차액으로 한다.

表 4-10 林業·山林所得稅와 林地譲渡所得稅의 比較

	林業·山林所得稅		林地의 譲渡所得稅 (양도소득세)
	林業所得稅(事業所得稅)	山林所得稅	
所得控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30 만원 • 배우자공제 42 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 만원 • 장해자공제 1인당 3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30 만원 • 배우자공제 42 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 만원 • 장해자공제 1인당 3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공제 150만원 • 양도소득특별공제 : 취득가액 × 도매물가 상승률 × 취득후 양도 까지의 기간
課 標	• 總收入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總收入 - (필요경비 ²⁾ + 50만원 ³⁾ + 소득공제액)	• 양도차익 - (150만원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稅率構造	• 6 ~ 55 % (16 단계)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	• 6 ~ 55 % (16 단계)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표의 40 % • 보유기간 2년 이내 : 과표의 50 % • 미등기 양도시 : 과표의 75 %

1) 단, 임업소득세와 산림소득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는 한쪽의 소득공제 만 인정(소득세법 제 63조③).

2) 이때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山林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목비, 관리비, 벌채비 기타 山林의 育成 또는 林木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소득세법 제 46조①, 동시행령 60조①의 3).

3) 산림소득특별공제액

③ 山林所得稅의 兩面性과 財政寄與

임업소득세가 事業所得稅의 일부로서 課稅되고 있음에 비하여 山林所得稅는 事業所得稅와 區分 課稅되면서 林木의 譲渡所得稅와 林木의 伐採所得稅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山林中에서 林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산림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表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課徵稅의 発생빈도가 극히 낮을뿐아니라 絶對稅額도 미미하며, 그것마저도 최근 수년동안 급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表 4-12> 山林所得稅의 財政寄與率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다.

表 4-11 山林所得稅 所得階層別 算出稅額 規模

소득계층(과세표준액기준)	세율	과표액	산출세액	과세인원
천 원	%	천 원	천 원	名
500,000 이 상	55	-	-	-
100,000 ~ 500,000	55	-	-	-
60,000 ~ 100,000	55	-	-	-
47,000 ~ 60,000	51	-	-	-
37,000 ~ 47,000	47	-	-	-
29,000 ~ 37,000	43	-	-	-
23,000 ~ 29,000	39	-	-	-
19,000 ~ 23,000	35	-	-	-
15,500 ~ 19,000	31	-	-	-
12,500 ~ 15,500	27	26,346	4,304	2
10,000 ~ 12,500	24	-	-	-
8,000 ~ 10,000	21	-	-	-
6,300 ~ 8,000	18	-	-	-
4,800 ~ 6,300	15	5,465	519	1
3,500 ~ 4,800	12	-	-	-
2,500 ~ 3,500	10	-	-	-
1,800 ~ 2,500	8	-	-	-
1,800 이 하	6	1,824	109	1
합계	-	33,635	4,932	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85.

表 4-12 山林所得稅의 稅收總額과 課稅人員 推移

단위 : 천원, 名

구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과표액	68,218	76,631	57,130	62,479	72,916	33,635
산출세액	9,285	12,958	9,842	11,021	12,535	4,932
과세인원	35	25	26	14	22	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④ 林業所得稅와 山林所得稅의 問題點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林業所得稅나 山林所得稅의 財政稅收寄與는
극히 적으며, 農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農民이 業務적으로 林業所得을
얻는 경우와 山林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限해서만 有關係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林業所得과 山林所得에 대한 稅制에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은 앞으로 經濟 및 社會開發政策중에서 정하는 林業 및 山林所得開發의 比重이 높아질 것이며, 그럴수록 이 分野가 農民의 所得補填策의 일환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비록 稅收額面에서 比重이 낮고 農民과의 關係도 그리 깊지
는 않으나 關聯問題點은 검토하고 改善할 必要가 있다.

첫째, 山林所得課稅의 複雜性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山林中에서 林木을 林地의 양도와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課徵稅과정이 너
무 복잡하다. 林地의 양도소득과 林木의 벌채 및 양도소득은 區分하여 課
稅되고 있으며, 林地의 讓渡差益과 林木의 让渡差益이 不分明할때는 먼저
임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差減殘額을 林木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해
야 한다는 등의 번잡성이 있다.

둘째, 林業所得과 山林所得의 區分의 實益에 의문이 있다.

소득세법 제 20 조에 明示된 바와 같이 林業所得稅는 山林이라는 환경자
원을 經濟活動의 배경으로 하여 種苗業, 育林業, 伐木業, 벼섯채취업……
등의 사업을 통하여 얻은所得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山林所得은 소
득세법 제 4 조 및 제 24 조등에 明示된 바와 같이 山林속에서 林木의 벌채
와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課稅하는, 극히 발생 빈도가 낮고 세
액규모가 작은 세금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稅源과 稅率構造등
이 거의 비슷한 두가지 稅目을 區分하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라. 農民의 預金利子 및 配當所得稅

① 農民의 利子 및 配當所得稅 負擔

농민은 목돈마련 賦蓄預金이나 단위농협 및 畜協등에의 預託金利子, 그

表 4-13 農民의 利子 및 配當所得稅 非課稅範圍

단위 : 100만원

	1976	1978	1986 (현행)	86 / 78(%)
이자소득 : 단위농협예탁금	100	500	500	100
배당소득 : 회원조합출자금	200	200	200	100

자료 : 농협중앙회

리고 單位農協과 畜協에의 출자배당금 등에 대하여 所得稅를 부담한다.

즉, 가) 농어민의 목돈마련저축예금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단위농협, 축협 등에의 500만원초과 預託金, 라) 단위농협, 축협 등에의 200만원초과 出資金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는 곧 租減法에 의하여 농어민의 저축예금은 300만원까지, 預託金은 500만원까지, 그리고 出資金은 200만원까지 利子 및 배당소득세 등을 减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農漁民에 대한 利子 및 配當所得稅의 감면조치는 1976年부터 실시되어 왔으나〈表 4-13〉, 그동안 農民을 둘러싼 관련 經濟與件의 변화〈表 4-14,表 4-15,附表 4-6〉로 말미암아 그러한 減免稅範圍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② 農民의 利子 및 配當所得稅 減免의 問題 : 非課稅 對象規模의 狹少性

현행 農民의 利子 및 配當所得稅 免稅點 500만원 및 200만원등은 1978年에 책정된것으로서, 그동안 農가소득의 증가, GNP 및 農가저축규모의 증대〈表 4-14〉, 農畜協貯蓄規模의 증대〈附表 4-6〉, 農民의 出資額規模擴大〈附表 4-7〉, 비농업부문(都市家口 등)에 있어서 저축성예금면 세점인상(都市家計小額貯蓄稅金優待制改善: 1年이상 銀行의 定期預・積・賦金중 1인당 500만원까지 免稅, 1986.4. 施行), 都農間預金利子率隔差〈附表 4-8〉 및 預金規模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預金口座數의 증대〈表 4-15〉등의 경향과 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

表 4-14 經濟規模와 農村貯蓄規模의 推移

단위 : 억원

	1977	1984	84/77 (%)
· GNP(경상가격)	181,154	653,450	361
· 통화량 : M_2	58,743	247,056	421
M_3	75,200	452,638	602
· 도시지축규모(은행총예금)	54,559	279,251	512
· 농촌저축규모	2,908	21,240	730

자료 : 농협중앙회

表 4-15 農民의 500만원 超過 預金口座數 (1985. 5)

단위 :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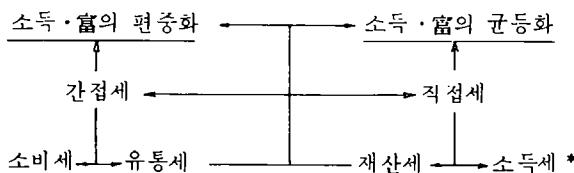
예금별	구좌수	예금액
보통예탁금	6,000	62,765
자립예탁금	4,000	24,140
정기예탁금	12,000	67,581
정기적금	5,000	29,800
계	27,000	184,286

자료 : 농협중앙회

마. 農業關聯 所得課稅의 所得 및 資源分配的 側面

일반적으로 所得 · 財產課稅의 所得再分配機能과 資源分配的 役割은 <圖 4-9>와 같이 略式圖示된다.

圖 4-9 直 · 間接 所得 · 財產課稅의 機能 區分



* 일반적으로 소득 · 자원의 균분화 기여도가 가장 높다.

즉, 所得과 富의 均分化 機能은 間接稅보다는 直接稅, 그리고 直接稅중에서도 재산세보다는 소득세가 보다 強하게 作用한다.

① 농업내부 소득계층간의 垂直的 均分化 (所得階層間 衡平化)

앞의 가項①(p.27)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稅法上 농지세는 농지에 농작물을 耕作하여 얻는 所得과 농지를 他人에게 경작케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課標로 하고 있다. 이때 前者は 순수한 所得課稅이나 後者は 財產收益稅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다.

그런데 農地稅의 稅率은 일반 所得稅와 동일한 構造를 가진 遞次累進的 稅率이다. 따라서 농지세중에서 순수소득부분에 대한 累進率의 적용은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所得再分配와 資源配分의 効果를 가진다 (圖 4-11 의 曲線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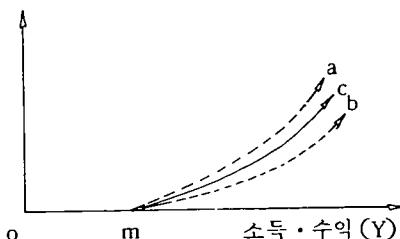
그러나 농지세 중에서 재산세 성격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농지세의 소득·자원배분효과는 일반 재산세보다는 크고 일반 소득세보다는 작다 (圖 4-11의 曲線 c).

② 농업 내외부간의 水平的 均分化 (營農形態別, 都農間 衡平化)

가) 현행 세법상 農地稅와 일반소득세는 원칙적으로 課標, 基礎控除, 稅率構造등이 같으므로 農민이 부담하는 所得課稅 (농지세 포함)의 營農形態別 (畜產業, 耕種農業, 林業 등) 소득·자원 配分效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變數는 所得標準率과 租稅減免條項들이다.

圖 4-10 所得稅類의 担稅率

담세율 (Tr)



(단, om은 공제액 규모, a, b, c는 각각 재산세, 순수소득세, 소득세와 재산세의 성격을 띠 농지세 등의 형평화 기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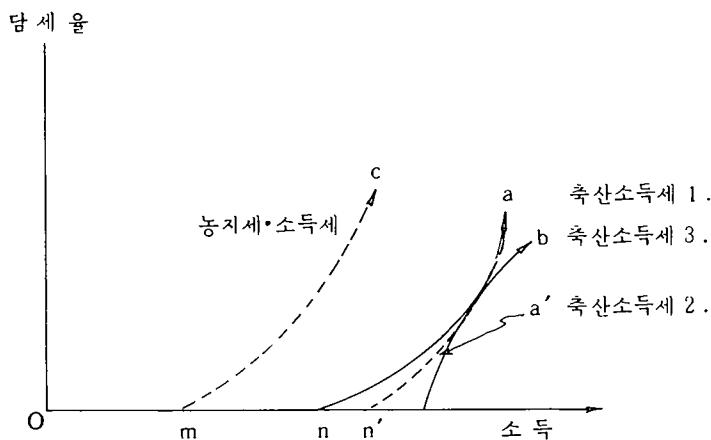
따라서 소득표준율이 客觀的으로 策定된다면 所得 등의 再分配效果는 非課稅 및 減免制의 여하에 의하여 주로 좌우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租稅의 非課稅 및 減免조치는 課稅公平의 原則에 反한다는 점에서 역시 限界가 있으며 수시로 제도적인 補完을 要 한다.

편의상 非農家, 耕種農家, 畜產農家 등의 소득과세를 가지고 比較해 보면,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租減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범위의 擴大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萬一 소득과 富가 「畜產農家 < 非畜產耕種農家 < 非農業都市勤勞者 」등의 順으로 편재되어 있다면, 현행의 畜產所得稅制는 축산농가와 비축산(耕種)농가간 축산농가와 비농가간(都農間) 등 水平的關係에 있어서는 所得 등의 均分化에 寄與의이다(圖 4-11의 a 및 a' 曲線).

나) 그러나 만일 畜產業에 대한 非課稅범위가 制度的으로 지나치게 擴大될 경우 畜產農家間의 所得階層別로는(垂直的關係에서는) 所得均分化에 逆機能의이다(圖 4-11의 曲線 b)

圖 4 - 11 畜產所得稅 担稅率



(단, om, on은 비과세범위, nn'는 축산소득비과세범위 확대분)

3. 農業關聯 財產課稅⁷⁾

가. 農民의 財產稅負擔

① 財產稅의 성격

(개) 재산세는 富 (wealth)에 대한 租稅이 되 富裕稅 (net wealth tax) 와는 다르다. 즉, 재산세는 實質的 有形財產을 課稅客體로 하고, 粗財產額을 課標로 하는 物稅로서 원칙상 재산에 대한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財產의 所在地에서 富의 源泉에 대하여 課稅할뿐 관련된 人的事項을 고려하지 않는다.

(내) 財產稅의 概念이 多樣하다. 즉, 교환가치를 갖는 유형 무형의 모든 財產課稅로 보는 입장 (美), 주로 不動產에 부과하는 租稅로 보는 입장 (英), 토지를 不動產財產稅의 主對象으로 보는 입장 (호주, 西獨, 캐나다 등) 등이 있는가 하면, 한국은 토지, 가옥, 선박, 항공기, 광구 등을 課稅對象으로 한다.

(대) 일반적 으로 比例課稅方式을 취한다 (非收益財產이 있기 때문에 一律의인 累進率적용이 不可하다).

(래) 재산세의 課標는 재산의 總額이고 純額이 아니다 (財產價值=交換價值+貸賃價格).

(乖) 財產稅는 地方財源으로 이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乖) 應益原則에 의한 課稅의合理化가 可能하다. 즉, 재산에 대한 利益을 증가시키는 소방, 청소,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치안유지 및 對民

7) 여기서의 財產稅는 課稅對象(재산)과 稅源(收益 또는 所得)이 相異하고, 低稅率課稅가一般的이며, 계속적으로 課稅하는 경상적인 財產稅이외에 농업 관련 財產課稅로서 農地의 相續稅와 贈與稅를 포함하는 概念으로 본다.

서 어비스 등을 받는 住宅, 借地, 企業施設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合理의이다.

② 現行 農業關聯 財產稅의 概要

가) 課稅客體

농업관련財產稅의 課稅客體는 土地중에서 農地(전, 담, 과수원, 임야, 목장용토지 등)와 建物 중에서 農家住宅 등이다.

나) 납세의 무자

① 납기개시일 현재 土地課稅臺帳 및 家屋臺帳등에 등재된 所有者 (만일 소유권의 귀속이 不明할때는 그 使用者). ② 국가, 道, 市, 郡, 지 방자 치단체조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買收契約者 등.

다) 非課稅 對象

土地중에서는 농업용구거(개골창), 농업용저수지, 농지제방 등, 建物 중에서는 퇴비사, 畜舍, 肥料舍 등

라) 稅率

農家の 住居用土地는 價額의 0.3% 均一, 農地는 價額의 0.1% 均一, 그리고 農家住宅은 0.3 ~ 5.0% (住宅은 農家 · 非農家共通, 價額이 500 萬원 이하는 0.3%, 500萬 ~ 1,000萬원은 0.5%, 1,000萬 ~ 2,000萬원 은 1.0%, 2,000萬 ~ 3,000萬원은 3.0%, 3,000萬원 초과는 5.0% 등) <表 4-16>.

③ 農民의 財產稅負擔과 財政寄與

가) 농가 호당 財產稅負擔

1984年 농가戶當 재산세부담액은 12,680 원수준으로서 總擔稅額의 18.3 %이며, 이는 1980年 對比 34%가 증가한 것이다.

농민의 재산세부담액은 지난 數年동안 絶對額으로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농가당세 총액 중에서 재산세가 점하는 비율은 1980年的 21%에서 점차 근소한 減少勢에 있다 <表 4-17>.

表 4-16 財產稅의 稅率構造

토지	(1) 주거용토지	
	④ 농가 - 규모에 관계없이 0.3 %	균일
	④ 기타 주거용토지 - 330㎡ 이하 : 0.3 %	
	330 ~ 660㎡ : 0.5 %	
	660 ~ 990㎡ : 1.0 %	
	990 ~ 1,650㎡ : 3.0 %	
	1,650㎡ 이상 : 5.0 %	
	②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 그 가액의 5.0 %	
	③ 공한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토지의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제	
	④ 3년이하 : 5.0 %	
건물	④ 3년초과~5년이하 : 7.0 %	
	④ 5~7년 : 8 %	
	④ 7~10년 : 9 %	
	④ 10년초과 : 10 %	
	④ 농지 (전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 그 가액의 0.1 %	
	(1979년 12.28)	
	주택	가액이 500萬원 이하 : 0.3 %
	농가·비농가 (공통)	500萬초과~1,000萬이하 : 0.5 %
	(단, 농사, 비료사, 축사면세)	1,000萬 ~ 2,000萬 " : 1.0 %
		2,000萬 ~ 3,000萬 " : 3.0 %
		3,000萬 ~ 초과 : 5.0 %

나) 農民財產稅의 財政寄與率

(1) 地方稅收 中 財產稅의 比率

1985年 地方稅收入總額은 16,546億원으로서 그중 재산세는 14.3 %인 2,373억원이었으며, 그構成比는 1980年的 15.6 %수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表 4-18)。

(2) 農地分 財產稅의 比重

1985年 全國의 농지분재산세액은 148億원 규모로서 財產稅總額의 6.2 %, 土地分財產稅의 11.0 %를 占하였다. 農地中 논에 대한 財產稅額은 같

表 4 - 17 農民担稅額 중 財產稅의 比重

단위 : 원, %(농가호당)

	1980	1981	1982	1983	1984	84 / 80
담 세 총 액 (A)	45,053	55,094	59,984	64,666	69,394	1.54
재 산 세 (B)	9,493	10,234	11,159	11,807	12,680	1.34
B / A (%)	21.1	18.6	18.6	18.3	18.3	-

자료 : 농수산부 농정국

表 4 - 18 地方稅 中 財產稅의 比率

단위 :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	85 / 80
지방세 총액(A)	7,677	9,144	11,192	13,972	15,084	16,546	2.16
재산세 총액(B)	1,199	1,527	1,728	1,948	2,104	2,373	1.98
B / A (%)	15.6	16.7	15.4	13.9	13.9	14.3	-

* 징수액 기준.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 연감」, 각년도.

表 4 - 19 農地에 대한 財產稅 課徵 現況과 推移

		단위 : 억원, %									
		197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84/81 (84-81)	84/76 (84-76)	
지	방	세 (A)	2,206	7,677	9,144	11,192	13,972	15,084	16,546	165.0	6.8
재	산	세 (B)	378	1,194	1,527	1,728	1,948	2,104	2,373	137.8	5.6
토	지	분 (C)	241	753	981	1,040	1,163	1,205	1,349	122.8	5.0
농	지	(전답) (D)	57*	103	125	129	135	134	148	107.2	2.4
답		(E)	42*	70	84	87	91	92	101	109.5	2.2
비 율	D / A	2.6%	1.3%	1.4%	1.2%	1.0%	0.9%	0.9	△0.5	△1.7	
	D / B	15.1%	8.6%	8.2%	7.5%	6.9%	6.4%	6.2	△1.8	△8.7	
	D / C	23.7%	13.7%	12.7%	12.4%	11.6%	11.1%	11.0	△1.6	△2.6	
	E / A	1.9%	0.9%	0.9%	0.8%	0.7%	0.6%	0.6	△0.3	△1.3	
	E / B	11.1%	5.9%	5.5%	5.0%	4.7%	4.4%	4.3	△1.1	△6.7	
	E / C	17.4%	9.3%	8.6%	8.4%	7.8%	7.6%	7.5	△1.0	△9.8	
	E / D	73.7%	68.0%	67.2%	67.4%	67.4%	68.7%	68.2	1.5	△5.0	

* 77년부터 농지분의 전답분류관계로 77년 통계치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 정연감」 1977, 1981, 1982, 1983, 1984, 1985.

은해에 101억원으로서 농지분재산세액의 68.2%수준이다 <表 4-19>.

농지분재산세가 地方稅 총액 중에서 占하는 比率은 1985 年에 0.9%였는데 이는 1976 年의 2.6%에 비하여 현저한 減少인 바, 농지분재산세액이 같은 期間에 2.6 倍로 증가하였는데도 지방세중 절유율이 낮아진 것은 농지분이외의 재산세 및 재산세 이외의 地方稅比重이 增加하였음을 시사한다.

④ 農地에 대한 財產稅의 決定 및 增加要因

가) 農地財產稅의 決定要因

농지재산세는 원칙상 농지의 토지등급(Lg), 토지가격(P), 面積(A), 및 稅率(R)에 의하여 決定된다. 즉, 농지의 財產稅(T)는 $T = f(Lg, P, A, R)$ 의 關係式에서 면적과 세율이 주어지고, 토지등급별 단위면적당 가격이 일정한 한, 개별농가 또는 農地의 필지별 財產稅額은 土地等級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나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農地를 둘러싼 諸與件의 변

동으로 농지의 가격 자체가 반드시 不變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現行의 稅制가 계속된다면 농지에 대한 財產稅는 주로 地價와 土地等級에 의하여決定된다.

나) 農地財產稅 增加要因

① 위의 財產稅決定關係式에 의하면, 전술한 農家の 財產稅負擔이 증가한 要因은 地價(P)와 土地等級(Lg)의 上向調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 農地에 대한 財產稅가 증가한 主要因은 농지의 財產稅課稅基準이 되는 토지등급을 급격히 上向調整한데에 있음이 現地事例調查에서 밝혀졌다.

즉 지난 10年 동안 농지에 대한 土地等級은 대략 40等級에서 107等級으로 上向調整되었으며, 그로 인한 농지의 1m²當 基準價格은 40원에서 835원 수준까지 약 20.9倍로引上되었다〈表 4-20,附表 4-9〉. 이는 같은期間에 실제 地價(논의 경우) 上昇倍數인 3.5倍 수준을 현저히 上廻하였다.

表 4-20 地價上昇을 追越한 土地等級基準 價格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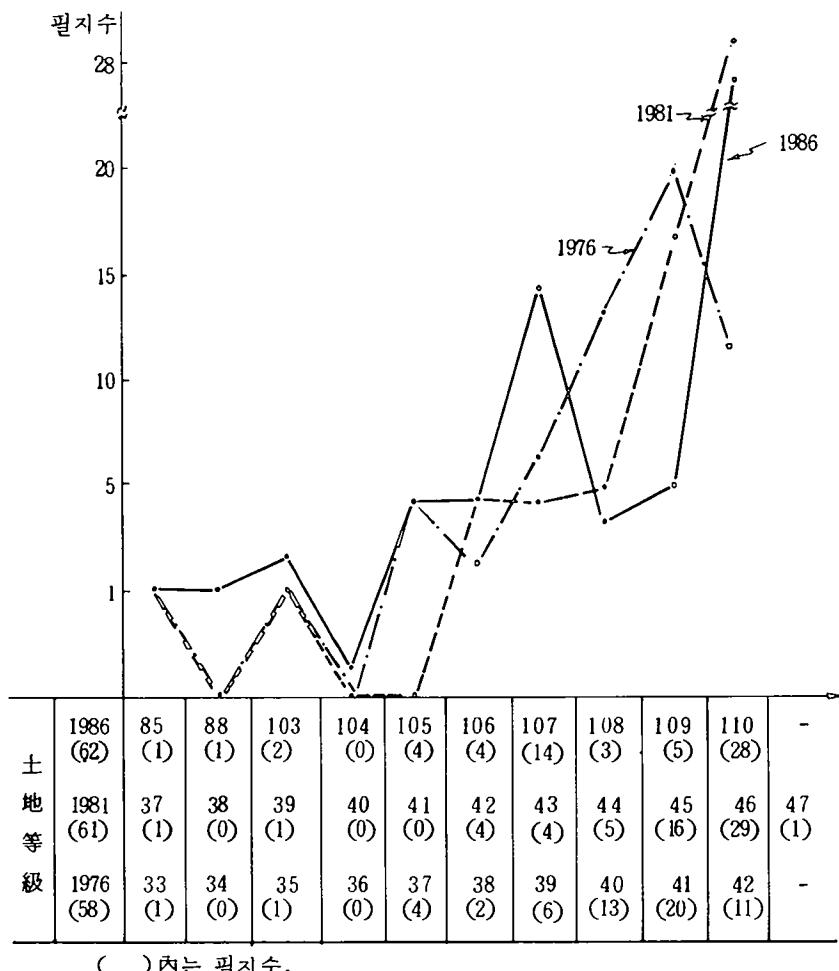
단위: 원, %, 倍

구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농지의 토지등급 ¹⁾	40	40	40	41	43	45	45
1m ² 당 가격(A)	40	40	40	42	46	50	50
농지의 현실평당가격 ²⁾	2,109	2,926	3,212	3,478	3,757	4,597	5,054
1m ² 당 가격(B)	639	887	973	1,054	1,138	1,393	1,532
A / B	6.3	4.5	4.1	4.0	4.0	3.6	3.3
구 분	1983	1984	1985	1986	'85/'76	'84/'83	
농지의 토지등급 ¹⁾	45	102	107	108	2.7	2.3	
1m ² 당 가격(A)	50	657	835	876	20.9	13.1	
농지의 현실평당가격 ²⁾	6,143	6,778	7,318	-	3.5	1.1	
1m ² 당 가격(B)	1,862	2,054	2,218	-	3.5	1.1	
A / B	2.7	32.0	37.6	-	-	-	

1) 사례조사 평균등급(김제군).

2)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년도 등에서 算出.

圖 4-12 土地等級 分布의 高等級 集中化 傾向



資料：現地事例調査（全北金堤郡 62農家對象）

는 것이며, 1984 年 이후 農民의 財產稅負擔 증가의 決定的인 要因이 되었다.

③ 農地에 대한 土地等級이 上向調整되어 農地의 財產稅가 증가함은勿論이다. 그런데 그러한 農地의 토지등급상향조정이 점차 最高等級의 度數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옴으로써 재산세의 증가를 加重시켰다 (圖 4-12)

⑤ 농민 財產稅 負擔의 問題點

가) 社會正義的 觀點에서

(1) 財產課稅의 逆進性

현행 財產稅制에 따르면 농민의 財產稅負擔은 <表 4-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都市民에 비하여 輕負擔의 要因이 있다. 따라서 財產稅의 賦課는 都農間에는 課稅衡平化에 기여적일 수 있다. 그러나 現行 재산세의 稅率이 比例稅率이므로 그로 인한 逆進性이 농업내부의 大小農間에는 課稅衡平에 非寄與的일 것이다. 즉 농지를 2,000평 소유한 농민과 50,000평 소유한 농민이, 그리고 非營農不在地와 自營農家가 다같이 0.1%의 稅率을 적용받는 사실과 같은 課稅의 逆進性이 말해 주듯이 社會正義의 觀點에서는 未洽한 부분이 없지 않다.

(2) 농지재산세 増課試圖의 모순성

1984년에 농민소득과세인 농지세를 輕減도록 관련稅制를 개정한 것은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여 都農間의 均衡의發展에 기여코자 하는 政策의一環이었다. 그런데 이번研究에서의 現地調查結果에 의하면 농지에 대한 財產稅課稅의 基礎가 되는 土地等級이 1984年(農地稅制改正年度)부터 大幅으로 上向調整되기 시작했다 <表 4-20> (등급으로는 2.3倍, 價格으로는

表 4-21 都農間 財產課稅 輕重條件 比較

구 分	경 층 비 교	비 고
(가) 주거용 건물 *	농가주택 < 도시주택	가액 산출기준은 차등화, 동일 가액에는 동일세율
(나) 부 속 건 물	농사(農舍) < 부속건물	농사, 퇴비사 비과세
(다) 주거용 토지	농가대지 < 도시대지	
(라) 비주거용토지	농지, 구거 등 < 공한지, 유지 (溜池) 등 비업무용토지	구거, 유지는 비과세

* 농가 주택건물재산세는 건물의 동일 가액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과 동일세율적 용. 단, 건물가액 산출과정에서 적용하는 변수의 다양성 (지역지수, 용도지수, 지붕지수, 건축년한 등)에 격차를 둘으로써 농가주택 가액이 저평가됨.

<附表 4-10>.

13.1 倍로). 이는 농민들로부터 농지의 財產稅增課를 위한 前哨過程이라는 오해를 야기시키고, 동시에 部分的으로⁸⁾는 農村의 均衡發展政策에도 상치된다.

나) 農地財產稅에 관하여 : 農地의 土地等級 引上의 不適性

전술한 바와 같이 農地에의 土地等級을大幅 上向調整한 것은 첫째, 농지의 實地가격변동을反映치 못하는 引上이었다는 점(앞의 表 4-20)과, 둘째, 농지의 토지등급이客觀的根據없이⁹⁾ 대체로高等級集中化傾向으로上向調整되어 농지의 實際財產價值를歪曲하고 농지 재산세課標引上의 主要因이 되었다(圖 4-12 참조).

나. 農地의 相續·贈與税

① 小序

가) 農地의 相續·贈與에 대한 觀點

농지의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몇 가지 視角이 있을 수 있다.

첫째, 相續과 贈與의 대상이 되는 農地가 농업생산의基本要素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主要 농업생산요소의 한 移動形態로 볼 수 있다.

둘째, 농지의 相續과 贈與는 농지에 관한所有權의 이전내지歸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農地”라는 주요 농업관련財產의 한流動形態로 볼 수 있다.

세째, 농지의 相續과 贈與는 農民뿐만 아니라 기타大部分의 國民에게도 농지(토지)에 대한所有慾求度(전통적 집념)가 높으며, 相續·贈與 자체가被相續人의 死亡이나 贈與人的 自發的意思등에 의하여, 따라서

8) 國家經濟가成長할수록所得課稅가 줄고, 財產課稅에 의한 稅收額이 증가하는 것이本章 1節 다項에서와 같이 經濟社會의順理이라는 점에서, 농민의 稅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농지세를 대폭輕減하는 한편, 그農地에 대하여 財產稅를增課근자함은首肯되는面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轉換의時點이 문제이다.

9) 예컨대, 그地域에 農地改良事業이 실시되어單位面積當收穫量이 증가하였던가, 地域開發의 영향으로現地의 農地價格이 현저히上昇하는 등所有農地의 財產價值가向上될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相續人이나 受贈者에게는 그것이 他律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농지를 둘러싼 주요 社會的關係〔農地↔人間(家族·親知)〕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지의 相續과 贈與는 농업생산성, 농지재산의 所有, 및 농지流動의 社會的關係등과 밀접한 聯關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經濟 社會的意味를 찾을수 있다.

나) 농지의 相續·贈與稅의 性格과 機能

농지의 相續·贈與稅도 여타 財產의 相續·贈與稅와 마찬가지로, 相續·贈與等에 의한 농지의 取得을 不勞所得의인 取得으로 보고 부과해온 不勞所得課稅의 性格을 띤다. 그러나 私有財產制가 中心인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相續·贈與稅는 富의 偏在와 所得分配의 不均衡을 修正하는 經濟政策의 보조수단으로서의 性格과 機能도 하게 된다.

따라서 農地의 相續·贈與稅는, 첫째, 所得稅類의 소득재분배기능을 补完強化하고¹⁰⁾ 둘째, 富의 集中化를 累進所得稅水準을 능가해서 크게 調整하며,¹¹⁾ 세째, 소득세보다도 더 普遍的인 대상에 대하여 課稅가 가능하기 때문에¹²⁾ 租稅의 종합적인 衡平化機能이 현저하다는점 등에서 特殊한 경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다) 農地 相續·贈與稅 考察의 意味

농지에 대한 相續稅와 贈與稅의 소득재분배 및 資源配分의 機能은 여타의 소득·재산세류의 경우와 같이 稅率構造上의 累進性, 課標算出上의 非課稅 및 控除制度의 多樣化 등에 의하여 實現된다.

그런데, 農地의 相續과 贈與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農地自體가

10) 우연적 소득에 대한 所得再分配機能

11) 不動產등 재산의 取得은 財產自體의 取得이외에 재산으로부터 派生하는 收益을 동시에 획득하는것이므로 재산의 相續과 贈與등은 富益富의 深化要因이 된다는 점에서 이部分에의 累進의 重課는 富의 偏在에 대한 緩和效果가 크다.

12) 예컨대, 株式등 有價證券의 讓渡에 서 발생하는 所得은 資本市場育成이라는 政策의 保護措置로 인하여 所得稅가 非課稅될 수도 있으나, 株式등의 相續이나 贈與에도 相續·贈與稅는 賦課되고 있다.

농업생산의 基本要素이 라는 점과, 傳統的으로 農地(土地)에 대한 農民(國民)의 강한 所有慾求等의 特殊性 때문에, 현실적으로 多子女配分相續方式의 適否論, 貸貸借農 특히, 非管農不在地主의 出現 및 增加傾向, 貸貸借料率是非와 農業生產性問題등 다양한 關聯問題들을 提起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農地의 相續·贈與稅에 관한 考察은 制限的이나마 그러한 一連의 問題들을 緩和 내지 解消하는 方向을 모색하는 部分的試圖라는점에 意味가 있다.

② 農地相續制度의 問題

가) 農地相續制度의 骨格

(1) 過去의 農地相續

1960年의 “新民法”¹³⁾상의 農지상속제도는, 전통적인 祭祀相續을 제외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만을 채택하고, 재산상속의 범위와 順位등은 共同均等相續制를 채택하였다.

이경우 農地相續은 財產相續의 一部로서 同一家籍內 有無 및 婚姻內外의 者에 차별없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8寸이내의 近親등의 순위와 범위내에서 相續을 인정하였다.

(2) 現行 農地相續¹⁴⁾

현행 民法上 재산상속은 원칙上 共同均分相續으로 하되, 戶主相續人과 被相續人の 妻는 50% 加算,同一戶籍내에 없는女子는 25%만相續도록 하고 있다〈表 4-22〉.

나) 農地相續制度의 主要問題點

농지의 相續制度에 관하여는 보는 觀點에 따라 問題의 輕重이 다양하

13) 日帝治下의 봉건적 財產相續慣習法인 朝鮮民事令과 舊民法을 改革하여 새로이 制定된 民法

14) 1977年에 民法中 가족법의 일부를 改正, 補完, 相續分의 男女平等化와 被相續人妻의 相續分擴大(民法 第1009條), 특별수혜자의 相續分調整(民法 第1008條)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한 公平을 기하고, 遺留分制度의 新設(民法 第1112條~1118條) 등이 特徵이다.

表 4-22 農地 등 財產相繼支分 變動推移*

	1972~75			1976~86(現行)			支分率變化傾向	備考
	法定 相繼分	支分率	相繼額(算出例) (例:相繼財產: 1,000만원)	法定 相繼分	支分率	相 繼 額		
妻	0.5	$\frac{2}{15}$	$1,000\text{만원} \times \frac{2}{15} = 133\text{만원}$	1.5	$\frac{6}{21}$	$1,000 \times \frac{6}{21} = 286\text{ 만원}$	$\frac{2}{15} < \frac{6}{21}$	女權伸長 (男女平等)
長 男 (戶主相繼)	1.5	$\frac{6}{15}$	$1,000\text{만원} \times \frac{5}{15} = 400\text{만원}$	1.5	$\frac{6}{21}$	$1,000 \times \frac{6}{21} = 286\text{ 만원}$	$\frac{6}{15} > \frac{6}{21}$	-
次 男	1.0	$\frac{4}{15}$	$1,000\text{만원} \times \frac{1}{15} = 267\text{만원}$	1.0	$\frac{4}{21}$	$1,000 \times \frac{4}{21} = 190\text{ 만원}$	$\frac{4}{15} > \frac{4}{21}$	-
長 女 (出嫁)	0.25	$\frac{1}{15}$	$1,000\text{만원} \times \frac{1}{15} = 67\text{만원}$	0.25	$\frac{1}{21}$	$1,000 \times \frac{1}{21} = 48\text{ 만원}$	$\frac{1}{15} > \frac{1}{21}$	同居子女 保護精神
次 女	0.5	$\frac{2}{15}$	$1,000\text{만원} \times \frac{2}{15} = 133\text{만원}$	1.0	$\frac{4}{21}$	$1,000 \times \frac{4}{21} = 190\text{ 만원}$	$\frac{2}{15} < \frac{4}{21}$	
計	3.75	$\frac{15}{15}$	1,000만원	5.25	$\frac{21}{21}$	1,000 만원	-	-

* : 민법 제 1009조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함.

겠으나, 農地를 農業生產의 基本要素로 보는 立場에서는, 한국의 農地相續制度가 농지의 무한한 分割을 誘發, 助長 및 認定함으로 인하여 制限된 農地資源의 所有 및 經營單位를 細分化하여 農業생산의 非經濟的, 非效率的 결과를 초래한다는 點으로 集約된다.

즉, ① 상속법상 財產 共同均分相續의 原則이 한국의 일반적 多子女農家에 적용됨으로써 制限된 小規模 單位農地에 대하여 무한한 세분화를 계속해 왔으며,

② 종래의 大家族制度로부터 부부중심의 核家族制度로 유도한 정책이나 制度 등도 농지의 세분화의 요인이 되어 왔다.¹⁵⁾

③ 民法上 遺留分制度¹⁶⁾를 채택함으로써 유언에 의한 相續人指定 등 농지의 分散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것도 農地細分化의 消極的인 要因이 되고 있다.

단, 현행 民法上 재산상속권포기를 인정하는 條項을 두어 數人の相續인이 어느 1人등에게 被相續인이 농지를 集中的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相繼權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음으로써 농지細分化를 규제하는데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農地細分化에의 規制的 및 助長的 法律關係

- 細分化를 규제하는 法律條項

- 財產相繼權 포기를 認定(民法第 1019 條)

- 分配받은 農地를 農家代表名義로 登記, 相繼토록 규정(農地改革法 第 15 條).

- 農業經營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農地細分化 防止 규정(農業基本法 第 19 條).

- 土地의 効率的利用을 위하여 一定面積 以下의 土地分譲 禁止를 규정(國토이용관리법 제 21 조 16 호)

- 細分化를 유도, 조장, 인정하는 法律條項

- 共同均分相續의 原則(民法 第 1009 條 ①)

15) 任意分家, 法定分家 및 強制分家制 인정 등.

16) 民法 第 1112 條 ~ 1118 條

- 遺留分制度 인정 (民法第 1112 ~ 1118 條)
- 임의분가 (民法 第 788 條), 법정분가 (民法 第 789 條 1) 및 강제분가 (民法 第 789 條 2) 등의 인정
- 국토이용관리法시행령 제 7 조 ①, 2, 가. 등.

③ 農地相續 · 贈與稅制와 農地問題에의 接近

가) 농지의 相續 · 贈與稅制의 概要

表 4 - 23 農地에 대한 相續 · 贈與稅制 概要

	상 속 세	증 여 세	비 고
과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액 + 상속개시 1년이내의 타인에 대한 증여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법 제 4, 12조 제 29조의 4 등
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세 기초공제 : 1,000만원 (2) 상속세 인적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2,000만원 • 자녀공제 1인당 500만원 • 미성년자 40만원 × 20세까지의 나이수 • 노인공제 (남 60, 여 55) 300만원 • 불구자공제 800만원 (3) 농지 (초지, 산림지 포함)의 상속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2년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와 상속재산중에 6,000평이내의 농지 (3만평이내의 초지, 6만평이내의 산림지) 가 있을 때는 그부분에 상속세 면제 • 단,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 = 7천만원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노인공제 + 불구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수증여시 : 150만원 (2)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외의 사람으로부터 수증여시 :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법 제 11조 • 상속세법 제 11조의 1 • 제 11조의 2 • 제 11조의 3 • 제 11조의 4 • 제 31조
세율	과표 100만원이하 7%, 5억 원초과 60%등 15단계)	과표 50만원이하 7%, 2억원초과 67%등 14단계	附表 4 - 11 참조

나) 농지문제에의 相續·贈與稅的 接近

(1) 相續·贈與稅에 의한 接近可能性

전술한 바와 같이 相續·贈與稅에 의한 處方的 接近이 가능한 農地問題는 첫째로, 이들 稅制에 의하여 농지의 細分化를 規制하는것과 農地의 流動性을 촉진 내지 圓滑化하는것으로 集約된다. 즉, 前者の 경우는 농지相續에의 相續稅부과의 輕重調整에 의하여 農地의 세분화를 억제하는데에 租稅的인 接近이 必要, 可能하며, 後者の 경우는 農地贈與에의 贈與稅賦課의 輕減調整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 즉, 농지의 非相續 無償流動을 유도 조장하는 데에 租稅的인 接近이 可能하다.

둘째로, 經濟社會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不在地主의 農地所有와 그로 인한 賃貸借農地를 어떻게 減少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解消할것인가의 문제도 租稅的 接近이 가능한 重要課題이다.

(2) 相續·贈與稅에 의한 쳐 방적 接近方向

농지의 상속에 의한 細分化의 防止 및 농지의 非相續 無償贈與에 의한 農地流動의 促進등을 위하여 농지 상속에의 相續稅調整과 농지증여에의 贈與稅調整이 요구된다.

즉, 前자는 多子女相續을 가급적 억제하고 1子女相續을 권장 유도하는 方向으로; 後자는 農地流動의 促進을 위하여 一定條件下에서의 農地贈與稅를 輕減하는 方向으로 處方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附表 4-1 郡의 地方税收入 趨勢와 稅目別 構成比, 1976 85

(단위 : 1,000 원, %)

	1976		1977		1978		1979		198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보통세 ¹⁾ (A=a+b+c+d)	45,827,141	96.5	57,012,235	96.8	66,447,776	97.0	88,628,322	92.3	109,576,881	90.4
농지세 (a)	30,605,744	64.5	34,849,212	59.2	42,634,173	62.2	51,609,515	53.8	60,329,945	49.8
재산세 (b)	6,224,889	13.1	11,835,595	20.1	12,244,720	17.9	17,993,406	18.7	25,893,990	21.4
소계 (B=a+b)	(36,830,633)	(77.6)	(46,684,807)	(79.3)	(54,878,893)	(80.1)	(69,602,921)	(72.5)	(86,223,935)	(71.2)
주민세 (c)	3,096,425	6.5	7,478,533	12.7	8,674,194	12.7	13,032,052	13.6	15,416,253	12.7
기타 ²⁾ (d)	5,900,083	12.4	2,848,896	4.8	2,894,689	4.2	5,993,349	6.2	7,936,693	6.6
목적세 ³⁾ (C)	1,654,649	3.5	1,873,090	3.2	2,076,172	3.0	7,358,428	7.7	11,575,965	9.6
군세합계 (D)	47,481,790	100.0	58,885,325	100.0	68,523,948	100.0	95,986,750	100.0	121,152,846	100.0
	1981		1982		1983		1984		198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보통세 ¹⁾ (A=a+b+c+d)	129,813,139	90.4	140,169,222	89.2	152,378,766	88.9	164,128,836	87.7	175,062,543	86.7
농지세 (a)	73,622,057	51.2	79,793,344	50.8	85,173,113	49.7	87,606,709	46.8	12,996,885	6.4
재산세 (b)	29,597,891	20.6	32,180,665	20.5	34,828,436	20.3	38,065,679	20.3	42,714,740	21.2
소계 (B=a+b)	(103,219,948)	(71.8)	(11,974,009)	(71.2)	(120,001,549)	(70.0)	(25,672,388)	(67.1)	(55,711,625)	(27.6)
주민세 (c)	17,617,689	12.3	17,989,230	11.4	19,911,406	11.6	23,599,268	12.6	23,623,281	11.7
기타 ²⁾ (d)	8,975,502	6.2	10,205,983	6.5	12,465,811	7.3	14,857,180	7.9	95,727,637	47.4
목적세 ³⁾ (C)	13,864,740	9.6	17,008,708	10.8	19,030,320	11.1	23,073,419	12.3	26,779,312	13.3
군세합계 (D)	143,677,879	100.0	157,177,930	100.0	171,409,066	100.0	187,202,255	100.0	201,841,865	100.0

1) 1978년까지의 군에는 취득세, 면허세 포함.

2) 도축세, 자동차세, 마린세, 담배판매세 등

3)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附表 4-2 農地稅 納付額의 法定水準 對比 輕重 與否

구분 면적(평)	법정표준 담세액 ¹⁾ (A) (원)	실제납부액(B) (원)	비교		비고	
			B/A(%)	A-B(원)	납세대상 실면적	경증별 ²⁾
50,000	4,259,750 (4,361,190)	4,110,650 (4,078,170)	96.5 (93.5)	△49,100 (283,020)	48,210평 (53,157평)	(—)
45,000	3,549,800 (3,923,610)	-	-	-	-	
40,000	2,880,200 (3,486,030)	-	-	-	-	
35,000	2,284,470 (3,048,450)	-	-	-	-	
30,000	1,731,480 (2,594,775)	2,266,390 (2,343,230)	130.9 (90.3)	△534,910 (251,545)	28,102 (")	(+)
25,000	1,233,030 (2,157,195)	1,088,470 (1,987,910)	88.3 (92.2)	△144,560 (169,285)	24,690 (")	(—)
20,000	803,940 (1,719,615)	747,570 (1,345,320)	93.0 (78.2)	△56,370 (374,295)	18,488 (")	(—)
15,000	455,700 (1,282,035)	460,610 (869,550)	101.1 (67.8)	△4,910 (412,485)	14,900 (")	(+)
10,000	201,900 (844,455)	214,660 (672,680)	106.3 (79.7)	△12,760 (171,775)	9,928 (")	(+)
9,000	159,920 (778,400)	167,870 (605,610)	105.0 (78.0)	△7,950 (170,790)	9,107 (")	(—)
8,000	124,560 (689,445)	126,480 (514,250)	101.5 (74.6)	△1,920 (175,195)	7,947 (")	(+)
6,000	68,880 (515,535)	69,320 (540,660)	100.6 (104.9)	△440 (△25,125)	5,903 (")	(+)
5,000	43,140 (425,775)	45,440 (305,920)	105.3 (71.9)	△2,300 (119,855)	4,930 (")	(+)
4,000	17,400 (338,820)	18,750 (204,130)	107.8 (60.2)	△1,350 (134,690)	4,012 (")	(+)
평균	-	-	103.3 (81.0)	-	-	-

()내는 1984년 수치

1) 농지등급 27, 미곡필요경비율 53%, 조곡 2등 품 54kg당

정부수매가격 28,050원(1984년산), 29,450원(1985년산)기준.

2) +는 법정 수준보다 重課.

-는 법정 수준보다 輕課.

자료: 지방세법중 농지세 관련조항(법정 담세액) 및 김제군 사례조사 결과
(실제 납부액).

附表 4 - 3 農地稅制 改正前後 農地規模別 農地稅 負擔(벼농사)¹⁾

	개정전(84) ²⁾ (A)	개정후(85) ³⁾ (B)	B/A (%)	A-B(원) ⁴⁾
⋮	⋮	⋮	⋮	⋮
50,000	4,246,190	4,259,750	100.3	+ 13,560
45,000	3,808,610	3,549,800	93.2	258,810
40,000	3,371,030	2,880,200	85.4	490,830
35,000	2,933,450	2,284,470	77.9	648,980
30,000	2,498,675	1,731,480	69.3	767,195
25,000	2,061,195	1,233,030	59.8	828,165
20,000	1,624,515	803,940	49.5	820,575
15,000	1,195,935	455,700	38.1	740,235
10,000	748,355	201,900	27.0	546,455
9,000	661,400	159,920	24.2	501,480
8,000	574,455	124,560	21.7	449,895
6,000	400,535	68,880	17.2	331,655
5,000	310,775	43,140	13.9	267,635
4,000	223,820	17,400	7.8	206,420
3,000	136,865	-	-	-
2,500	91,985	-	-	-

1) 농지등급 27 등급, 미곡 필요경비율 53% 기준.

2) 54kg 조곡 2등 품 수매 가격 28,050 원 기준.

3) " " 29,450 원 기준.

4) 개정 후 감소된 금액.

附表 4 - 4 畜種別 副業畜産(非課稅對象)의 範囲

단위 : 마리, 천원

		1978 ¹⁾	1980 ²⁾	1985 ³⁾	1986 ⁴⁾
젖 소	수 량	7	10	20	20
	금 액 ⁵⁾	2,555	6,050	14,680	14,680
소	수 량	10	20	30	30
	금 액 ⁵⁾	920	3,940	4,170	4,170
돼 지	수 량	50	100	150	200
	금 액 ⁵⁾	1,550	800	4,950	6,600
닭	수 량	1,000	1,000	3,000	10,000
	금 액 ⁵⁾	248	59	723	2,410

1) 1976.12.31신설

2) 1979.12.31개정

3) 1982.12.31개정

4) 1986. 6. 30개정

5) 해당 축종의 소득금액 기준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附表 4 - 5 農家副業所得範囲의 變動推移

구 분	1976	1977 ¹⁾	1978 ²⁾	1979 ³⁾	1980 ⁴⁾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⁵⁾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만원) (%)	0 (-)	108 (58.1)	120 (64.5)	156 (83.3)	186 (100.0)	186 (100.0)	186 (100.0)	186 (100.0)	186 (100.0)	186 (100.0)	240 (129.0)
가축가격 (평균가격)	소(암소 400 kg, 천원) 돼지(비육돈 90 kg, 천원) 닭(1 kg, 원)	- - -	- - -	- - -	687 (100.0)	1,061	1,361	1,664	1,326	972	830 ⁶⁾ (120.8)
소비자물가지수 (비식료품, 전국평균)	51.1	55.6	62.5	76.6	100.0	117.0	129.7	136.0	139.8	142.0	139.3 ⁸⁾
농가구입가격지수	46.3	54.2	70.5	80.2	100.0	128.5	144.3	156.1	150.1	146.4	150.9

1) 1976.12.22 개정

2) 1978.4.24 개정

3) 1978.12.30 개정

4) 1979.12.31 개정

5) 1986.6.30 개정

7) 1986.6 월 기준

8) 1983~1985 의 평균치

附表 4 - 6 農民의 農畜協 賯蓄規模 推移

	1978	1985	85 / 78 (倍)
농 가 소 득	1,884 천원	5,736 천원	304
농 축 협	1,585 억원	11,978 억원	755.7
농 협	1,541 "	11,633 "	754.9
500만원 초과 예탁건수	-	27,000 구좌 (1,843 억)	

자료 : 농협중앙회.

附表 4 - 7 農民의 出資額規模 推移

	1978	1985	85 / 78
농 협 · 축 협 계	227 억원	2,590 억원	1,141.0 %
농 협	207	1,885	910.6

자료 : 농협중앙회

附表 4 - 8 都農間 預金利子率 隔差

단위 : %

은 행 예 금	예 금 종 목	자유저축예금 (6월미만)	자유저축예금 (6월 이상)	소액 가계 저축
	연 이 율	9	12	
단 협 예 탁 금	예 금 종 목	자립예탁금 (6월미만)	자립예탁금 (6월 이상)	정기예탁금 (6월 이상)
	연 이 율	8	9	9

자료 :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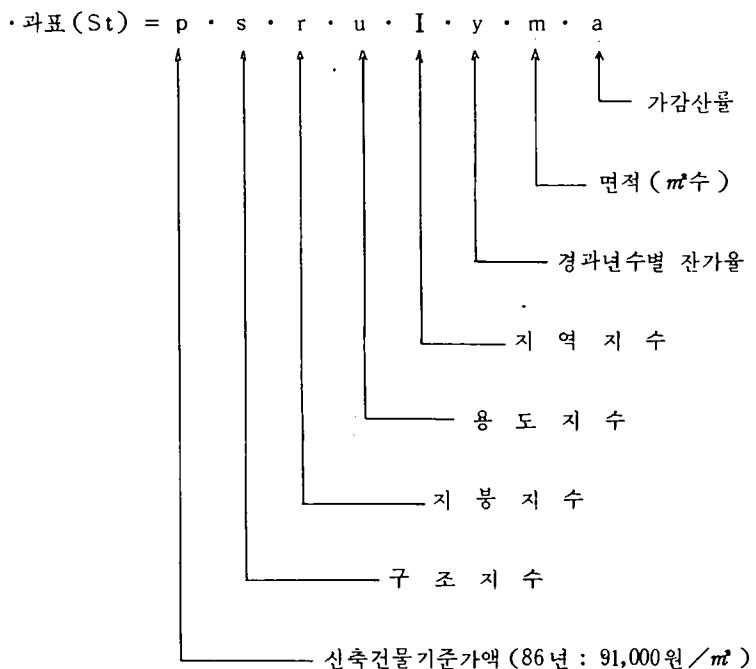
附表 4-9 土地等級表(現行)

단위: 원(㎡당)

등급	가격(원)	등급	가격(원)	등급	가격(원)
1	1	62	101	86	306
2	2	63	106	87	321
⋮	⋮	64	111	88	337
40	40	65	116	89	353
41	42	66	121	90	370
42	44	67	127	91	388
43	46	68	133	92	407
44	48	69	139	93	427
45	50	70	145	94	448
46	52	71	152	95	470
47	54	72	159	96	493
48	56	73	166	97	517
49	58	74	174	98	542
50	60	75	182	99	569
51	63	76	191	100	597
52	66	77	200	101	626
53	69	78	210	102	657
54	72	79	220	103	689
55	75	80	231	104	723
56	78	81	242	105	759
57	81	82	254	106	796
58	85	83	266	107	835
59	89	84	279	108	876
60	93	85	292	⋮	⋮
61	97				

자료 : 地方稅法 施行規則 제 42 조 別表 1.

附表 4-10 建物分 財產稅의 課標決定 變數



- 예 - 경기도 평택군 소재, 연와조, 토기와 45평 규모의 농가주택이 신축 후 10년 경과한 경우의 건물분 재산세과표 :

$$\begin{aligned}
 S_t &= 91,000\text{원} \times 0.9 \times 0.95 \times 0.7 \times 0.7 \times 0.866 \times 1485(m^2) \times 1.0 \\
 (\text{課標}) &= (\text{기준가액}) \times (\text{구조}) \times (\text{지봉}) \times (\text{용도}) \times (\text{지역}) \times (\text{경과기간}) \\
 &\quad \times (\text{면적}) \times (\text{가감산률})
 \end{aligned}$$

附表 4-11 相續稅·贈與稅의 稅率構造

段階	相 繼 稅		贈 與 稅		稅率%
	課 標	稅率%	課 標	稅率%	
1	100만원 이하	7	50만원 이하		7
2	10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	9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11
3	300만원 " 500만원 "	11	100만원 " 300만원 "		15
4	500만원 " 700만원 "	13	300만원 " 500만원 "		19
5	700만원 " 1천만원 "	15	500만원 " 700만원 "		23
6	1천만원 " 1천3백만원 "	17	700만원 " 1천만원 "		27
7	1천3백만원 " 1천9백만원 "	20	1천만원 " 1천3백만원 "		32
8	1천9백만원 " 2천5백만원 "	25	1천3백만원 " 1천9백만원 "		37
9	2천5백만원 " 3천5백만원 "	30	1천9백만원 " 2천5백만원 "		42
10	3천5백만원 " 5천만원 "	35	2천5백만원 " 3천5백만원 "		47
11	5천만원 " 7천만원 "	40	3천5백만원 " 5천만원 "		52
12	7천만원 " 1억원 "	45	5천만원 " 1억원 "		57
13	1억원 " 3억원 "	50	1억원 " 2억원 "		62
14	3억원 " 5억원 "	55	2억원 초과		67
15	5억원 초과	60	-		-

자료 : 상속세법 제 14조 및 제 31조의 2.

第 5 章

農業關聯 流通 · 消費課稅

1. 小序

이 연구에서의 농업관련 流通 · 消費課稅는 前述한바와 같이 농업부문과 관련된 流通과 消費등에 관련하여 부과하는 租稅로서 구체적으로, 狹義로는 가) 비료, 농약등 農業生產資材의 附加價值稅, 나) 乳製品(빙과류, 발효유등)과 天然果汁飲料 등 農產加工品의 特別消費稅, 다) 농업용油類의 特別소비세, 라) 飼料種子, 비료와 농약의 原料 및 農機械部品등의 輸入關稅등을 들 수 있고, 廣義로는 이들 狹義의 流通 · 消費稅이 외에 마) 농산물出荷契約, 농협용자계약등의 관계서류에 대한 印紙稅, 바) 농지등의 取得稅와 登錄稅 사) 農地등의 讓渡所得稅등을 포함하는 概念으로 考察한다.

2. 流通 · 消費課稅

가. 農地 등의 讓渡課稅

① 농지 양도소득세의 概念

현행 관련 稅法上 농지의 讓渡에 대하여 賦課하는 조세는 “讓渡所得稅”

로서 형식적인 登錄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有價의 去來인 점으로서課稅의 充分條件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農地에 대한 讓渡課稅가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所得課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農地의 讓渡所得稅가 租稅分類上 소득과세, 재산과세, 유통과세등중 어느課稅에 屬할것인가 하는데에 關하여는 觀點에 따라 異見이 있다. 비록 所得稅法에서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의 課稅客體는 資產 또는 財產등이며, 이 財產에 반드시 讓渡라는 移動(流動)行爲가 따를 것을前提하는 데에서 讓渡課稅인 것이다.

여기서 讓渡함은 당해 재산 등의 登記登錄과는 無關하게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등으로 因하여 財產이 사실상 有價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讓渡所得이란 建物 土地(農地)등의 不動產과 그 不動產에 관한 權利, 그에 준하는 기타재산(株式, 권리금, 영업권, 회원권 등)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所得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觀點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는 流通課稅의 성격도 있다.

한편, 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재산)를 生產에 직접 투입하여 얻은所得이 아니라 단지 一定期間 농지를 保有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收益이라는점에서 거기에 부과하는 租稅는 財產稅로서의 性格도 지난다.

따라서 농지의 让渡所得稅는 流通稅와 財產稅 및 所得稅등의 共通性을 지닌 租稅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研究에서는 그중에서도 流通課稅로서의 性格에 比重을 두어 流通課稅로 分類하여 考察한다.¹⁾

② 농지 양도소득세의 性格

가) 複合稅的 性格

전술한 바와 같이 농지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재산세, 유통세 등의 성격

1) 讓渡所得稅의 稅率構造가 소득세나 재산세등과 달리 比例稅率에 의한 逆進性이 명백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음..

을 공유하고 있다.

나) 稅率構造의 異質性과 課稅의 逆進性

농지 양도소득세의 稅率은 그 적용기준이 保有期間의 長短(2年 超過與否), 讓渡前의 登記狀態與否등의 異質的 複數基準制이며, 所得金額 규모의 大小와 관계없이 比例稅率制이기 때문에 課稅의 逆進性이 현저하다.

다) 稅率變動幅의 廣範性

社會 經濟的 與件이 安定되고 正常的이면 농지의 保有期間은 길어지고, 따라서 현행 稅法上 그재산을 양도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譲渡所得은 多年間에 걸쳐서 形成될 것이므로 다른 所得稅類보다 낮은 稅率을 적용함이 당연하며, 여기에 累進率을 적용하면 相對的 重課要因이 될 것이다.

반면에, 예컨대 特定地域의 開發效果나 기타 경제 사회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農地投機心理가 作用하는 不安定, 非正常的 狀況下에서는 短期間內에 多額의 譲渡所得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高率課稅가 당연하고 可能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農地讓渡所得稅의 稅率變動幅은 넓다.

라) 농지의 投機抑制와 流動制約性

高率의 譲渡所得稅는 농지투기를 규제하고, 한편으로 農地의 流動을 制約한다. 특히 實現되지 않은 차본수익 (Capital gain)에는 非課稅 상태에 있다가 譲渡가 이루어질때 즉, 농지유동이 있을때 課稅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의 課稅 자체가 농지의 流動을 억제하고 있다.

③ 農地讓渡所得稅制의 概要 <表 5-1 참조>

④ 농지양도소득세의 担稅率과 租稅的 機能

가) 擔稅率²⁾ 決定要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률은 法定稅率 (R), 非課稅 및 控除額 규모

2) “擔稅率 = 稅額 / 所得額”의 概念임.

表 5 - 1 現行 農地 讓渡所得稅制 概要

1) 과 표 : 양도소득 =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공제액)

2) 세율 :

	보유기간별		미등기양도
	2년 초과	2년 이내	
세율	과표의 40%	과표의 50%	과표의 75%

3) 비과세범위 :

(1)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제5조6호 라)

(2) 농지의 교환분합, 대토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 마, 카)

(3) 공유수면매립 취득농지 양도소득 (" " , 카)

4) 세액감면 :

(1) 5년이상 계속경영한 목장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

(동법 제6조 (2) 3)

5) 공제액 : 기초공제 30만원, 배우자공제 42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만원, 장해자공제 30만원 등

(ND), 課標 (=讓渡差益 : St), 양도전의 保有期間 (Te) 과 登記與否 (Rs) 등에 의하여 決定되며, 이를 要因間에는

$$Tr (\text{擔稅率}) (= \frac{T}{St}) = f(St \cdot ND \cdot Te \cdot Rs \cdot R)$$

의 關係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法定稅率 (R) 이 一定하므로 擔稅率 (Tr = $\frac{T}{St}$) 은, 첫째, 課標 즉 謂渡所得規模 (St), 둘째, 非課稅 및 控除額規模 (ND), 세째, 保有期間과 登記與否 (Te or Rs) 등에 의하여 左右된다.

이를 보다 詳述하면, 첫째, <圖 5-1>에서 點線 a, b, c 는 각각 謂渡農地의 保有期間이 2年超過時, 2年以下時 및 未登記農地讓渡時 등의 法定稅率을 나타내는 比例稅率線이다. 그런데 稅率이 비례세이므로 謂渡所得의 규모가 클수록 對 가처분소득 擔稅率은 낮아지며 右下向의 曲線d는 이로 인한 課稅의 逆進性을 反映하고 있다. 둘째, <圖 5-2>에서 직선 a, b, c 는 각각 保有期間이 2年 超過時, 2年以下時 및 未登記農地讓渡時

등의 法定稅率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控除額이나 非課稅規模에 관계없이一定한 比例稅率制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讓渡所得稅의 公제액과 非課稅額의 규모에 관계없이 法定稅率은 여전히 比例稅이므로 농지에 대한 讓渡所得稅課稅는 역시 右下向曲線 d 가 說明하듯이 逆進的이다.

세째, <圖 5-3>에서 曲線 a 와 點線 b 는 讓渡農地의 保有期間別(2年초과 2年以內 등) 法定稅率을, 直線 c 는 未登記農地를 讓渡時의 法定稅率을 각각 나타내는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法定稅率이 所得規模나 控除制度와는 관계없이 오직 양도농지의 保有期間이 一定年限(2年 등)을 경과하였는가의 與否와 農地의 양도이전에 登記를 畢하였는가의 與否에 의해 서만決定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경우도 所得規模에 관계없이 比例稅率이 適用되므로 그 과세가 逆進的임은 曲線 d 가 示唆하는 바와 같다.

나) 租稅機能的 측면

① 앞의 擔稅率決定要因과 <圖 5-1, 圖 5-2, 圖 5-3> 등을 통해서 볼 때, 농지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는 궁극적으로 농지의 取得과 讓渡의動機(예: 耕作目的 또는 投機目的 등)와 農業에의 寄與度(耕作年數 등) 등에 따라 調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前者의 경우 農地의 양도소득과세는 農地에의 投機抑制機能을, 後者の 경우 農地讓渡所得稅課稅는 農地의 流動을 制約하는 機能(去來凍結效果)을 하게 되는데, 결국 농지에의 양도소득과세는 그와같은 긍정적측면과 부정적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② 지난 20여년동안 추진되어온 經濟社會開發政策과 傳統的인 法律構造 및 國民의식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農業부문 특히, 農地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狀況의 변화³⁾는 農地에 대한 讓渡所得課稅의前述한 相

3) 離農, 不在地主의 增加와 그로인한 社會正義에의 違背性, 多子女 均分相續制에 의한 농지의 細分化와 大規模營農의 지연 및 農業生產性 不振, 都市資本의 농지투기 현상 등.

圖 5 - 1 所得金額 規模別 謹渡所得稅의 逆進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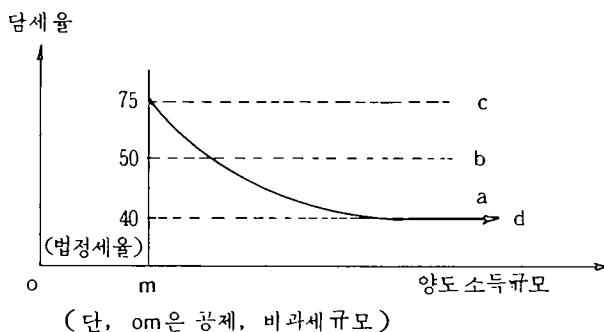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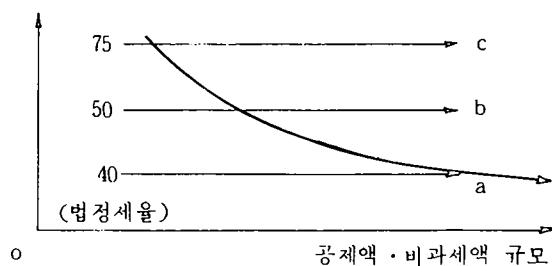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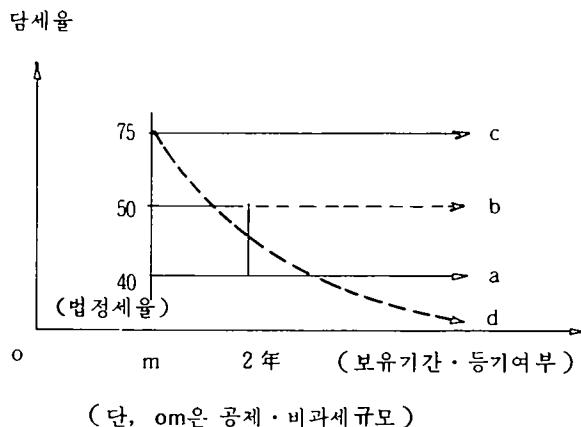
圖 5 - 2 非課稅 · 控除額 規模別 謹渡所得稅의 逆進性
담세율

圖 5 - 3 農地의 保有期間, 登記與否別 謹渡所得稅 逆進性



反된 兩機能에 대한 調整이 요구된다. 즉, 農地投機抑制를 위한 讓渡所得稅重課稅論과 農地의 流動을 促進하기 위한 讓渡所得稅減免稅論이 적절히 調整 實施되어야 할 現實的 當面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⑤ 農지에 대한 訂渡課稅의 問題點

가) 農지 流動의 制約性

현행 制度上 農지의 양도가 讓渡所得稅制에 의한 制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8年以上 自耕農地의 경우(全額免除)⁴⁾ 와 5年이상 계속 경영한 牧場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農地⁵⁾ 뿐이다.

이러한 制約은 정상적인 善意의 영농을 목적으로한 農지 구입까지도 억제하는 등 農지유동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므로 最小限 自耕農에 限해서는 이러한 制約이 緩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不在地主 所有의 農地移動이 制約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不在地主 農地의 증가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다른 副隨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총전의 8年이상 自耕農이어야만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던 것을 혜택의 폭을 넓혀 不在地主의 農지라도 영농인에게만 양도한다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農地의 投機抑制機能의 未治性

농지를 非農業用의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投機性 農地買入을 억제하는데는 현행의 양도소득과세만으로는 그 機能이 未治하다. 그것은 현행과 같은 양도소득과세제가 있음에도 農지투기는 계속 발생하고, 그때마다 관계 당국은 새로운 조치를 취하느라고 금급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立證된다.

따라서 투기성 農지유동을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억제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신규개발지역이나 都市計劃法上 商工地域, 住居地域 내에서의 農지거래에는 非課稅原則에서 除外하고 오히려 重課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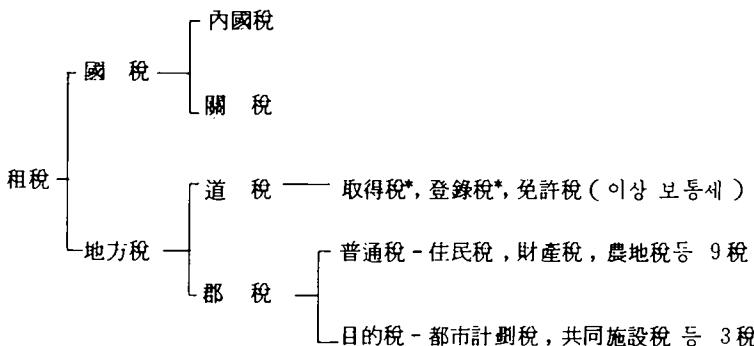
4) 訂渡所得稅關聯所得稅法 第5條6, (라)

5) 訂渡所得稅關聯所得稅法 第6條② 3.

나. 農地 등의 取得税와 登錄税

① 取得税와 登錄税의 租稅體系上 位置

圖 5-4 現行 租稅體系



資料：國稅基本法，地方稅法等 關聯條項

② 取得税와 登錄税의 稅制上概要(表 5-2 참조)

③ 農지의 取得税와 登錄税의 租稅的 機能과 意味

농지의 取得과 登錄에 관련하여 과세하는 農地取得稅와 農地登錄稅도 농지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와 類似한 입장에서 농지등의 流動性과 投機性을 둘러싼 抑制와 促進의 相反된 役割을 한다는 점에서 經濟的 및 社會的으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④ 農地의 取得税와 登錄税의 問題點

- ① 離農, 農지의 細分化, 不在地主의 증가 등 전술한 바와 같은 農業부문의 與件變化는 善意의 營農希望者間의 農地流動의 固滑化를 要하고 있

表 5 - 2 農地의 取得税 · 登錄税制 概要

	취 득 세	등 록 세
• 과세 대상	• 취득대상농지 : 원시취득, 승계취득 및 유상·무상을 불문 한 일체의 농지취득(매매, 교환, 증여,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	• 등록대상농지 : 등기당시 재산세 과세대상의 지목이 전, 담, 과수원, 목장용지등인 토지.
• 납세의무자	• 취득자	• 농지등의 취득, 이전, 변경등의 사항을 공부상의 “농지”란에 등기등록 받는자.
• 비과세대상	•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등의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등의 등록
• 과표	• 취득당시의 가액	• 농지등의 과세시가 표준액
• 세율	• 취득가액의 2%	• 농지 상속취득시 등록세 : 0.3% • 농지무상취득시 " : 1.5% • 상속과 무상취득을 제외한 농지취득시 등록세 : 1.0% • 농지소유권보존등기세 : 0.8%

자료 : 지방세법 제 101 ~ 151 조.

으나 現行의 取得 · 登錄税의 課稅制度는 오히려 농지 유동의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② 농지의 流動性提高를 위한 租稅輕減의 필요성과 농지의 投機抑制를 위한 重課稅의 필요성 간의 相衝性을 해소하는 것이 當面課題로 제기된다. 이에는 선별적인 對應策으로서 예컨대 농민이 농지를 自耕目的으로 取得하여 이를 登錄할때는 취득 및 등록세를 輕減하고, 非農民이 投機등의 目的으로 농지를 取得, 登錄할때는 重課稅하는 方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農業生產資材에의 附加價值稅

① 부가가치세의 概念과 特徵

부가가치세는 對內, 對外的으로 供給되는 재산과 用役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間接稅로서, 1977年7月 統廢合以前의 영업세, 物品稅, 織物類稅, 섬유류세, 통행세, 입장세, 유통음식점세등의 성격이 포함된 概念이다.

따라서 多種類似租稅의 종합성, 세율의 單一比例性, 납세절차의 단순성 수출촉진 및 투자촉진성, 多段階課稅性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課稅가 每去來段階마다의 去來金額에 대한 課稅인것이 아니라 각段階마다에서 발생하는 附加價值에 대해서만 課稅하며, 결과적으로 한번 課稅된 금액에는 다시 課稅되지 않음으로서 과세의 累積效果가 없는 單一段階實上稅와 동일한 效果를 지닌다.

② 附加價值稅의 稅制上 概要 <表 5-3 참조>

③ 肥料 農藥 農機械에의 부가가치세

가) 납세의무자와 稅率

앞의 부가가치세 제 概要에 의하면, 비료, 농약, 농기계등 농업생산자재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納稅義務者는 이들 物品을 구입하여 농업생산에 投入하는 農業生產者(=農民)이며, 이들 品目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稅率은 원칙상 구입가액의 13%이나 현재는例外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나) 負擔額規模

1985年에 농민의 肥料, 農藥, 農機械 등 농업생산자재의 구입액은 약 724,911 百萬원으로서, 이는 1983年 대비 109% 수준이다. 이들 農業生產資材들중 구입실적이 가장 많은 品目은 비료로서, 그 構成比率은 1983 84,85年등에 각각 47%, 43%, 49% 등이다 <表 5-4>

한편, 이들 農業生產資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즉, 농민의 農資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1984年的 경우 총 810億원수준으로서 그중에서 肥料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303億원으로 가장 많고 (37.4%), 이어서 농

表 5 - 3 附加價值稅制의 概要

구 분	내 용
1) 과세대상	가)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나) 재산의 범위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유형적 물건, 용역의 범위는 전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2) 납세의무자	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기타단체등(따라서 농민이 농업생산자재를 구입할때에도 부가가치세 부담: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
3) 과 표	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代價 나)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時價
4) 세 율	$\frac{10}{100}$, (원칙상 $\frac{13}{100}$ 이나 거기에 $\frac{3}{100}$ 을 가감하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즉,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상 $\frac{10}{100}$ 에서 $\frac{16}{100}$ 까지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현행 세율은 $\frac{10}{100}$ 이다)
5) 감 면 세	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인삼물등) 및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림축수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및 토지등(조세 감면 규제법 제12조1항) 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2)

表 5 - 4 農業生產資材의 生產 및 販賣實績

단위 : 100만원, %

	1983	1984	1985	85/83
농 약 ¹⁾	153,294(23.0)	194,743(24.8)	194,026(26.8)	126.6
비 료 ²⁾	312,064(46.9)	337,054(42.9)	355,831(49.1)	114.0
농기계 ¹⁾	199,883(30.0)	254,565(32.4)	175,054(24.1)	87.6
계	665,241(100)	786,362(100)	724,911(100)	109.0

1) 생산실적

2) 판매실적

자료 : 농협중앙회

表 5 - 5 農民의 營農資材 附加價值稅 負擔規模

단위 : 억원, %

	비료	농약	농기계	PE 필립	PP 포대	죽골재	계
제조이전 단계	253	144	145	62	31	-	635
제조유통 단계	50	52	40	17	15	1	175
계	303 (37.4)	196 (24.2)	185 (22.8)	79 (9.8)	46 (5.7)	1 (0.1)	81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表 5 - 6 肥料에 대한 附加價值稅 負擔推移

단위 : 억원, %

	1980	1981	1982	1983	1984	84/80
당년	225	338	321	245	303	134.7
누계	698	1,036	1,357	1,602	1,905	272.9

자료 : 농협중앙회

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96 億원 (24 %), 농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85 億원 (23 %) 등의 順이다 (表 5 - 5).

이들 農業生產資材 중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가장 많은 肥料의 경우, 농민은 1984 年에 303 億원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1980 年 對比 34.7 % 가 증가한 것이며, 耕種農家 戶當平均 15,764 원을 부담한 셈이다. 비료에 대하여 농민이 부담한 지난 5 年間의 부가가치세 누계는 1,905 億원 수준으로서 이는 1980 ~ 84 年 平均 農家 戶數를 기준으로 할 때 耕種農家 戶當平均 95,116 원씩 (年平均 19,023 원) 을 부담한 셈이다 (表 5 - 6).

④ 農資材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問題點

① 비료 농약 농업용 PE포대 등 각종 농업생산자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그 農資材의 消費者 (=농업생산자) 인 농민에게 轉嫁되어 농민의 부담이 됨으로서 농업생산비의 증가요인이 된다. 즉, 일반 工業製品은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最終消費者에게 전가되어 생산자 부담이 없

어지나, 이들 農業生產資材에의 부가가치세는 농산물생산자인 農民에게만 전가될뿐 그것이 다시 농산물의 消費者에게까지 전가되지는 않는것이 현실이다.

② 현행 稅法上 농민이 생산하여 非農民이 구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課稅치 않음에 비하여, 그 農畜產物을 생산하기 위하여 投入되는 農民의 農資材의 購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農民의 부담을 증가시키는것은 課稅의 公平原則에 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肥料 農藥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결과적으로 農協引受價格을 상승시켜 肥料計定과 農藥計定의 赤字累增 要因이 된다.

라. 農業用 油類에의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稅制上 概要〈表 5-7 참조〉

② 農業用油類에의 免稅措置

농업용油類라 함은 주로 農機械用의 撥發油와 기타 輕油 등을 의미하며, 다음 〈表 5-7〉에서 알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휘발유에는 구입가액의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구입가액의 100 %상당의 特別消費稅가 부과되고, 경유에는 10 %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農業用油類에는 이를 租稅를, 부가가치세는 租稅減免規制法 第 74 條①項 2 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同法第 78 條의 1 號에 의하여 각각 免稅되고 있다 〈表 5-8〉.

마. 農畜產 加工食品에의 特別消費稅

① 特別소비세 과세현황과 減免稅의 意味

① 앞의 〈表 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축산가공식품, 예컨대 天然果實飲料, 氷菓類, 발효유등은 원칙상 特別소비세 課稅對象이나, 특별히 이들 食品의 消費擴大를 통하여 農畜產所得增大가 가능한 品目으로서 그

表 5 - 7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의 比較

	부 가 가 치 세	특 별 소 비 세	비 고
1) 과 세 대 상	가) 재 산 또는 용역의 공급 과 재화의 수입	가) 특정 물품 나) 특정 장소에의 입장 행 위 다) 특정 장소에서의 유통 음 식 행 위	
2) 납세 의무자	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개인, 법인, 기타 단 체 등	가) 과세 물품 판매자 나) 과세 물품 제조·반출자 다) 과세 대상 장소 운영 자동	
3) 과 표	가) 금전으로 代價를 받은 때는 그 대가 나) 기타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時價	가) 판매 가격 나) 반출 가격 다) 입장 요금이나 인원	
4) 세 율	10% (원칙상 13 ~ 16% 범위)	기본 세율 : 5, 10, 15, 20, 25, 28, 30, 40, 50, 60, 100 % 참정 세율 : 기본 세율의 10, 40, 70 % 등.	
5) 감 면 세	가) 가공 되지 아니한 식료 품 등 나) 소득세 비과세의 농가 부업 소득	가) 자가 소비용 제조 물품 나) 관세법상 간이 세율 적용 물품 등	
6) 농업용유류 예외 적용 사항	휘발유 (10%) 경유 (10%)	제 4 총 제 2 류 1호 : 휘발유류 (100%) 2호 : 경유 (10%)	免 稅 (1986 부터)

表 5 - 8 農業用油類의 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值稅의 稅率*

	특 별 소 비 세		부 가 가 치 세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전	개 정 후
휘 발 유	100%	-	10%	-
경 유	9%	-	10%	-
등 유	-	-	10%	-

* 1985. 12. 23 개정.

表 5 - 9 酪乳의 生產實績과 特別消費稅 賦課規模

	1981	1982	1983	1984	84/81 (%)
생 산 실 적 (톤)	83	104	117	122	147.0
특소세부과액 (백만원)	7,254	8,748	10,510	10,930	150.7

자료 : 서울우유협동조합, 국세청.

에 대한 特別消費稅 課稅 與否가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즉, 천연과실음료는 果實類의 소비증대를 통하여, 빙과류와 발효유등은 우유의 소비증대를 통하여 각각 農民의 소득을 保護, 增大시킬수 있다는 데에 그에 대한 減免稅論의 意味가 있다.

나) 그러나 관련 稅法의 改正등을 통하여 이들 3 가지 품목中 天然果實飲料⁶⁾ 와 빙과류⁷⁾에 대하여는 이미 그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단지 발효유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다.

다) 발효유의 生產實績과 特消稅賦課額規模

1984 年의 발효유 生產實績은 122 톤이며 이에 부과된 特別消費稅額은 10,930 百萬원으로서, 1981 年 對比 생산실적은 47 %, 특별소비세액은 50 %등이 증가되었다 <表 5-9>.

② 農畜産加工食品의 特별소비세 비중과 추이

가) 1984 年에 빙과류, 천연과실음료 및 빙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총액은 26,147 백만원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 1조②항에 규정한 第 3 種(커피 코코아, 카카오……등) 品目에 대한 특소세액의 약 14 %를, 그리고 특별소비세 총액의 약 3 %수준인바, 이는 1978 年 대비 9.7 배 수준이다.

나) 천연과실음료, 빙과류, 발효유등의 특별소비세액이 특별소비세액 전체중에서 占하는 비율은 1978 年의 0.8 %에서 1984 年에는 3.0 %로 증가하였으며, 그것이 특소세법 제 1조에 규정한 第 3 種品目의 特소세중에

6) 1987.1.1부터 免稅.

7) 1986.7.1부터 免稅.

表 5-10 天然果實飲料 氷菓類 酸乳 등의 特別消費稅 比重과¹⁾ 推移

단위: 백만원, %

년도 구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84/78
특소세합계 (A)	130,419	119,917	92,804	324,177	485,754	606,250	652,376	653,273	767,688	868,431	267.9
특소세과세물품 종 제 3종 ²⁾ 에 대한 특소세계 (B)	35,357	20,022	16,647	69,243	85,090	109,613	131,018	149,885	171,285	186,919	269.9
빙과류 (a)	-	-	-	2,705	4,572	3,273	3,715	3,589	3,677	5,317	196.6
천연과실음료 (b)	-	-	-	-	-	-	-	2,527	3,851	8,007	-
발효유 (c)	-	-	-	-	5,954	6,253	7,254	9,009	10,421	12,823	-
소계 (C)	-	-	-	2,705	10,526	9,526	10,969	15,125	17,949	26,147	966.6
C/A	-	-	-	0.8	2.2	1.6	1.7	2.3	2.3	3.0	-
C/B	-	-	-	3.9	12.4	8.7	8.4	10.1	10.5	14.0	-

1) 정수액 기준.

2) 커피와 카카오, 콘코아, 사탕, 전분당, 청량음료, 기호음료, 빙과류, 발효유, 자양강장제, 천연과실음료 (특소세법 제
1조 ②항의 제 3종)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79~85.

서 절하는 비율은 1978 年의 3.9 %에서 14 %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다 <表 5-10>.

바. 飼料種子 및 其他 農資材原料의 輸入關稅

工 飼料種子의 輸入關稅

가) 現况

(1) 農作物種子의 輸入關稅率

현행 관세법상(관세율표) 주요 飼料作物의 수입에 부과하는 關稅率은 호밀, 귀리, 옥수수, 수수 등이 10 %, 油菜種子가 40 %, 그리고 수단그라스 등 牧草種子는 0 % 등인데, 현재 油菜種子를 除外하고는 잠정세율 7 %를 적용하고 있다 <表 5-11>.

(2) 풀(青刈) 飼料種子의 需要增大와 飼料作物種子의 輸入增大

최근 수년동안 풀飼料作物種子의 需要가 급증하고 있다. 1985 年에 풀飼料種子의 파종면적은 137 천 ha로서 1982 年의 47 천 ha에 비하여 2.9 배 수준이며, 거기에 所要된 풀飼料種子의 물량은 1982 年의 5 톤 규모에서 1985 年에는 13.1 톤으로 약 2.3 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옥수수, 귀리 등 飼料作物全體의 種子輸入量은 1982 年의 100 톤 수준에서 1985 年에는 8,147 톤으로 약 46.9 배로 늘어났으며, 그에 所要된 外貨는 1982 年의 71 천 달러에서 5,548 천 달러로 약 78.1 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表 5-12>.

表 5-11 飼料作物種子의 輸入關稅

단위 : %

품 목	세 율	기 본 세 율			잠 정 세 율
		1984	1985	1986	
호 밀	10	10	10	10	7
귀 리	10	10	10	10	7
옥 수 수	10	10	10	10	7
수 수	10	10	10	10	7
유 채 종 자	40	40	40	-	-
목초종자(수단그라스)	0	0	0	-	-

表 5 - 12 飼料作物 種子의 輸入 推移

	1982	1983	1984	1985(P)	84/82
物 量(톤)	100	222	4,690	8,147	46.9 배
金額(천달러)	71	206	3,326	5,548	78.1 배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3) 輸入飼料作物種子의 關稅引下의 必要性

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需要에 充當키 위하여 풀飼料를 증산하고, 나아가서 原料飼料의 수입을 절감함으로써 畜產農家の 부담을 줄이고, 所得을 补填키 위해서는 이들 飼料作物種子의 수입관세를 引下調整할 필요가 있다.

② 導入原料飼料보다 種子를 輸入하여 栽培하는 것이 經濟的이며, 需要가 증가하는 풀飼料와 기타 飼料作物의 增產을 위해서는 飼料作物의 種子輸入에 부과하는 輸入關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問 題 點

앞으로 사료작물의 種子輸入이 증가하는 추세하에서는 축산농가의 所得이 보장되지 않으면 畜產業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사료종자에의 輸入關稅는 전적으로 그 需要者(消費者)인 축산농가의 負擔으로 轉嫁되어 畜產所得의 減少要因이 된다.

[2] 肥料 및 農藥 등의 原料와 農機械部品에 대한 輸入關稅

가) 現 態

(1) 肥料原料에 대한 수입관세

비료의 輸入原料는 인광석, 염화가리, 유황등으로서, 인광석과 염화가리에는 1%, 유황에는 5%등의 輸入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2) 農藥原料에 대한 輸入關稅

농약원료의 輸入에 대하여는 1983.12.31 까지 基本關稅率 100%가 免除되었으나(關稅法 第28條) 1984年부터는 一部免稅制로 전환되었다(관세법부칙 제5조).

(3) 農機部品에 대한 輸入關稅

국내생산이 어려운 農機부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關稅를 輕減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租稅减免規制法 第83條①항 2)

나) 問題點

肥料의 輸入原料 및 農藥의 輸入原料등에 부과되는 輸入關稅는 그 使用者(消費者)인 農民에게 轉嫁된다는 点에서 특히, 農藥의 경우는 原料의相當部分이 수입되고 있음을 동시에 감안하면 結局, 農藥價格의 引上→農業生產費增加→農家負擔增加→農家所得減少 등의 연쇄반응 要因이 된다.

사. 其他 農業關聯 流通·消費課稅

① 畜產物 屠畜稅

가) 現況

① 屠畜稅의 납세의무자는 畜產物의 도살자이며, 課稅權者는 屠殺地所在의 市郡地方自治團體이다 (지방세법 234조 및 동법 시행령 192조).

② 도축세의 課標是 生畜의 기준시가이며, 세율은 기준시가의 1%이다 (表 5-13).

③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1%의 정규도축세 이외에 도축료 1%, 판매수수료 1%등을 합하여 총 3%를 부담한다.

나) 問題點

① 도축세 과표인 生畜의 기준시가가 변동갖은 축산물價格을 反映함에

表 5-13 畜產物 屠畜稅 賦課用 課標額 變動推移

	1982		1984		1985		1986		86/82(%)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1.1~6.30 (상반기)	만원 90	만원 20	만원 169	천원 9.3	만원 136	천원 11.8	만원 100	만원 16.4	1.1	0.8
7.1~12.31 (하반기)	만원 120	만원 20	만원 150	만원 10	만원 99	만원 13.4	만원 96	만원 17	0.8	0.9

는 時差에 의한 과리가 따른다.

② 畜畜稅(本稅)이외에 도축료, 판매수수료등 부가비용으로 인하여 부담이 크다.

③ 畜畜稅의 消費者轉嫁는 畜產物의 소비를 억제하고, 生產者부담은 畜產農家の 所得減少要因이 된다.

[2] 農民의 融資書類 등에 대한 印紙稅

가) 現　　況

농민은 그職業上의 성격과 경제, 사회적活動範圍等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印紙稅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더구나 非農民이 일반적으로 印紙稅를 부담하는것과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減免稅의 특혜를 받기도 한다.

예컨대, 農民이 회원으로加入하고 있는 農畜水協의 預金과 積金證書 및 預金通帳등에 대하여 농민의 印紙稅負擔을 면제하는 事例(租稅減免規制法 第 81 條 5)를 비롯하여, 농촌주택자금융자 및 建築用資材外上購入書類(同法 第 81 條 9)에 대한 印紙稅, 농축수협등으로부터의 農業생산자재 및 기타 物品의 外上購入關係書類에 대한 印紙稅(同法第 81 條 10)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 변경 및 消滅등을 증명하는 書類등에의 인지세(同法 第 81 條 7), 公有水面매립을 통한 농지조성관계서류등에 관한 인지세(同法 第 81 條 11)등의 免稅가 그 代表的인것들이다.

또, 農民이 농축수협등으로부터 받는 응자관계서류에 대한 印紙稅는完全免除는 아니고 一部免稅制를 택하고 있다.

즉, 농민이 農畜水協등으로부터 받는 融資關係書類에 대한 印紙稅는 1970 ~ 1977 年에는 記載金額 100 만원이하에 限하여 인지세를 免稅하여 왔으며, 점차 農民의 응자금액 규모 즉 對農民 농축수협貸出金規模가 擴大되어 감에 따라⁸⁾ 1978 ~ 1986 年까지는 免稅범위를 응자금액 500 만원 水準으로 확

8) 농협의 農村貸出規模가 1978 年(印紙稅免除制도입 당시)에 7,381 억원 이던 것이 1984 年에는 39,141 억원 으로서 1978 年 對比 約 5.3 倍 水準으로 증가하였다.

대하였다.

이와같은 농민의 융자금액에 대한 면세범위의 확대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그결과 1987 年부터는 印紙稅免除範圍를 500 만원에서 1,500 만원으로 擴大키로 하고 있다.

第6章

農民의 準租稅負担

1. 農民 準租稅負担論의 提起

농민이 부담하는 稟稅를 論함에 있어서 그부담이 公平 또는 衡平의 인가의 與否를 가리는 原則論은, 농가소득 중에서 발생하는 稟稅이 외의 負擔性支出, 예컨대 準租稅 등의 부과와 징수에 적어도 稟稅의 경우와 같거나 그보다도 높은 水準의 公平과 衡平性을 유지하고 있음을前提로 할때 意味가 있다. 그것은 농민도 다른 一般納稅者와 같이 농가소득중에서 稟稅이 외에 많은 적든 準租稅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實質負擔을 나타내는 $R_b = f(T \cdot Q_t \cdot F_d \cdot I_n)$ 의 關係式에서 F_d 와 I_n 을 所與의 것으로 볼 때 농민의 實質負擔은 稟稅(T) 와 準租稅(Q_t)에 의하여 左右된다는 점에서, 두변수 T 와 Q_t 중에서 어느 한가지만의 公平과 衡平이 곧 실질부담(R_b)의 公平과 衡平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단, R_b : 實質負擔, T : 稟稅, Q_t : 準租稅, F_d : 財政赤字, I_n : 인플레이션).

이 사실은 準租稅의 부담에 不公平과 不衡平의 要因이 介在되어있을 가능성을 감안할때 지금까지 고찰한 法定 諸租稅만의 合理化등 만으로서는 납세자의 실질부담에 오히려 不合理를 초래할수도 있으며, 같은 論理로서

농민에 대한 法定 租稅만의 公平化 또는 衡平化도 농민의 실질부담의 公平化, 衡平化에 寄與的 또는 逆寄與의 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민이 부담하는 租稅를 논함에 있어서도 法定 諸租稅와 表裏關係에 있는 이 準租稅의 側面을 결코 看過할 수 없다.

2. 農民負擔 準租稅의 範圍

準租稅의 概念과 範圍는 觀點에 따라 다소 差異가 있겠으나 이研究에서 는 현지 事例調査에서 나타난 농민의 협행 부담실태를 감안하고, 負擔者인 농민의 自他意性 與否 및 그 程度등을 개략적인 기준으로 하여 義務性公課金(第1種準租稅), 寄附金性公課金(第2種準租稅) 및 受益者負擔性其他公課金(第3種準租稅) 등을 종합한 概念과 範圍의 것으로 限定한다 <表6-1>.

현지 사례조사에 의하면 농민이 부담하는 이들 諸準租稅는 부담농가의 絶對數로는 義務性 準租稅가 지배적으로 많고, 준조세의 項目數나 금액의 규모면에서는 奇附金性 準租稅가 가장 많고 커으며, 受益者負擔金性 準租

表 6 - 1 農民 準租稅의 性質別 主要項目

구 분	범 위(관련항목)	비 고
의무성공과금	농축협조합비, 산림조합비, 인삼조합비, 농지개량조합비, 적십자회비 등	• 농민이 가입된 조합 에만 해당
기부금성공과금	새마을사업관련사업비용, 불우이웃돕기 성금(자선성금), 원호관계성금, 체육 대회경비(학교운동회지원금, 전국대회 경비등), 방위성금(지역단위성금, 국가단위성금), 이재민구호성금, 면의복지회관련립비, 경노회경비, 민방위관련경비, 재향군인회비등	• 각종 기부금, 성금등의 명칭과 성격의 부 담금
수익자부담성 및 기타부담금	하천부지사용료, 공유지·도로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창고료, 전기전화료 등	• 수익자부담금등은 현지 조사결과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稅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담한 국소수의 事例 이외에는 거의 없었고, 其他負擔金으로서 里長租는 지역에 따라 負擔與否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 農民의 準租稅負擔 實態

농수산부의 統計에 의한 1985 年의 농가準租稅負擔額은 전국 戶當平均 13,359 원으로서 농가평균소득 對比 0.2 % 水準이며, 이 準租稅를 포함한 租稅公課金 총부담액은 戶當 46,577 원으로서 所得對比 0.8 %의 負擔率을 기록하고 있음은 앞의 第3章 1節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지난 10年동안 (1976 ~ 85) 농민의 준조세 부담률은 0.2 ~ 0.5 % 범위에서 근소한 減少勢를 보여 왔으나, 租稅公課金 중에서 準租稅가 占하는 비중은 그동안 완만한 減少勢를 보이다가 1985 年에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것은 1985 年부터 農地稅制의 改正으로 농민의 法定租稅의 절대부담액이 현저히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表 6-2).

농민의 準租稅負擔의 實態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의 里長과 새마을 指導者 등을 上對象으로 실시한 제 1 차 사례조사에서도 앞의 (表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寄附金性의 준조세 항목이 많고, 그 중에서 이재민 구호성금과 불우이웃 돋기 및 기타 자선성금 그리고, 體育誠金과 새마을誠金 등의 부담빈도가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問題가 없는

表 6-2 農民의 準租稅 負擔率 推移

단위 : %, 倍

	1976	1977	1980	1983	1984	1985	85 / 76 ¹⁾	85 / 80 ²⁾
準租稅負擔率	0.3	0.3	0.5	0.2	0.2	0.2	3.4 倍	1.0 倍
租稅負擔率	1.3	1.5	1.8	1.3	1.3	0.6	2.1 "	0.7 "
總負擔率	1.6	1.8	2.2	1.5	1.5	0.8	2.4 "	0.8 "
總負擔額中準租稅率	20.2	17.6	22.0	15.5	15.1	28.7	-	-

1), 2)의 倍數는 實際負擔額의 增減倍數임.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各年度.

것으로 나타났다.

全國 8 個道(8 個郡, 16 個面) 16 個里의 里長과 새마을指導者 등 78 개 조사대상農家중 諸組合費와 協會費 등을 포함한 義務性 準租稅를 부담하는 農家는 83%(65 戶), 각종 寄附金性 準租稅를 부담하는 農가는 55%(43 戶), 受益者負擔性 準租稅를 부담하는 農家는 14%(11個戶) 등이었다.¹⁾

조사농가의 戶當 負擔件數의 수계는 총 258 건 중 의무성 준조세가 53%(137 件), 기부금성준조세가 26%(67 戶), 그리고 수익자부담성준조세는 3%(8 戶) 등의 順이었다. 그런데 其他의 準租稅로서의 里長租는 16%(40 戶)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6-3).

그러나 농민의 準租稅 부담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일반농민대상의 제 2차사례조사에서는 농촌의 각마을에서 中流以上의 농가가 부담하는 準租稅는 그 부담률에 있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구성비에 있어서도 적십자회비, 농지개량조합비, 농축협조합비 등의 무성 준조세를 부담하는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나, 부담항목의 數와 부담액의 규모는 의무성 준조세보다 기부금성 준조세가 훨씬 많고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表 6-4).

즉, 조사농가중 田畠耕作規模 4,800~13,000평 범위의 농가는 소득수준이 350만~810만원 범위였으며, 총준조세부담액은 8만원~14만원 수준으로서 準租稅負擔率은 1.7~2.5% 수준이다. 이는 앞에서 예시한 농수산부 공식통계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表 6-4, 附表 6-1). 뿐만 아니라 경작면적 2,400 평 전부를 賃耕한 농가의 경우는 약 6%의 準租稅負擔率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1) 義務性 準租稅중에는 적십자회비 납부농가가 64%(50 戶)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농지개량조합비 부담농가 55%(43 戶), 農畜協組合費負擔 農家 54%(42 戶) 등의 순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寄附金性準租稅는 이재민구호성금부담농가가 35%(27 戶), 불우이웃돕기 및 기타자선성금 부담농가가 26%(20 戶), 體育誠金과 새마을사업경비부담농가가 15%(12 戶) 등이었으며, 受益者負擔性 準租稅 부담은 하천부지사용료부담농가가 6%(5 戶)였고, 其他 準租稅로 里長租를 부담한 농가가 51%(40 戶)였다.

表 6-3 農家の 準租税 類型別、地域別 負担 頻度

단위：戶

구 分	경기(8)			강원(10)			충북(9)			충남(11)			전북(10)			전남(11)			경북(9)			경남(8)					
	방 축 리	행 성 리	소 도리	하 왕 정 리	하 광 정 리	소 계	노 동 리	도 산 리	소 계	봉 산 리	송 장 리	소 계	산 경 리	신 리	소 계	우 동 리	원 전 리	용 곡 리	소 계	안 계 등	하 리	소 계	주 도 리	하 소 리	소 계	(78)	
의 무 성 준 조 세	산 업 조 합 비 료 목 조 합 비 농 축 수 형 조 합 비 농 지 개 량 조 합 비 기 타 조 합 비 작 심 자 회 비 소 계	2	1	3	2	3	5	5	4	9	3	6	9	2	2	5	2	7	2	1	3	1	3	4	42		
기 부 금 성 준 조 세	세 마 율 사업 기 부 금 이 재 민 구 호 성 금 부 우 이 웃 돌 기 성 금 부 자 전 설 금 상 호 성 금 체 육 상 금 교 육 면 제 기 부 금 소 계	2	2	4	3	4	7				1	1	1	1	1	2	2	2	1	1	2	1	2	2	5		
수 수 이 자 부 조 당 금 성 세	청 고 료 도 로 사 용 료 하 천 부 지 사 용 료 기 타 부 담 금 소 계	2	4	6	3	4	7				2	2	1	2	3	5	2	4	11	1	3	4			20		
기 준 조 타 세	이 장 조 부 액 비 기 타 소 계	4	4	8	4	3	7				1	1	2	2	2	1	2	2	1	1	2				40		
	계	19	16	35	16	19	35	5	4	9	17	8	25	6	9	15	37	17	21	75	16	16	32	8	24	32	258

자료 : 현지시례조사 결과.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례조사결과일 뿐이므로 그 준조세부담률을 고하가 곧 全國農家의 실태를 代表할수는 없겠으나, 농가의 현행 각종 준조세부담률이 결코 낮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들 농가가 부담하는 準租稅도 기부금성 준조세가 항목의 수(8개 항목)와 금액(8만원~14만원, 75~90%) 면에 있어서 준조세 중 의무성준조세(4개 항목 3,500~13,500 원, 3~15%)나 수익자부담성 및 기타 준조세(1個項目) 등 보다 현저히 많고 크다는 사실(表 6-4)에는 특히 유의할 必要가 있다.²⁾

농민의 準租稅負擔의 實態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한 가지 부수적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농민의 준조세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농업생산 및 농민의 생활정보전달등의 필요에 의하여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농가의 전기 및 전화의 사용료부담이 年間 經費중에서 1~2%를 차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심의 대상이다.

4. 農民 準租稅負擔의 問題點

가. 問 題 點

농민의 準租稅는 전국의 농가전체를 기준으로 할때는 전술한 농수산부 등의 통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부담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그것도 지난 10年동안 완만하나마 減少勢에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2차의 現地調查結果에 따르면, 이연구가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改善方向을 찾는 試圖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농민의 준조세부담에 관

2) 의무성준조세중에서도 예컨대, 농지개량조합비의 부담이 높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할때, 이들 의무성 준조세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의 기부금성 준조세의 부담은 농가준조세 重負擔의 要因이 될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表 6 - 4 農家의 準租稅 負擔 事例

조 대 농 가	경지규모 (평)	소 득(100만원)			준 조 세				준 조 세 부 담 률 (%)				
		미곡소득	기타소득	소득계(A)	의무성 (b_1)	기부금성 (b_2)	수익자부 담성및기 타(b_3)	준조세계 (B)	B/A	$b_1 + b_2$ /A	$b_1 + b_2$ /B	b_1 / B	b_2 / B
I	12,797 (10,797)	779	30	809	3,500	128,000	10,000	141,500	1.75	1.63	92.9	2.5	90.5
II	8,734 (8,034)	579	34	613	13,500	90,000	10,000	113,500	1.85	1.69	91.2	11.9	79.3
III	7,184 (5,184)	373	83	456	3,500	66,000	10,000	79,500	1.74	1.52	87.4	4.4	83.0
IV	4,800 (4,000)	256	93	349	13,500	73,000	-	86,500	2.48	2.48	100	15.6	84.4
V	3,770 ²⁾ (2,400)	87	66	153	13,500	69,000	10,000	92,500	6.05	5.39	89.2	14.6	74.6

()내는 논면적

1) 수익자부담성준조세와 기타부담금(이상조등)

2) 임차농

자료 : 현지 사례조사 결과.

하여서도 改善을 要하는 몇 가지 問題要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농가의 準租稅負擔率이 中流以上의 농가나, 賃借農家에게 있어서는 결코 낮은 水準이 아니다.

둘째, 특히 寄附金性準租稅의 농가별 부담기준과 方法이 비교적 애매모호하여 결과적으로 公平하고 형평기여적인 부담이 되지 못함으로서 부담농가의 불평과 非能率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³⁾

세째, 유사한 명칭과 목적의 準租稅를 부담하는 事例가 있어 결과적으로 農民重課의 요인이 되며, 준조세관련행정에 대한 농민으로부터의 信賴를 잃을 우려가 있다.⁴⁾

네째, 義務性準租稅중 특히 농지개량조합비의 일부로 포함되는 長期債償還金부분의 부담으로 인하여 조합원농가의 重負擔意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里長租(이장수고비)가 전술한바와 같이 최근에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里長報酬支給制가 도입됨으로서 지역마다 농민의 부담여부가 일정치 않아 不公平要因이 되고 있다.

여섯째, 최근에 需要가 급증하는 농촌의 電氣 및 電話등의 사용에 따르는 料金負擔率이 소득수준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

나. 改 善 方 向

농민이 부담하는 準租稅類에 만일 問題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 한다면, 먼저 농민이 부담하는 法定租稅의 부담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은 前述한바와 같다.

3) 예컨대 부락인 40 戶 농가가 6만원의 적십자회비를 부담하는 경우, 所得이나 기타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1,500원씩 均分負擔하기도 하고, 5만원의 방위성금을 一定基準에 따라 5,000원, 3,000원, 2,000원등과 같이 差等負擔토록 유도하는 里長의 임재적 配當役割등의介入도 있음.

4) 예컨대, 체육과 관련하여 全國體典, 道의 體育大會, 郡과 面의 體育會 및 學校運動회지원경비등을 부담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法定租稅가 일반적으로 公平하고, 應能, 普遍性의 原則을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 農民의 準租稅關聯問題는 대략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改善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農民의 實질부담을 反映하는 關係式 $Rb = f(T \cdot Qt \cdot Fd \cdot In)$ 에서 準租稅(Qt)를 법정조세(T)와 더불어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農民의 부담을 보다 공평하고 衡平化할 수 있는 方向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附表 6-1 農家の 準租税 負担事例 明細¹⁾

단위: 원, %

조사대상 농 가	소득금액 ²⁾ (A)	의무성준조세 (b ₁)				기부·회사성준조세 (b ₂)								수익자부담금 기타(b ₃)	준조세 합계 (B = b ₁ +b ₂ +b ₃)	B/A (%)		
		산조 합 리비	농조 합 협 비	적회 심 자비	소 계	새성 마 을금	불웃 우성 이금	체성 육금	방성 위금	복관 지기 회금	경성 노 회금	민경 방 위비	재인 향회 군비	소 계	이 장 조	소 계		
I 전모농가	8,092,500 (10,797)	2,000	-	1,500	3,500	40,000	20,000	5,000	5,000	50,000	3,000	5,000	-	128,000	10,000	10,000	141,500	1.75
II 박모농가	6,127,500 (8,034)	2,000	10,000	1,500	13,500	40,000	12,000	8,000	5,000	20,000	2,000	2,000	1,000	90,000	10,000	10,000	113,500	1.85
III 문모농가	4,559,000 (5,184)	2,000		1,500	3,500	40,000	10,000	3,000	3,000	5,000	2,000	3,000	-	66,000	10,000	10,000	79,500	1.74
IV 여모농가	3,486,000 (4,000)	2,000	10,000	1,500	13,500	40,000	10,000	3,000	3,000	13,000	2,000	2,000	-	73,000	- ³⁾	- ³⁾	86,500	2.48
V 전모농가 ⁴⁾	1,529,000 (2,400)	2,000	10,000	1,500	13,500	40,000	7,000	3,000	2,000	12,000	2,000	2,000	1,000	69,000	10,000	10,000	92,500	6.05

1) 전남 진안군 백운면 소재마을.

2) ()내는 경지면적(평).

3) 이장·본인.

4) 임차농가.

자료: 현지 사례조사 결과.

第 7 章

結論：農業關聯稅制의 改善方向

1. 稅制改善의 前提와 目標

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研究의 主目的은 현행의 農業關聯 諸稅制의 現況을 分析하여 問題點을 導出하고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이研究에서는 지금까지 農業關聯所得課稅로서 농지세, 축산소득세, 임업 및 山林所得稅, 농축협預金利子 및 出資金配當所得稅등과, 농업관련 財產課稅로서 農地財產稅, 농지 등의 相續·贈與稅등에 관하여 연구고찰하였고, 農業關聯 流通·消費課稅로서는 농지 등의 讓渡課稅, 농지의 取得稅와 登錄稅, 농업생 산資材에 대한 附加價值稅, 농업생 산資材中 農業用油類에 대한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農畜產加工食品의 特別소비세, 鈴銅料種子와 비료 및 農藥의 원료, 그리고 農機械部品등의 輸入關稅, 畜產物屠畜稅와 영농자금융자계약관계서류등의 印紙稅등에 關하여 現況과 問題點 中心으로 고찰하였다.

이들 農業관련 諸租稅는 각分野別 및 稅目別 分析過程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稅目에 따라서 問題의 量과 質의 差異가 많았다. 이章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연구 분석된 內容을 근거로하여 앞으로 요구되는 制度的 改善의 方向을 要約 整理 提示한다.

이研究에서 추구하는 농업관련 稅制改善의 方向을 提示함에는 첫째, 현재 추진중인 農村綜合對策과 現行 租稅減免制度, 그리고 農村의 擔稅實情과 農民輿論등을 감안하여 國家全體의 租稅體系內에서 補完調整, 創案함을前提로 한다.

둘째, 이研究에서 추구하는 稅制改善의 目標는, 課稅의 應能·公平·平衡·普遍性등의 原則을 농업관련稅制內에 廣範하게反映함으로써 農民의 租稅負擔을 增減調整하는 동시에 農家所得의 保護와 農村福祉向上에寄與할것을 目標로 한다.

2. 稅制改善 方向

가. 農業關聯 所得課稅

① 農地稅

농지세에 있어서는 첫째, 농지세액 결정要因間의 $T_a = f(Yg \cdot A \cdot P \cdot I_r \cdot D \cdot R)$ 의 關係式에서 Yg 즉, 농지등급(기준수확량 등급)이 아닌 성격을 감안, 農地의 기준수확량等급을 平年作米穀收穫量과 運動化함으로써 농지세액이 곧 납세의무자의 米穀收穫量을反映할 수 있도록하고, 둘째, 농지세 課標算出의 기초가 되는 必要經費率($= 1 - 所得標準率$)을 (1)當該地域의 平均所得率을反映하는 水準에서 (2)他作目, 他產業의 所得標準率($= 1 - 必要經費率$)과도 均衡을 이루는 범위에서 下向調整하고, (3)현재 納稅農民間에 이행사례가 거의 없는, 課稅對象農作物의 경작과 관련하여 필요경비와 所得金額등에 관한 사항을 帳簿에 기장하고 그 결과를 市郡에 報告토록 되어 있는 地方稅法 關聯條項(地方稅法 第213條 등)을 현실성있는 但書條項으로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예:……만일 필요경비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推計課稅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세째, 賃貸借農地에 대한 농지세 과세제 도는, 납세의무자인 耕作農民과

貸貸人, 그리고 농지세의 課徵稅업무담당實務陣과 指導層이 현행의 關聯稅法條項(지방세법 제 198조, 동법시행령 제 149조등)을 보다 엄격히 遵守토록하여, 本論의 第 4 章 2 節 가-④-가) - (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便宜主義의 課徵稅方式을 탈피하고(과징세행정실무자의 경우), 貸貸人은 자신에게 부과된 농지세를 임차인의 契約上 劣位性을 惡用하여 임차인에게 轉嫁하는 事例가 없도록 努力할것이며, 高所得 非營農不在地主의 농지 임대소득에는, 國稅의 과세대상인 當該年度 勤勞所得額에 농지임대소득을 合算한 규모의 綜合所得稅課標額에 상응하는 累進率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네째, 농지세의 基礎控除에 있어서는 농민의 基本生計費水準과 도시근로자의 일 반적 控除額水準의 범위내(現在 약 240 만원~ 350 만원)에서 再調整하여 기초공제제도입의 취지에 맞고, 都農間의 課稅衡平化에 寄與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지세의 稅率構造는, 우선 課標 또는 稅率段階를 현행의 16 단계에서 7 ~ 8段階制로 단순화하되, 課標 800 만원이 하는 현행대로 6-8 - 10-12-15-18 % 등 6段階로 나누고, 課標가 800 만원 선을 초과하여 5,000 만원에 이르기까지(현행세율 : 21-24-27-31-35-39-43-47-51 %)는 20 %로, 그리고 課標가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 % 등의 稅率로 再調整함으로써 大農層의 농지세 누진율을 다소 완화하고 多數農民의 稅額計算과 內容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여기서 課標 800 만원초과 5,000 만원까지에 20 % 및 5,000 만원초과시 30 % 등의 세율은 일반 법인세 세율과 같은 수준임).

② 畜產所得稅

축산농가의 畜產所得稅에 있어서는 첫째로, 축산소득세의 非課稅對象인 農家副業畜產으로서의 畜種別 非課稅범위를 축산물가격변동이나 기타 농가구입가격 및 소비자물가등 관련 경제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의 심한 畜種別 非課稅範圍 隔差를 보다 緩和 調整하여 畜種間

公平化를 기하는 동시에, 이러한 농가부업 축산으로서의 畜種別 非課稅範圍를 설정하는 기준을 보다 客觀的인 근거에 의하여 定立할 필요가 있다.

③ 林業 및 山林所得稅

임업 및 山林所得稅의 稅額規模나 全體稅收額중에서의 比重은 비록 미미하나, 本論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임업소득과 山林所得에 대한 區分 課稅制가 지니는 意味가 극히 애매하며, 또 林木의 讓渡와 林地의 讓渡가 區分課稅되는데에서 오는 課徵稅上의 複雜性을 緩和하기 위하여 우선, 林業所得과 山林所得을 한데 묶어 山林所得稅의 課稅對象으로 통일하고, 이어서 林木이 林地와 동시에 讓渡될때에 限하여는 林木의 양도는 林地의 讓渡에 포함하여 모두 林地讓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課稅對象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④ 農民의 預金利子 및 出資金配當所得稅

농민이 부담하는 農畜協等에의 預金利子와 出資金配當所得에 대한 所得에 관한 문제는 현행 관련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非課稅對象規模가 지나치게 작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1978 年에 책정된 이들 兩所得課稅의 非課稅範圍 500 만원과 200 만원 등이 관련 경제여건이 현저히 달라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는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추진중인 농어촌균형발전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다른 경제지표(예: GNP, 농촌저축규모등의 증가등)에 맞추어 그 비과세 범위를 확대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나. 農業關聯 財產課稅

① 農地에의 財產稅

本論 제 4 장 3 절 가, 5)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재산세는 建物分에 있어서나 住居用 토지 및 農地등에 있어서 모두 都市民에 비하여 낮은 稅率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都農間比較에 있어서는 農民 輕課稅傾向이 현저

하다.

그러나 첫째로, 財產稅의 세율이 比例稅率이라는 점에서 오는 농업내부의大小農間의 課稅의 逆進性은 피할 수 없는 現實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農業內部에 있어서의 課稅逆進性을 緩和하는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1984年부터 급격히大幅上向調整된 農地에 대한 재산세 課標의 기초인 土地等級을 지역별 개발에 의한 財產價值의 변동이나 農地改良 등에 의한 農地段收變動등을 감안하여 다시 調整하여야 한다.

② 農지의 相續·贈與稅

가) 農지의 相續稅

第4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農지의 相續稅制가 지니고 있는 가장큰 문제로 時急히 해결해야 할 課題는 전통적인 多子女均分相續制에 의한 農地의 細分化를 방지하는것과, 相續을 통하여 合法的으로 農지를 취득한 非營農不在地主의 農地가 지니는 經濟 및 社會的問題點 및 그의 解消등이다.

따라서 農地細分化防止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農지에 대한 均分相續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相續法自體의 改正이 요구되며 (이研究범위 밖의 것임), 次善策으로 制限的이나마 相續稅法 등 稅制上的接近이 가능하다.

특히, 不在地主의 農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非營農子女에의 農地相續을 制約하고 营農子女에의 農지 상속을 권장 유도하는 稅制上の 조치가 要求되는바, 예컨대, 自耕農者에의 農地相續에 대하여는 相續稅非課稅範圍를 현행의 農지 6,000坪(草地는 30,000坪)에서 9,000坪(草地는 60,000坪)등으로 擴大하는 것 등은 실현가능한 代案의 하나일 것이다.

나) 農지의 贈與稅

농지의 贈與稅도 研究結果에 贈與者와 受贈者의 营農從事 與否가 관심의 초점으로 드러났다.

현행 稅法上 自耕農에 限하여 배우자 또는 直系尊卑屬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에 150만원, 其他 親族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에 100만원등의 控除

額이 적용되고 있으나, 농지의 流動性提高 특히, 不在地主 농지의 自耕農者에의 移轉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減免이 요구된다.

예컨대, 현재 所有하고 있는 농지등을 所有者의 性格(예: 營農 또는 非營農등)에 不問하고 一定期間까지 직계존비속 또는, 兄弟姊妹가 自耕農民에게만 贈與하면 一定範圍(예: 농지 6,000 평, 초지 30,000 평등) 내에서 증여세를 免除하는등의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農業關聯 流通 · 消費課稅

① 농지譲渡稅

농지 양도소득세가 지닌, 農地投機抑制라는 肯定的機能과 農地流動性制約이라는 否定的機能을 여하히 調和있게 活用하는가의 與否가 核心課題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농지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賦課는 非營農·投機의 目的으로 농지를 구입하였다가 판매하는 者에게는 高率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투기목적의 農地去來를 막아야 하며, 반대로 營農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거나 保有하였다가 양도하는者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가급적 낮추어 농지의 매매 즉, 농지유동을 촉진하는 方向으로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觀點에서 볼 때, 첫째, 8年이상 自耕農地의 매매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제도는 그 免稅條件의 自耕年限을 보다 短縮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앞의 농지贈與稅의 경우와 같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自耕農民에게만 양도하는 경우라면 譲渡者의 性格(自營農 또는 非營農등)에 不問하고 一定期間(예: 1991年限) 一定範圍內(예: 농지 6,000坪, 초지 30,000坪등)에서 양도소득세를 免除하는 方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농지 등의 取得稅 · 登錄稅

自耕目的을 전제로 한 농지의 取得 및 登記時には 農地의健全한 流動

性을 提高하고, 農民의 負擔을 輕減하는 長期的 目적으로 農地의 取得稅와 登錄稅를 減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農業生產資材에의 附加價值稅

비료, 농약, 농기계등의 去來에 부과되는 附加價值稅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들 農業생산자재로 生產한 農산물의 消費者에게까지 轉嫁되기 이전에, 즉, 農산물消費者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 農業生產資材의 使用者인 農民에게 归착되고 만다.

따라서 農民의 부담을 줄이고, 肥料計定과 農藥計定의 赤字累增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資材에 대한 附加價值稅가 減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農業用油類에의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농업생산자재로서의 農業用油類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特別소비세는 전술한 바와 같이 租減法 第 74 條①의 2 및 同法 第 78 條의 1의 규정 등에 의하여 免除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특별히 改善을 요하는 바가 없다.

⑤ 農畜產物 加工食品에 대한 特別소비세

本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農畜產物加工食品中 氷菓類에는 1986.7.1부터 特別소비세를 免除하고 있으며, 天然果實飲料류에는 1987.1.1부터 免除키로 決定하였다.

다만, 発효유에 대한 特別소비세를 減免하는 문제가 더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発효유에 포함되는 牛乳類의 비율이 낮으나 최근 수년간 発효유의 生产 및 판매 실적의 증가 경향으로 보아 앞으로 農民의 所得補填이라는 次元에서 発효유에 대한 特別消費稅도 減免하는 方向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⑥ 풀飼料種子 및 기타 農資材原料 輸入關稅

外國產飼料의 輸入을 줄이고 國內飼料生産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飼料種子輸入關稅는 가급적 免除하는 방향으로 改善되어야 하며, 肥料, 農藥等의

원료와 국내생산이 어려운 農機械部品의 輸入에도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營農意慾을 고취하기 위하여 關稅賦課를 輕減할 필요가 있다.

⑦ 기타 農業關聯 流通·消費課稅

가) 屠畜稅

畜產物 屠畜稅는 課標인 生畜의 기준시가를 畜產物의 현실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6개월간격 調整制(上下半期等)를 4개월간격 조정제 (1年中 3개분기등)로 바꾸고, 屠畜稅이외의 부수경비인 도축료 (1%)와 판매수수료 (1%) 등을 고려하여 屠畜本稅率은 현행 1%에서 0.5%로 引下調整함이 바람직하다.

나) 농민의 農畜協融資書類 등에 대한 印紙稅

농민이 農畜協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때 作成하는 관련서류에의 印紙稅는 그동안 論難이 되어온 非課稅범위를 1987年1月1日부터 확대하여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으므로 앞으로 數年동안 농민의 융자규모의 확대등 관련여건의 큰변화가 없는限 별문제가 없을것이다.

라. 農民의 準租稅

① 改善의 前提

농민 準租稅의 改善은 일 반 租稅負擔과 調和 있는 方向으로 改善되어, 租稅制度의 改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농민부담의 公平·衡平性 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와 수준에서 效果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改善方向

① 이재민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체육관계성금과 새마을사업관계경비등 寄附金性準租稅의 負擔基準을 보다 客觀化하여 농민의 自發的參與를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웃돕기, 새마을운동, 민방위, 체육대회등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의 각종 준조세를 유사한 분야별 단일 명목의 것으로 통일하여 부담농민의 信

賴와 協助를 確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계속 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의 義務性準租稅로서 농지개량조합비중 長期債償還分은 농민의 부담을 輕減하고 輿論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農民의 直接負擔對象범위에서 除外하는 방안을 창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이상과 같은 농민의 準租稅負擔을 事前에 調整·統制하는 機能을 담당하는 專擔體制를 갖추어 농민 準租稅의 名稱, 목적, 금액, 부담방법과 부담한 준조세의 使用過程 및 효과등을 調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 金基成,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2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
- _____, “農民이 負擔하는 租稅의 減免에 관한 考察” 農村經濟 第 4 卷 第 4 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
- _____, “農地稅制改正의 內容과 租稅史의 意義,” 韓國租稅研究 第 1 卷, 韓國租稅學會, 1985.
- 金基成, 金亨模, 「農水產物關稅制度의 効率的運用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11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 金東建, 現代財政學(公共經濟의 理論과 政策), 민중인쇄공사, 1986.
- 金聖昊, 金云根, 全敬植, 許榮九, 金泰坤, 「農地制度 및 農地保全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金榮鎮, 金基成, 申東完, 李英浩, 「農地賃貸借에 관한 調査研究」, 研究報告 4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 金永勳, “議會의 豫算統制理論과 實際,” 延世行政論叢, 延世大行政大學院 1980.
- 盧貞鉉, “離村向都傾向의 問題點,” 韓國近代化論, 1980.
- 成培永, 金正基, 「農水產物流通關聯租稅制度研究」, 研究報告 2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
- 劉鐘悔, “社會指標,” 現代行政學 第 8 篇 3 章, 1981.
- 李永錫, 朴文浩, 「青果物加工產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研究報告 11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李貞煥, 金殷淳, 「農地 및 勞動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 研究報告 8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李皓晟, 韓國財政論, 博英社, 1986.
- 李弼佑, “租稅負擔과 課稅의 限界,”[韓國租稅研究], 第1卷, 韓國租稅學會, 1985.
- 崔 洊, “附加價值稅制 및 特別消費稅制의 改編方向에 관한 小考,”[韓國租稅研究], 第1卷, 韓國租稅學會, 1985.
- 崔明根, 「租稅의 公平과 効率」, 稅經社, 1984.
- 崔平吉, “韓國의 政策科學,”延世行政論叢, 第1輯, 延世大 行政大學院, 1981.
- 許信行, 金正夫, 河賢哲, 崔正燮, 「韓國農業의 發展模型研究」, 研究報告 10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 沈定根(譯)「豫算政策」, 1980. 法文社.
- (David J.Ott & Attiat F.Ott. Federal Budget Policy, Studies of Government Finance. 1969.)
- 洪文信(譯, 編著),「G.Myrdal 의 社會科學方法論」, 日新社, 1975.
- 井藤半彌, 「租稅論」, 1957.
- Ministry of Finance, Korea, Korean Taxation 1985.
- Roy Bahl and Babara D.Miller, Local Government Finance in the Tird World, (A Case Study of Philippines). 1983.
- R. J. Bennett, Central Grants to Local Governments. 1982.
- Richard M. Bird, Taxing Agricultural Land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74.
- Richard M. Bird & Oliver Oldman, Reading on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Johnes Hopkins Press Baltimore. 1964.
- U.S. Government, The President's Tax Proposals to the Congress for Fairness, Growth, and Simplicit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5.
- A. Premchand, Government Budgeting and Expenditure Controls, (Theory and Practice) I.M.F. Washington D.C., 1983.

빈

면

研究報告 134

農業關聯稅制 改善研究

1986년 12월

發行人 金 葉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記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 文 苑 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止。